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 술 보 증 기 금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기 금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개 요

Ⅰ. 개 요 ····· 1

1. 총 괄 ····· 1
2. 중소기업 현황 ····· 2
3.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편성 방향 ····· 2
4.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규모 추이 ····· 6
5.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구조 ····· 10
6.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전달체계 ····· 11
7. 2026년 신규·종료·계속사업 ····· 14

가. 신규사업 ····· 14

나. 종료사업 ····· 15

다. 계속사업 ····· 16

일반회계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Ⅰ. 예산안 개요 ····· 21

1. 세입 예산안 ····· 21
2. 세출 예산안 ····· 23

가. 국고보조금 사업 ····· 27

나. 출연금 사업 ····· 30

Ⅱ. 검토의견 ····· 33

[총 론]

1. R&D 사업 총괄 ····· 33

(1) R&D 예산 확대편성에 따른 철저한 사업 기획 및 관리 필요 ····· 34

(2) 기술 분야별 R&D 사업 기획·관리 방안 도입 검토 필요 ····· 45

[일반회계]

1.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 49

(1) 신용보증기금출연: 적극적인 보증공급 확대노력 필요 ····· 51

2.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 ····· 56

(1) 기초단계 스마트공장에 대한 구축지원 검토 필요 ····· 57

(2) 부정행위 방지 및 환수금 징수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62

(3)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불이행 ····· 65

(4)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기획 및 유관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방지 필요 ····· 69

(5) 사후관리(AS) 자부담 비율 검토 필요 ····· 72

3. R&D사업화 계정 출연(2131-306) ····· 74

(1)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지양 ····· 75

4.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2134-474) ····· 78

(1)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사전준비 절차 미비 ····· 79

5.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2134-487) ····· 86

(1) 진행중인 타사업의 결과물을 전제로 한 사업기획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87

6.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 92

(1) 수출강소 트랙 지원사업의 수출실적 저조 문제 ····· 93

(2)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홍보 강화 노력필요 ····· 96

(3)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추이 등을 고려한 물류바우처 지원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100

7.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3133-301) ····· 104

(1) 수출컨소시엄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105

(2)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소비재 수출 성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 107

(3)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 지원품목의 수출실적 집계 필요 ····· 109

8. 지역특구제도 운영(3335-304) ····· 113

(1)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정책설계 및 법적근거 보완 필요 ····· 114

(2) 규제특례 활용률 제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노력 필요 ····· 119

(3) 지역특구제도 운영 세부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 122

9.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 125

(1)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면밀한 수요 파악에 기반한 신규사업 편성 필요 ····· 126

10.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4835-301) ····· 133

(1) 수요에 기반한 수행기관 관리 및 수행기관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 133

(2) 성과지표 및 정산지연 관련 산업운영개선 필요 ····· 141

(3)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점검 필요 ····· 144

(4) 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세목조정 반복 지양 필요 ····· 146

11.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 148

(1)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TIPS와의 차별화 필요 ····· 149

(2)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정책패키지 연계강화 필요 ····· 152

12.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157

(1) 수도권 운영사 편중 해소 필요 ····· 158

(2) 후속 민간투자 및 회수 활성화 필요 ····· 161

13.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5132-314) ····· 165

(1) 본사업 지연에 따른 차질없는 장비운용체계 마련 필요 ····· 166

14. 벤처캐피탈선진화(5231-302) ····· 170

(1) 기업승계 M&A 지원: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17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1.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 175

(1)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175

<지역지원계정>

2.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3339-310) ····· 181

(1) 구축장비 활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8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89

1. 수입 계획안 ····· 190

2. 지출 계획안 ····· 191

Ⅱ. 검토의견 ····· 193

1.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 193

(1) 이차보전 사업의 직접융자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 194

2. 신성장기반자금(융자)(1261-301) ····· 200

(1)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철저한 리스크 및 수익률 관리 필요 ····· 201

3. 창업성공패키지(5152-302) ····· 209

(1) 창업성공패키지: 성인지 성과목표 상향 필요 ····· 209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213

(1) 추경 출자사업 연내 펀드결성 및 투자실행 필요 ····· 214

(2) 자펀드 민간LP 비중 제고 필요 ····· 219

(3)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관리·감독 부실 문제 ····· 223

기술보증기금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29

1. 수입 계획안 ····· 230

2. 지출 계획안 ····· 231

Ⅱ. 검토의견 ····· 232

1. 민간출연금(59-594) ····· 232

(1) 기술보증기금 민간출연금 수입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32

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238

(1) 구상채권 회수: 구상채권 질적 개선 도모 필요 ····· 238

3.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241

(1) 사고율 및 한계기업 증가에 대비할 필요 ····· 241

4.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 247

(1) 유동화회사보증 특성을 고려한 사고율 추정으로 면밀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필요 ····· 247

5. 팩토링금융(2441-311) ····· 254

(1) 경영애로 구매기업에 30일 상환연장제도 적용 관련 유사 기금운용 등에 공유 필요 ····· 25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63

1. 수입 계획안 ····· 264

2. 지출 계획안 ····· 265

Ⅱ. 검토의견 ····· 267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 267

(1)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에 따른 적정 출연규모 산정 필요 ····· 268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4131-316) ····· 273

(1)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신규 보조사업의 보조율 적정성 재검토 및 자부담 설정 필요 ····· 274

3.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278

(1)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의 기금운영비성 소요를 '소진지금 기본경비'로 이관할 필요 ····· 279

(2)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사업수행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비 조정 필요 ····· 285

4.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288

(1) 지역소공인육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연례적 사업지연 주의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89

5.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 294

(1) 손실보상 한시지원: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반영 필요 ····· 295

(2)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에 근거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적극 반영 필요 ····· 299

6.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131-327) ····· 305

(1)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재정소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305

7.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 311

(1)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품권 미판매·미회수 및 추경 편성을 감안하여 상품권 발행규모 재검토 필요 ····· 312

(2) 지역상권육성: 시범사업 결과 도출 전 사업규모 확대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317

(3) 시장상권인프라 조성(전통시장 안전점검):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323

참 고 자 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331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332
3. 중소기업 현황 ····· 334
4. 중소기업 수출 현황 ····· 337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황 ····· 338
6.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 339
7.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개관 ····· 340
8. 벤처기업 현황 ····· 341
9.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 342
10. 벤처 1,000억 클럽 현황 ····· 343
11. 전통시장 현황 ····· 344
12. 상점가 현황 ····· 345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현황 ····· 346
14.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 347
15.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통계 현황 ····· 349
16.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현황 ····· 356
17. 중소기업 계약학과 현황 ····· 359
18.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 362

개 요

Ⅰ. 개 요

1. 총 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5,961억원(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이 계상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수정)			%
총계 기준	**285,756**	**369,887**	**314,771**	**29,015**	**10.2**
예산	66,221	96,404	90,827	24,606	37.2
기금	219,535	273,483	223,944	4,409	2.0
총지출 기준	**152,488**	**209,513**	**168,449**	**15,961**	**10.5**
예산	36,372	40,218	47,747	11,375	31.3
기금	116,116	169,295	120,702	4,586	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는 2023년 기준으로 약 829.9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912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80.4%에 해당됨. 업종별 기업 수 비중은 도·소매업이 26.5%, 부동산업이 14.9%, 숙박·음식점업이 10.8%, 운수 및 창고업 8.2%, 제조업이 7.4% 등임.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출액 등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 중소기업 중 평균매출액이 일정규모(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이하인 기업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제조업 등 10명, 그 외 5명) 미만인 사업자 * 법적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편성 방향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업 및 벤처 4대강국 도약, 디지털 및 AI 전환,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성장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먼저,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팁스방식 R&D를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와 AI 및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 등 유망 스타트업 육성과 유니콘 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음.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제조분야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을 위해 신규 예산 반영 및 AX 관련 정책자금 트랙을 신설하였음.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지속 지원과 K-뷰티 및 전략 품목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종합지원 체계를 확충하였음.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상공인 스케일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정책안내 등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도입을 위해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 등 재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나아가, 지역 주력산업 분야 영위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음.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음.

이밖에,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과 기업 간 거래의 공정화,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승계의 주요 과정을 지원하는 예산 등을 적극 반영하였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수정)			%
합 계	**152,488**	**209,513**	**168,449**	**15,961**	**10.5**
○ 예산	**36,372**	**40,218**	**47,747**	**11,375**	**31.3**
▪ 일반회계	31,867	35,713	42,974	11,107	34.9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및공급망 안정화특별회계	357	357	106	△251	△70.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48	4,148	4,667	519	12.5
○ 기금	**116,116**	**169,295**	**120,702**	**4,586**	**4.0**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2,291	72,641	65,435	3,145	5.0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3,825	96,654	55,267	1,442	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정부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 총지출	673.3	728.0	54.7	8.1
1. 보건·복지·고용	248.1	269.1	20.269.14	8.2
2. 교 육 (교부금 제외)	98.5 (26.2)	99.8 (28.2)	1.4 (2.0)	1.4 (7.5)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4. 환 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27.9	2.0	7.7
9. 국 방	61.2	66.3	5.0	8.2
10. 외교·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110.7 (43.6)	111.3 (51.7)	10.4 (8.1)	9.4 (18.6)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2025.8.

4.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규모 추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규모는 202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과 정책금융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2022년 본예산(18조 8,412억원) 대비 5조 3,206억원 감액된 13조 5,205억원으로 편성하였음. 2024년 예산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5,961억원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계상됨.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3%로 전년 대비 4.3%p 증가함

반면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7%로 전년 대비 4.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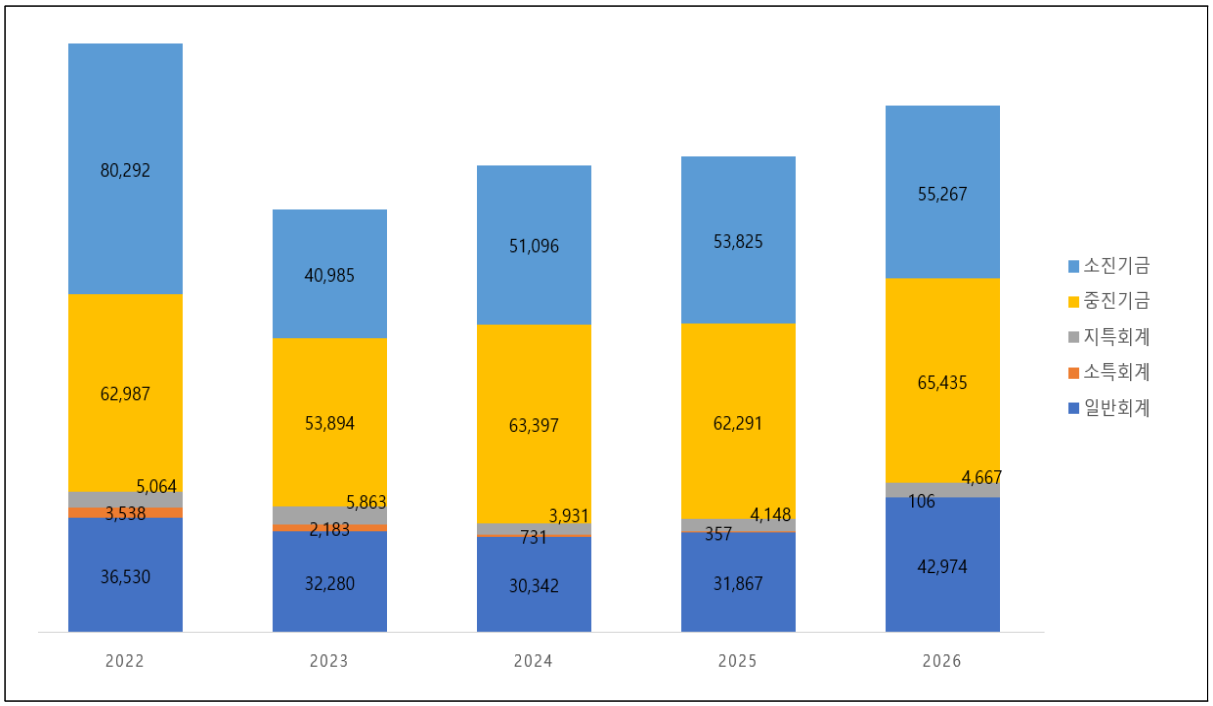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5년간 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본예산	추경	
예산	일반회계	36,530	46,072	32,280	32,280	30,342	31,867	35,713	42,974
	소특회계	3,538	3,538	2,183	2,183	731	357	357	106
	지특회계	5,064	4,934	5,863	5,863	3,931	4,148	4,148	4,667
기금	중진기금	62,987	67,067	53,894	58,646	63,397	62,291	72,641	65,435
	소진기금	80,292	479,177	40,985	40,985	51,096	53,825	96,654	55,267
합계		188,412	600,789	135,205	139,958	149,497	152,488	209,513	168,449

주: 추경은 기금변경 포함, 총지출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5년간 규모 추이



주: 연도별 본예산(총지출)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보면,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프로그램 비중(31.8%)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20.2%)으로, 소상공인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의 52.0%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프로그램별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벤처기업활성화지원 프로그램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7.9%로 가장 크고,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17.5% 증가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두 번

째로 크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2.3% 증가함.

중소기업인력지원 프로그램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로 가장 작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0.0%(1억원) 감소하였고, 소상공인·전통시장 프로그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두 번째로 작으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4% 증가함.

지역중소기업육성 프로그램의 연평균 증가율은 △7.1%이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6.9% 증가함.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5년간 프로그램별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프로그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연평균 증가율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37,939	23,640	32,408	32,423	30,645	△5.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9,481	17,629	15,365	16,866	25,687	7.2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358	2,676	2,591	2,684	2,926	5.5
지역중소기업육성	3,612	3,000	1,949	1,964	2,689	△7.1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73,112	39,623	50,072	51,767	53,543	△7.5
동반성장지원	411	394	357	389	442	1.8
중소기업육성지원	1,472	1,408	1,366	1,395	1,470	0.0
창업환경조성	36,311	36,001	34,361	34,271	34,074	△1.6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763	3,412	4,645	5,113	11,120	17.9
중소기업인력지원	4,350	3,809	2,669	1,771	1,770	△20.1
중소기업행정지원	3,603	3,613	3,714	3,844	4,083	3.2
합계	**188,412**	**135,205**	**149,497**	**152,488**	**168,449**	**△2.8**

주: 연도별 본예산(총지출)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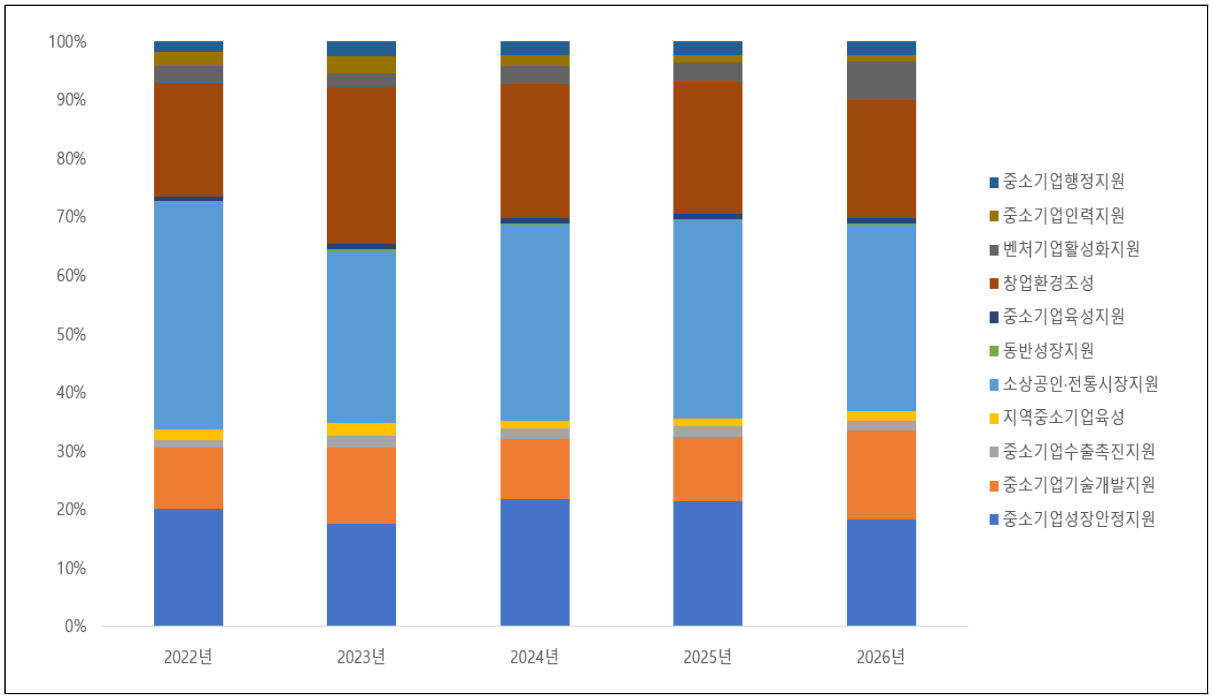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5년간 프로그램별 비중 추이

(단위: %)

프로그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20.1	17.5	21.7	21.3	18.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0.3	13.0	10.3	11.1	15.2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1.3	2.0	1.7	1.8	1.7
지역중소기업육성	1.9	2.2	1.3	1.3	1.6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38.8	29.3	33.5	33.9	31.8
동반성장지원	0.2	0.3	0.2	0.3	0.3
중소기업육성지원	0.8	1.0	0.9	0.9	0.9
창업환경조성	19.3	26.6	23.0	22.5	20.2
벤처기업활성화지원	3.1	2.5	3.1	3.4	6.6
중소기업인력지원	2.3	2.8	1.8	1.2	1.1
중소기업행정지원	1.9	2.7	2.5	2.5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도별 본예산(총지출)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5년간 프로그램별 비중 추이



주: 연도별 본예산(총지출)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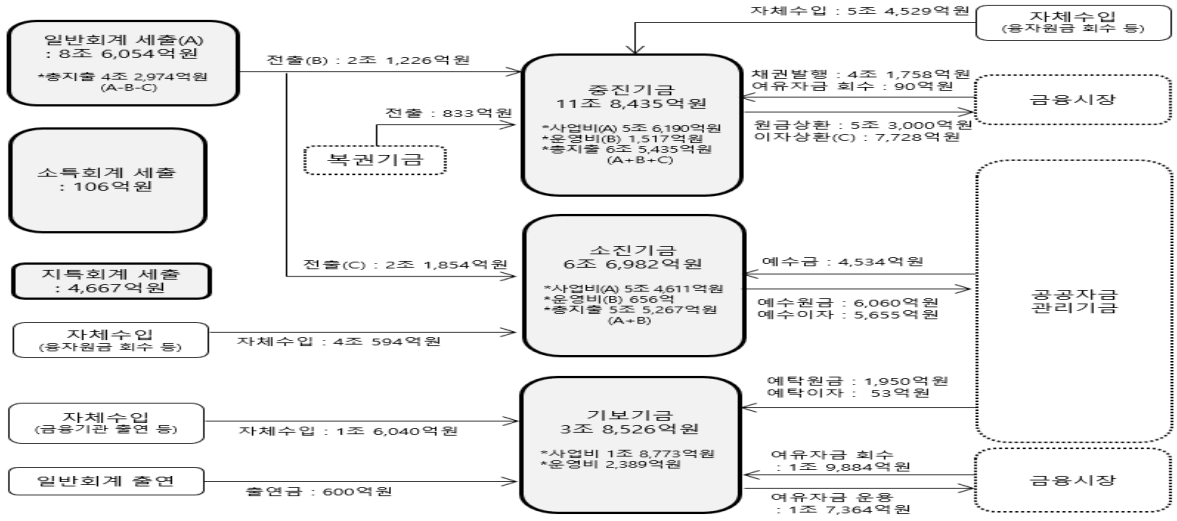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개의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구성됨. 회계 및 기금간 재원 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2조 1,226억원이 전출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는 2조 1,854억원이 전출됨.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4조 1,758억원)하고, 여유자금을 회수(90억원)하며, 그 외에 융자원금 회수 등 자체수입(5조 4,529억원), 복권기금 전입금(833억원) 수입이 있음.

기술보증기금은 여유자금회수(1조 9,884억원), 금융기관 출연금 및 보증료 등 자체수입(1조 6,04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4,534억원) 및 융자원금 회수 등 자체수입(4조 594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전달체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16조 8,449억원, 총지출 기준) 중 회계·기금 간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2.8%, 일반회계 25.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0.1% 순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소특회계	지특회계	중진기금	소진기금	합계
2026년 예산안	42,974	106	4,667	65,435	55,267	168,449
	25.5	0.1	2.8	38.8	32.8	100.0

주: 총지출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실 단위로 분류하여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정책실의 예산이 8조 8,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실 예산이 5조 4,677억원이며, 창업 및 벤처 업무를 담당하는 창업벤처혁신실 예산이 2조 2,871억원 순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실별)

(단위: 억원)

구분		기획조정실	중소기업 정책실	창업벤처 혁신실	소상공인 정책실	합계
2026년 예산안		1,929	88,972	22,871	54,677	168,449
	예산	1,929	35,071	9,656	1,091	47,747
	기금	-	53,901	13,215	53,586	120,702

주: 총지출 기준(인건비, 기본경비 예산은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집행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순으로 담당 사업예산 규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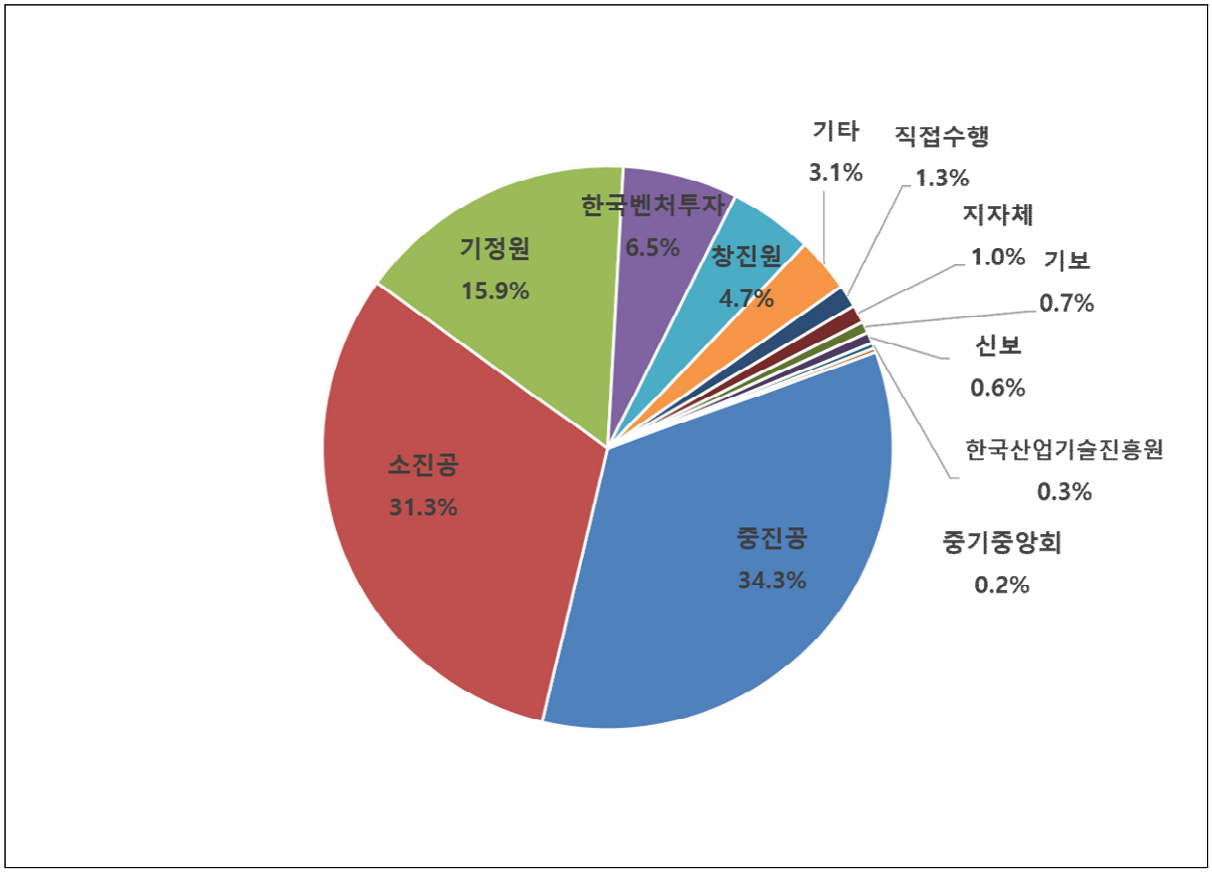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집행기관별)

(단위: 억원)

구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2025년 예산안	57,699	52,720	26,746	11,000	7,998	1,743
예산	3,264	-	26,746	-	7,998	1,703
기금	54,435	52,720	-	11,000	-	40

구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중기부 직접집행	기타
2025년 예산안	1,109	1,070	532	395	2,181	5,256
예산	1,109	1,070	532	395	2,177	2,753
기금	-	-	-	-	4	2,50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 2026년 신규·종료·계속사업

가.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출연 등 7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자율) 1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서 7,321억원 규모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일반회계 (7개)	신용보증기금출연[2]	80,000
	R&D사업화 계정 출연	50,000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기술개발(R&D)	5,000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3]	129,912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3]	457,041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3,000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R&D)	3,6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지역특화산업육성(자율)[4]	3,594
합 계		**732,147**

주1: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주2: 계속사업(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순감이나, 2026년 예산안에 반영)
주3: 과목구조개편에 따른 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리
주4: 회계 내 계정 간 이관: (기존) 지역지원계정 → (이관) 지역자율계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종료사업

종료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기술거래활성화지원 등 5개 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등 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R&D) 등 6개 사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비은행권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개사업, 총 14개 사업에서 681억원 규모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종료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종료사유
일반회계(5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3,146	R&D 사업화 계정출연 사업('26년 신규) 통폐합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36,199	사업기간 종료
	공정·품질기술개발(R&D)	4,675	사업기간 종료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	1,200	사업기간 종료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R&D)	1,333	사업기간 종료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강화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2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2,609	사업기간 종료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R&D)	4,069	사업기간 종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6개)	지역특화산업육성+(R&D)	8,150	사업기간 종료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613	사업기간 종료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R&D)	700	사업기간 종료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	300	사업기간 종료
	상권활성화 사업(세종)	780	세종시 사업종료 요청
	지식산업센터(세종)	3,805	사업기간 종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561	'25년 보조사업연장 평가 결과 사업 폐지
합 계		**68,140**	

주: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 계속사업

2026년도 예산안 계속사업 중 주요 증액 또는 감액사업(사업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1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당초)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일반회계 (14개)	기술보증기금출연	40,000	60,000	20,000	50.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20,000	27,000	7,000	35.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36,076	436,556	200,480	84.9
	기술혁신기반조성	16,521	42,161	25,640	155.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344,385	494,242	149,857	43.5
	창업성장기술개발(R&D)	596,010	786,419	190,409	31.9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1,650	7,700	6,050	366.7
	수출지원기반활용	127,560	150,203	22,643	17.8
	창업사업화지원	403,567	448,468	44,901	11.1
	민간협력창업자육성	208,281	239,856	31,575	15.2
	K-바이오랩허브구축사업(R&D)	1,561	6,963	5,402	346.1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13,505	22,500	8,995	66.6
	벤처캐피탈선진화	3,533	4,956	1,423	40.3
	구미전자공고생활관개축	1,556	2,776	1,220	78.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21,560	96,939	75,379	349.6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10,261	16,426	6,165	60.1
	상권활성화사업(제주)	970	2,000	1,030	106.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개)	차입금이자상환(기금)	752,254	772,791	20,537	2.7
	재도약촉진	41,549	106,731	65,182	156.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00	1,100,000	600,000	120.0
	전남연수원건립	8,013	12,178	4,165	52.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5개)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83,422	128,069	44,647	53.5
	소상공인성장지원	265,085	621,243	356,158	134.4
	소공인특화지원	119,870	130,494	10,624	8.9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51,649	76,843	28.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65,205	564,145	98,940	21.3

주: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당초)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일반회계 (6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R&D)	51,690	23,326	△28,364	△54.9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87,238	67,790	△19,448	△22.3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50,410	23,325	△27,085	△53.7
	국제중소기업협력ODA(ODA)	19,792	10,592	△9,200	△46.5
	중소벤처분야 다자협력 촉진	1,580	365	△1,215	△76.9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9,347	10,440	△8,907	△46.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산학연CollaboR&D(R&D)	56,966	39,420	△17,546	△30.8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개)	재도약지원자금(융자)	750,100	612,500	△137,600	△18.3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311,110	1,111,110	△200,000	△15.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382,450	316,378	△66,072	△17.3
	중진공 본사 증축	1,863	276	△1,587	△85.2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2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10,940	168,128	△42,812	△20.3
	소상공인지원(융자)	3,770,000	3,362,000	△408,000	△10.8

주: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Ⅰ. 예산안 개요

1. 세입 예산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억원(△0.1%) 감소한 2,705억원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 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합 계	2,708	2,708	2,705	△3	△0.1
일반회계	2,498	2,498	2,502	4	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0	210	203	△7	△3.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5년 2,498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2,5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안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의 징수결정액 증가 추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합 계	249,821	249,821	250,225	404	0.2
관유물대여료	349	349	466	117	33.5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6,906	56,906	59,703	2,797	4.9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970	970	1,529	559	57.6
기타경상이전수입	191,500	191,500	188,447	△3,053	△1.6
잡수입	65	65	60	△5	△7.7
고정자산매각대	31	31	20	△11	△3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5년 210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한 2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감소 추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합 계	20,960	20,960	20,280	△680	△3.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460	2,460	2,636	176	7.2
기타경상이전수입	18,500	18,500	17,644	△856	△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세출 예산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계[1] 기준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조 4,606억원(37.2%)이 증가한 9조 827억원이며, 총지출 기준[2]으로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1,375억원(31.3%)이 증가한 4조 7,747억원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출 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총계 기준	**66,221**	**96,404**	**90,827**	**24,606**	**37.2**
일반회계	61,716	91,899	86,054	24,338	39.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및공급망 안정화특별회계	357	357	106	△251	△7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48	4,148	4,667	519	12.5
총지출 기준	**36,372**	**40,218**	**47,747**	**11,375**	**31.3**
일반회계	31,867	35,713	42,974	11,107	34.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및공급망 안정화특별회계	357	357	106	△251	△7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48	4,148	4,667	519	1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총계 = 총지출(일반지출)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2)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예산을 단순 합계한 규모

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2025년 본예산 3조 1,867억원 대비 1조 1,107억원(34.9%)이 증가한 4조 2,974억원으로 편성됨.

②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2025년 본예산 357억원 대비 251억원(△70.3%)이 감소한 106억원으로 편성됨.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2025년 본예산 4,148억원 대비 519억원(12.5%)이 증가한 4,667억원으로 편성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업 및 벤처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 초기, 도약기) 사업화 지원 및 AI, 팹리스,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특화지원을 위해 창업패키지 예산을 195억원 증액하였고,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을 146억원 증액하였고, 예비청년벤처투자인력양성, M&A활성화 지원 및 기업승계 M&A지원 등을 위해 벤처캐피

탈선진화 예산을 14억원 증액하였음.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제조현장의 신속한 AI전환을 위해 스마트제조 분야에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반영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해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예산을 2,005억원 증액하였고, 단계별 팁스 방식 R&D 지원체계 확립 및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2,822억원 증액하였고, “AI 특화 교육”을 신설하기 위해 산학협력인력양성 예산을 6억원 증액하였음.

수출 분야에서는 美 관세조치,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완화 및 수출역량 강화지원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예산을 226억원 증액하였고, 수출 상대국의 규제대응에 필요한 인증획득비용 및 성분분석시험, 성능시험 등 시험분석비용 지원 확대로 수출기업의 비용경감 지원을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예산을 22억원 증액하였음.

지역경제 및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혁신특구육성 예산을 38억원 증액하였으며,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산을 753억원 증액하였음.

산업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Next 유니콘 프로젝트 특례보증 등 첨

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 예산을 200억원 증액하였고, AI산업 등 6대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제품 지정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예산 800억원 증액하였음.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분야에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율계정 241억원, 제주계정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율계정 417억원, 제주계정 23억원을 편성하였음.

중소기업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서비스 및 AI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예산을 28억원 증액하였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출 예산안의 성질별 비중을 보면, 사업비가 96.1%에서 96.8%로 소폭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3.1%에서 2.5%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도 0.8%에서 0.7%로 소폭 감소하였음.

2026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3] 내역(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예산 (A)	구성비(%)	2026년 예산안 (B)	구성비(%)	증 감 (B-A)	%
합 계	**36372**	**100.0**	**47747**	**100.0**	**11375**	**31.3**
인 건 비	1,140	3.1	1191	2.5	51	4.5
기본경비	304	0.8	313	0.7	9	3.0
사 업 비	34,928	96.1	46243	96.8	11,315	3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일반회계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국고보조금 사업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 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예산총액은 9,30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9,725억원 대비 422억원(△4.3%)이 감소하였음.

이 중 2026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은 7,49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7,387억원 대비 110억원(1.5%)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예산은 25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255억원 대비 5억원(△1.8%)이 감소하였음.

2026년 민간자본보조 사업예산은 299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680억원 대비 381억원(△56.0%)이 감소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예산은 1,25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404억원 대비 147억원(△10.5%)이 감소하였음.

202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계		972,489	930,253	△42,236	△4.3
경상이전	<민간경상보조>	738,684	749,666	10,982	1.5
	수출지원기반활용	127,392	150,051	22,659	17.8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18,278	18,278	-	-
	국제중소기업협력ODA (ODA)	19,792	7,180	△12,612	△63.7
	창업사업화지원	130,996	145,622	14,626	11.2
	창업저변확대	18,500	18,862	362	2.0

구분	사업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75,000	60,000	△15,000	△20.0
	중소기업재기지원	16,629	14,966	△1,663	△10.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54,252	27,398	△26,854	△49.5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440	-	△440	순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305	200	△105	△34.4
	벤처기업경쟁력강화	5,858	4,920	△938	△16.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확산	11,740	10,620	△1,120	△9.5
	기술혁신기반조성	8,284	35,446	27,162	327.9
	지역특구제도운영	13,056	16,611	3,555	27.2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생태계구축	15,325	16,431	1,106	7.2
	여성기업육성	10,485	10,187	△298	△2.8
	장애인기업육성	10,502	13,006	2,504	23.8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	61,186	65,034	3,848	6.3
	마케팅지원사업	21,698	22,515	817	3.8
	공공구매제도운영	900	900	-	-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16,957	17,508	551	3.2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및 옴부즈만운영	709	709	-	-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10,511	12,053	1,542	14.7
	산학협력인력양성	51,472	52,093	621	1.2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8,947	10,040	△8,907	△47.0
	창업인프라지원	7,079	7,079	-	-
	중소기업밀집지역위기 대응기반구축	3,315	3,315	-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8,926	8,492	△434	△4.9
	창업인프라지원(제주)	100	100	-	-
	창업인프라지원(세종)	50	50	-	-
	<자치단체경상보조>	**25,465**	**25,000**	**△465**	**△1.8**
	상권활성화사업(자율)	21,660	21,275	△385	△1.8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자율)	930	816	△114	△12.3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	1,725	1,774	49	2.8
	상권활성화사업(제주)	370	1,135	765	206.8
	상권활성화사업(세종)	780	-	△780	순감

구분	사업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	**67,960**	**29,895**	**△38,065**	**△56.0**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23,220	7,000	△16,220	△69.9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31,445	-	△31,445	순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13,200	22,300	9,100	68.9
	장애인기업육성	95	595	500	526.3
	<자치단체자본보조>	**140,380**	**125,692**	**△14,688**	**△10.5**
	지식산업센터(자율)	85,699	94,817	9,118	10.6
	상권활성화사업(자율)	721	2,863	2,142	297.1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자율)	43,975	22,913	△21,062	△47.9
	지역특화산업육성(자율)	-	3,594	3,594	순증
	지역특화산업육성	3,000	-	△3,000	△100.0
	상권활성화사업(제주)	600	865	265	44.2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제주)	2,580	640	△1,940	△75.2
	지식산업센터(세종)	3,805	-	△3,805	순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출연금 사업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 예산안의 출연금 예산은 3조 5,34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2조 3,872억원 대비 48.1%인 1조 1,474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2026년도 출연금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계	**2,387,218**	**3,534,585**	**1,147,367**	**48.1**
신용보증기금출연	-	80,000	80,000	순증
기술보증기금출연	40,000	60,000	20,000	50.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20,000	27,000	7,000	35.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24,267	425,867	201,600	89.9
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지원	10,888	10,888	-	-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5,836	6,053	217	3.7
혁신제품지정사업	400	400	-	-
지역특화제조데이터활성화	6,000	6,000	-	-
기술혁신기반조성	8,237	6,715	△1,522	△18.5
중소기업기술거래활성화지원	3,146	-	△3,146	순감
R&D사업화 계정 출연	-	50,000	50,000	순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344,385	494,242	149,857	43.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36,199	-	△36,199	순감
공정·품질기술개발(R&D)	4,675	-	△4,675	순감
창업성장기술개발(R&D)	596,010	786,419	190,409	31.9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R&D)	51,690	23,326	△28,364	△54.9
건강기능식품개발지원사업(R&D)	1,200	-	△1,200	순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39,817	39,803	△14	0.0

사업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R&D)	1,650	7,700	6,050	366.7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 감축 기술개발(R&D)	-	5,000	5,000	순증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48,788	129,912	81,124	166.3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174,810	457,041	282,231	161.5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	3,000	3,000	순증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R&D)	-	3,600	3,600	순증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 (정보화)	200	20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 (R&D)	8,032	8,785	753	9.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15,300	17,519	2,219	14.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3,001	3,001	-	-
창업저변확대	1,800	1,100	△700	△38.9
창업사업화지원	272,504	302,779	30,275	11.1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33,281	179,856	46,575	34.9
K-바이오랩허브구축사업(R&D)	1,561	6,963	5,402	346.1
중소벤처기업구조혁신지원R&D (R&D)	1,333	-	△1,333	순감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9,736	33,362	23,626	242.7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18,498	23,298	4,800	25.9
벤처캐피탈선진화	-	850	850	순증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34,065	34,065	-	-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7,283	12,301	5,018	68.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소특)	25,692	7,275	△18,417	△71.7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소특)	2,609	-	△2,609	순감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 개발(R&D)	4,069	-	△4,069	순감

사업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3,341	3,318	△23	△0.7
산학연CollaboR&D(R&D)	56,966	39,420	△17,546	△30.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7,618	7,586	△32	△0.4
지역특화산업육성	82,081	84,681	2,600	3.2
지역특화산업육성+(R&D)	8,150	-	△8,150	순감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613	-	△613	순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21,560	96,939	75,379	349.6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30,857	24,686	△6,171	△20.0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10,261	16,426	6,165	60.1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5,013	4,613	△400	△8.0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R&D)	700	-	△700	순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2,796	2,596	△200	△7.2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	300	-	△300	순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Ⅱ. 검토의견

[총 론]

1. R&D 사업 총괄

□ 예산안 현황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은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나뉘어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85억 5,500만원(44.7%)이 증액된 2조 1,955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음.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9,998억 5,600만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05억 9,3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50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는 R&D 예산이 미편성되었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경우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에 대한 R&D 예산 위주로 반영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26)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추경			
R&D 예산 총계	20	1,393,220	1,516,951	1,526,951	2,195,506	678,555	44.7
일반회계	13	1,204,316	1,344,215	1,354,215	1,999,856	655,641	48.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69,077	35,711	35,711	10,593	△25,118	△7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	118,628	137,025	137,025	185,057	48,032	35.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	-	-	-	-
기술보증기금	-	-	-	-	-	-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	1,199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검토의견

(1) R&D 예산 확대편성에 따른 철저한 사업 기획 및 관리 필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예산은 2조 1,95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5년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임.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되며, 주요 R&D 사업에는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연구개발

사업, ③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 구축,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되는데,[4]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26년도 R&D 예산안 중 95.7%가 주요 R&D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R&D 및 일반 R&D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1	`22	`23	`24	`25	`26(안)
주요 R&D (비율)	16,613 (96.4)	16,700 (93.4)	16,510 (93.3)	13,010 (93.4)	14,241 (93.9)	21,019 (95.7)
일반 R&D (비율)	616 (3.6)	1,188 (6.6)	1,191 (6.7)	922 (6.6)	929 (6.1)	936 (4.3)
합계 (비율)	17,229 (100.0)	17,888 (100.0)	17,701 (100.0)	13,932 (100.0)	15,170 (100.0)	21,955 (100.0)

주: 본예산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는데,[5]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주요 R&D

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5)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 예산안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변경 사항 없이 심의 결과대로 편성되었음.

R&D 사업의 확대 편성에 따라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규 R&D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6]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중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CBAM[7]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주요 수출 품목의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총사업비 4,168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7)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도 신규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대한 예타 적정성 검토 확정 전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2년 연속으로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R&D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인 R&D 사업의 예타 실시 여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6년 예산안	예타 실시여부	미실시사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494,242	-	계속사업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29,912	-	계속사업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457,041	-	계속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R&D)	786,419	-	계속사업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R&D)	23,326	실시(`20.11)	-
K-바이오랩허브구축사업	6,963	실시(`22.8)	-
산학연CollaboR&D(R&D)	39,420	실시(`18.8)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96,939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지역균형발전)에 해당하여 국무회의 의결(`24.8)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 확정('25~'29, 1조 445억원)
중소기업수출핵심품목탄소감축기술개발(R&D)	5,000	예타 진행 중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2026년도 R&D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증액규모가 큰 사업들의 2025년 과제 경쟁률을 살펴보면, 경쟁률이 1.2:1에서 11.8:1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지역기업역량강화 등 2025년 과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사업들을 대상으

로 사업 기획을 보완하는 등 증액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R&D 주요 증액사업의 2025년도 과제 경쟁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증액규모(작성요청)			2025 과제 경쟁률
		25예산	26예산안	증액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일반)(R&D)	글로벌선도기술개발	196,779	273,993	77,214	4.6:1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147,606	220,249	72,643	11.8:1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5,206	28,667	23,461	2.7:1
	구매연계·상생협력	43,582	91,245	47,663	8.6:1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스케일업팁스	146,750	292,425	145,675	1.5:1
	글로벌팁스	-	74,706	74,706	-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	16,800	70,873	54,073	-
	융자연계형	11,260	19,037	7,777	5.5: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TIPS	477,651	668,391	190,740	1.2:1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1,650	7,700	6,050	10.6:1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주력산업생태계구축	13,720	72,847	59,127	3.9:1
	지역기업역량강화	7,840	24,092	16,252	1.7:1

주: 1. 팁스방식 R&D(팁스, 스케일업 팁스 등)는 투자사가 일차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한 기업 중 경쟁하여 선정되는 이중 경쟁 구조로 타 사업 경쟁률과 차별성이 있음
2.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예타 적정성검토 확정 전 예산이 편성되고 전체 품목 중 일부 품목만 공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셋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R&D 과제 수행

을 완료한 경우 최종평가 이후 5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하고 있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종료과제 대상 성과활용보고서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대상의 8~10% 가량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최근 3년(2021~2023)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개, %)

성과조사 연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대상	대상과제수	제출과제수	제출률
2021	`16 ~ '20년 종료과제 대상	20,254	18,418	90.9
2022	`17 ~ '21년 종료과제 대상	21,003	19,212	91.5
2023	`18 ~ '22년 종료과제 대상	19,123	17,684	9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종료과제의 기술자료 임치의무 이행률을 살펴보면, 임치의무 이행 대상 중 매년 10~20% 가량은 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3년(2022～2024) 기술자료 임치의무 이행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임치의무 이행대상(A)		3,383	4,928	2,811	11,122
임치의무 이행건수(B)		3,015	4,321	2,283	9,619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임치	2,944	4,266	2,217	9,427
	기술보증기금 임치	71	55	66	192
임치의무 이행률 (B/A)		89.1	88.9	81.2	8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및 기술자료 임치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미제출 과제 수행자 및 임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넷째, 최근 3년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R&D 종료 과제에 대한 정산 지연, 제재부가금 장기미납 등의 문제 또한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8)]

해당 지적 사항은 2025년 8월말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료된 과제 중 2025년 8월말까지 정산금[9)]이 미반납된

8)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2023회계연도 결산: (주의) R&D 관련 제재부가금 징수비목 정정 및 장기미납액 징수 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수탁 R&D 사업 정산금 등 수납 관리 강화 필요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제 건수는 총 681건으로, 미반납액이 319억 8,100만원에 이르고,

2020~2024년 R&D 종료과제의 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산학연협력기술개발(R&D)(2151-301)	294	6	-	-	-	-	-	-	-	-	294	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2134-303)	242	3	818	16	1,047	20	1,609	24	4,961	41	8,677	10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2134-302)	219	2	93	5	1,349	15	968	16	2,818	45	5,447	83
창업성장기술개발(R&D)(2134-309)	240	13	796	34	1,312	36	2,761	78	5,331	121	10,440	282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R&D)(2134-305)	169	18	193	11	125	8	78	6	159	7	724	50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R&D)(2134-321)	-	-	-	-	-	-	-	-	-	-	0	0
산학연 Collabo R&D(R&D)(2151-302)	47	4	27	4	95	6	211	12	20	2	400	28
중소기업R&D역량제고 (R&D)(2134-310)	-	-	-	-	17	2	96	5	55	2	168	9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R&D)(2134-342)	-	-	189	2	1	1	-	-	-	-	190	3
창업성장기술개발(소 특)(R&D)(2134-309)	-	-	-	-	1,022	12	58	3	264	3	1,344	18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 (R&D)(2134-345)	-	-	12	1	-	-	30	3	-	-	42	4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R&D)(2134-350)	-	-	-	-	6	1	-	-	-	-	6	1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R&D)(2134-340)	-	-	-	-	21	2	11	1	-	-	32	3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 (R&D)(2134-352)	-	-	-	-	1	1	55	1	184	4	240	6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R&D)(2134-341)	-	-	-	-	223	2	-	-	-	-	223	2
예비가젤형기술개발(R&D)(2134-346)	-	-	-	-	563	3	100	1	-	-	663	4
산학협력거점형 플랫폼 (R&D)(2151-307)	-	-	-	-	10	1	-	-	-	-	10	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R&D)(2134-318)	-	-	-	-	3	1	-	-	-	-	3	1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 특)(R&D)(2134-303)	-	-	-	-	491	2	1	1	-	-	492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 술개발(R&D)(4131-320)	-	-	-	-	147	1	-	-	-	-	147	1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R&D)(2151-306)	-	-	-	-	-	-	277	7	-	-	277	7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R&D)(2134-354)	-	-	-	-	-	-	218	2	-	-	218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특)(R&D)(2134-302)	-	-	-	-	-	-	97	2	31	1	128	3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R&D)(2134-384)	-	-	-	-	-	-	142	3	-	-	142	3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 개발(R&D)(2134-388)	-	-	-	-	-	-	44	1	7	2	51	3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R&D)(2134-382)	-	-	-	-	-	-	264	1	-	-	264	1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R&D)(2134-371)	-	-	-	-	-	-	18	4	-	-	18	4
지역특화산업육성+(R&D)(3336-304)	-	-	-	-	-	-	315	11	442	9	757	20
산업단지대개조지역산업R&D(R&D)(3336-327)	-	-	-	-	-	-	3	1	-	-	3	1
지역특화산업육성+(R&D)(3336-320)	-	-	-	-	-	-	-	-	-	-	0	0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R&D)(2134-416)	-	-	-	-	-	-	-	-	-	-	0	0
기술지주회사 자회사R&BD(R&D)(2151-308)	-	-	-	-	-	-	114	9	-	-	114	9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지원(R&D)(2134-398)	-	-	-	-	-	-	-	-	80	1	80	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R&D)(2134-344)	-	-	-	-	-	-	7	1	93	4	100	5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사업(R&D)(2151-309)	-	-	-	-	-	-	-	-	117	6	117	6
성과공유형 공통기술R&D(R&D)(2134-408)	-	-	-	-	-	-	-	-	-	-	0	0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4131-326)	-	-	-	-	-	-	-	-	-	-	0	0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R&D지원사업(R&D)(2134-405)	-	-	-	-	-	-	-	-	18	1	18	1
스마트 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R&D)(2134-377)	-	-	-	-	-	-	-	-	-	-	0	0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R&D)(2134-353)	-	-	-	-	-	-	-	-	-	-	0	0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기술개발(R&D)(2134-378)	-	-	-	-	-	-	-	-	4	1	4	1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D)(2163-307)	-	-	-	-	-	-	123	3	-	-	123	3
혁신제품고도화기술개발지원사업(R&D)(2134-429)	-	-	-	-	-	-	-	1	25	1	25	2
합 계	**1,211**	**46**	**2,128**	**73**	**6,433**	**114**	**7,600**	**197**	**14,609**	**251**	**31,981**	**681**

주: 2025.8.31.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재처분[10]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부가금 발생액 315억 9,300만원 및 268억 1,800만원 중 2025년 8월말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각각 146억 2,200만원 및 219억 9,700만원에 이름.

2020～2024년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연도별 환수 결정액 (a)		9,851	10,152	4,296	4,492	2,802	31,593
환수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0	3,126 (31.7)	[해당없음]				3,126
	2021	4,630 (47.0)	3,991 (39.3)				8,621
	2022	5,530 (56.1)	4,762 (46.9)	1,999 (46.5)			12,291
	2023	5,766 (58.5)	5,271 (51.9)	2,146 (50.0)	1,124 (25.0)		14,307
	2024	5,904 (59.9)	5,576 (54.9)	2,352 (54.7)	2,443 (54.4)	171 (6.1)	16,446
	2025.8 (b)	5,940 (60.3)	5,637 (55.5)	2,496 (58.1)	2,470 (55.0)	428 (15.3)	16,971
미수납 총액 (c) = (a)-(b)		3,911	4,515	1,800	2,022	2,374	14,622

주: 1. 2025.8.31.기준
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 결정액에서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2020～2024년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적용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a)		132	65	196	967	11,927	13,531	26,818
제재부가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0	66 (50.0)	(해당없음)					66
	2021	71 (53.8)	17 (26.2)					88
	2022	71 (53.8)	65 (100)	0 (0.0)	0 (0.0)			136
	2023	71 (53.8)	65 (100)	0 (0.0)	162 (16.8)	391 (3.3)		689
	2024	71 (53.8)	65 (100)	0 (0.0)	162 (16.8)	2,072 (17.4)	319 (2.4)	2,689
	2025.8 (b)	71 (53.8)	65 (100)	0 (0.0)	162 (16.8)	2,700 (22.6)	1,823 (13.5)	4,821
미수납 총액 (c) = (a)-(b)		61	0	196	805	9,227	11,708	21,997

주: 1. 2025.8.31.기준

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

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직접 수납·징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음. 동시에 협약위배, 연구결과불량 등 기존 환수금에 포함되었던 항목을 제재부가금으로 분류 변경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예산안 확대 편성에 따라 확대된 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관리, 기술자료 임치의무 이행 점검, 과제 정산 및 환수금·제재부가금 징수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기술 분야별 R&D 사업 기획·관리 방안 도입 검토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11].

R&D 사업은 ①기술수준 진단을 바탕으로 한 기술수요 파악에서부터 출발하여 ②기술 분야별로 현재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③R&D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수준을 설정한 후 ④R&D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대비 달성 정도를 분석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차년도 또는 중장기 R&D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술 분야별 R&D 사업 기획 및 환류 절차의 운영을 통해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3년 단위로 미래 유망기술과 최신 기술개발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중소벤처기업 R&D 투자에 적합한 유망기술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음.

---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27년 전략기술로드맵 「4대 기술테마 39개 전략분야」

기술테마	미래혁신 선도(9)	탄소중립 이행(8)	성장동력 고도화(11)	新디지털 전환(11)
전략분야	① 우주(위성체·발사체) ② 첨단항공 ③ AI ④ 바이오 ⑤ 시스템반도체 ⑥ 차세대이동통신 ⑦ 자율주행차 ⑧ 지능형로봇 ⑨ 미래형선박	① 청정연료 ② 신재생에너지 ③ 이차전지 ④ 친환경자동차 ⑤ 친환경공정전환 ⑥ 자원재활용 ⑦ 에너지재활용 ⑧ CCUS	① 반도체장비 ② 디스플레이장비 ③ 전기전자부품 ④ 산업용기계 ⑤ 금속소재 및 성형가공 ⑥ 의료기기 ⑦ 섬유 ⑧ 유기/복합소재 ⑨ 기능성식품 ⑩ 세라믹 ⑪ 재난/안전	① 정보통신 서비스 ② 헬스케어 서비스 ③ 유통물류 서비스 ④ 관광콘텐츠 서비스 ⑤ 교육 서비스 ⑥ 스마트홈 ⑦ 스마트제조 ⑧ 스마트시티 ⑨ 디지털콘텐츠 ⑩ 사이버보안 ⑪ 서비스플랫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R&D 사업 중 품목지정형[12] 및 지정공모형[13] 과제 사업에 대해 사전에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유공모형[14] 과제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중 과제 신청 과정에서 R&D 수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술수요 및 시장수요를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과제 중 자유공모 과제의 비중은 과제수를 기준으로 76.8% 수준임.

12) 지정공모형과 자유공모형의 중간 형태로, 특정 품목(제품 또는 제품군)을 제시하지만 세부 스펙(RFP)은 정하지 않는 방식
13) 개발이 필요한 대상 기술 및 목표가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
14) 연구 주제나 기술 분야에 제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최근 5년(2021～2025.8.)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유형

(단위: 개, %)

구분	자유공모(A)	지정공모(B)	품목지정(C)	합계 (A+B+C)	자유공모 비중 [A/(A+B+C)]
2021년	7,847	711	1,067	9,625	81.5
2022년	7,784	1,412	1,697	10,893	71.5
2023년	7,059	1,907	1,414	10,380	68.0
2024년	8,697	578	1,324	10,599	82.1
2025.8월	5,942	399	785	7,126	83.4
계	37,329	5,007	6,287	48,623	7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진행과정에서 계속성과 필요성 등 R&D 과제에 대한 기술수요가 발견될 수 있지만, 자유공모형 과제사업이 76.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술분야별로 R&D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야별 R&D 재원배분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R&D 사업이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해 R&D 사업을 기획하며, R&D 이후 사업결과를 평가해 로드맵을 업데이트하여 차년도 R&D 사업 기획에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기술분야별 R&D 사업 기획 및 환류에 활용해야 함에도, 해당 로드맵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미래유망기술을 안내하고, 전략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이 기술분야별 R&D 사업 분류체계를 운영하는 대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기술분야 대신 기업의 성장에 따라 R&D 졸업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예산편성 환류를 진행하고 있고, 타 부처에 비해 높은 R&D 사업화 실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전용 R&D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막대한 재정투자로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안이 대폭 확대 편성된 만큼, 향후 신규 R&D 사업 기획 및 환류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체계적인 기술분야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5] R&D 수행 중소기업의 성장주기 및 수요에 기반한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더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업무 영역별 기술수준 및 기술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R&D 사업 기획을 접목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야별로 주기적인 기술수준 실태조사 및 기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R&D 재원 배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15) 2025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팁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기획시 기업의 수요 고려 외에 기술분야별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과 유사한 취지임.

[일반회계]

1.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 예산안 현황

‘신용보증기금출연’(1976~, 출연)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16]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17]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억원이 순증하였음.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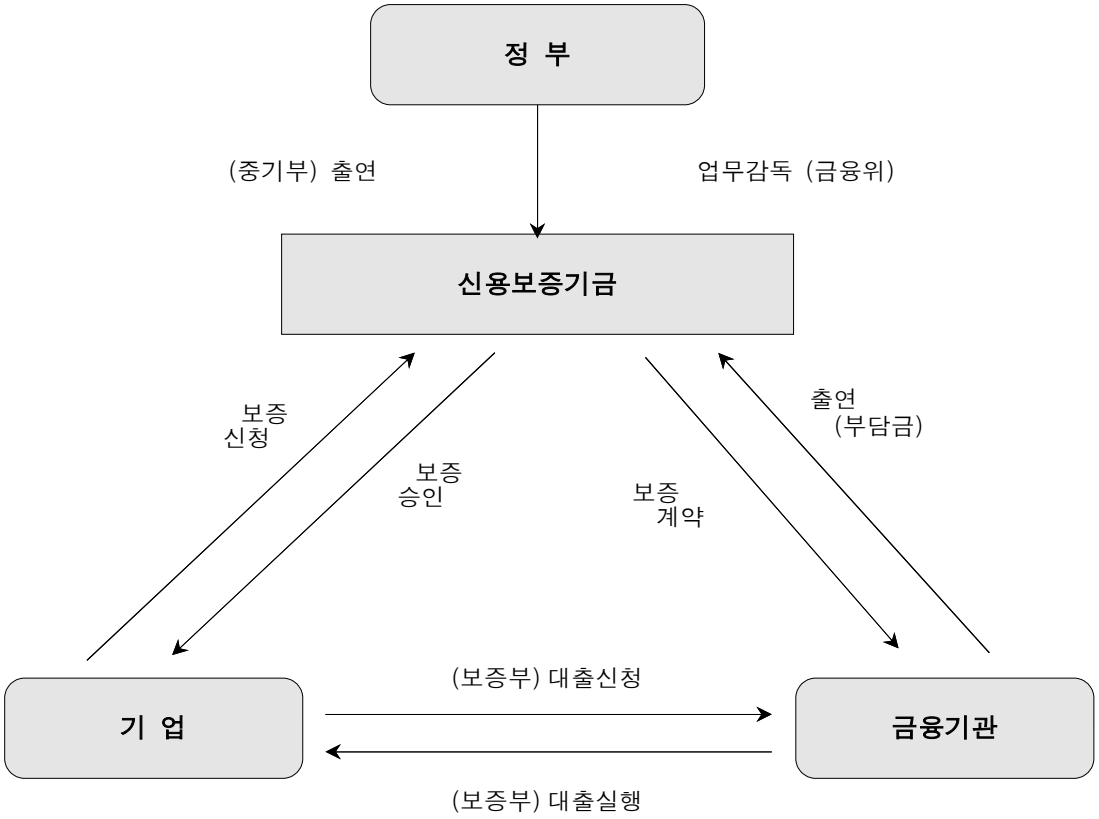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	100,000	80,000	80,000	순증

16)「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17)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보증지원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고,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며, 채무불이행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됨.

신용보증기금 사업 추진체계



□ 검토의견

(1) 신용보증기금출연: 적극적인 보증공급 확대노력 필요

2026년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우대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출연으로 800억원이 편성되었음.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800억원과 자체재원 800억원으로 보증재원 1,600억원을 조성하여 AI 첨단산업 우대보증[18]을 2조원 규모(운용배수 12.5배)로 공급할 계획임.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총보증의 2025년 8월말 기준 운용배수는 6.1배로 나타나고 있고, AI 첨단산업 우대보증을 공급할 계획인 일반보증 계정의 2025년 8월말 기준 운용배수는 8.3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신용보증기금」제2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운용배수인 20배[19]와 정부출연금이 편성된 기준인 운용배수 12.5배보다 낮은 수준임.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배수와 비교해보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

18) 신용보증기금은 AI 첨단산업 우대보증에 보증료율 차감(0.5%p, AI는 최대 0.7%p 차감), 보증비율 상향(95%), 보증심사 완화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19)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계정의 2025년 8월말 기준 운용배수는 9.8배로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6년 계획안 상 운용배수 역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계정은 11.1배,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계정은 9.8배로 나타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및 보증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충분한 것으로 보임.

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망)
					8월	(전망)	
총보증	보증잔액(A)	833,689	816,227	794,711	787,564	780,536	770,854
	보증공급	646,493	669,483	678,702	490,702	680,647	640,582
	보증부실	15,588	27,302	29,340	18,513	32,890	33,867
	- 부실률	1.9	3.3	3.7	3.5	4.2	4.4
	대위변제	10,790	20,227	26,745	17,402	29,283	30,651
	- 대위변제율	1.3	2.5	3.4	3.3	3.8	4.0
	순자산(B)	105,482	117,227	121,795	129,651	117,982	108,711
	- 정부출연금	9,600	837	800	1,000	1,000	800
	운용배수(A/B)	7.9	7.0	6.5	6.1	6.6	7.1
일반 보증	보증잔액(A)	613,961	618,214	624,973	630,183	613,000	608,000
	보증공급	592,107	611,030	628,495	454,028	602,293	594,672
	보증부실	12,556	20,468	22,750	15,708	26,753	27,175
	- 부실률	2.0	3.3	3.6	3.7	4.2	4.5
	대위변제	8,812	14,912	19,837	14,238	23,495	24,275
	- 대위변제율	1.4	2.4	3.2	3.4	3.8	4.0
	순자산(B)	71,351	75,533	75,451	76,049	69,963	61,918
	- 정부출연금	2,800	37	-	-	-	800
	운용배수(A/B)	8.6	8.2	8.3	8.3	8.8	9.8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가 이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 부실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의 2023년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예상 부실률은 각각 3.9%였으나, 결산 결과는 각각 3.3%와 3.6%로 나타났고, 2025년 계획안 편성시 부실률은 4.2%로 예상하였으나 8월말 기준 부실률은 3.7%로 나타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계정 부실률 현황

(단위: %)

구 분	계획상 부실률(A)	실제 부실률(B)	(B-A)
2022	4.0	2.0	△2.0
2023	3.9	3.3	△0.6
2024	3.9	3.6	△0.3
2025.8.	4.2	3.7	△0.5

주: 계획상 부실률은 본예산 편성 당시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반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계정의 부실률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 2025년 8월말 현재까지 계획상 부실률보다 실제 부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계정 부실률 현황

(단위: %)

구 분	계획상 부실률(A)	실제 부실률(B)	(B-A)
2022	4.8	2.7	△2.1%p
2023	4.0	4.2	0.2%p
2024	4.6	4.7	0.1%p
2025.8.	4.9	5.5	0.6%p

주: 계획상 부실률은 본예산 편성 당시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부실률이 계획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이 계획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만큼 기금 순자산이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보증잔액/순자산으로 나타나는 운용배수가 감소하게 됨.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계정의 순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말 기준 7조 1,351억원에서 2025년 8월말 기준 7조 6,049억원까지 약 4,700억원(6.6%) 가량 증가하였으나, 보증잔액은 61조 3,961억원에서 63조 183억원으로 1조 6,222억원(2.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운용배수가 8.6배에서 8.3배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20]

이에 반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계정의 순자산은 2022년말 3조 3,670억원에서 2025년 8월말 기준 2조 9,942억원으로 약 3,700억원(11.1%) 감소한 반면, 보증잔액은 오히려 26조 5,029억원에서 29조 4,763억원으로 3조원(11.2%) 가량 증가함에 따라 운용배수가 7.9배에서 9.8배로 상승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일반보증 잔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조원을 유동성 위기기업에 공급함에 따라 부실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정부출연금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AI 첨단산업 우대보증 2조원 공급과 우대혜택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설명하고

20) 또한, 신용보증기금 전체 총보증의 운용배수는 2022년말 7.9배에서 2025년 8월말 기준 6.1배로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있음.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최근 3년간 보증공급 증가율이 순자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AI 첨단산업 우대보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

□ 예산안 현황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015~, 출연 및 보조)은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DX(디지털 전환)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15년 4월 산업통상부에서 80억원 규모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사업의 중복 지적을 해소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일원화하며, 민간·지역 중심의 보급체계 마련 등 조기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4억 8,000만원(84.9%) 증액한 4,365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ICT융합 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9,054	236,076	286,923	436,556	200,480	84.9
제조혁신구축지원	205,651	221,166	270,141	317,290	96,124	43.5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11,910	11,910	13,782	12,126	216	1.8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1,493	3,000	3,000	8,140	5,140	171.3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	-	99,000	99,000	순증

□ 검토의견

(1) 기초단계 스마트공장에 대한 구축지원 검토 필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자동화 구축을 지원하는 제조혁신 구축지원사업, ②공급기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한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사업, ③공정 및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표준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조데이터생태계 구축사업, ④AI응용제품의 신속 상용화를 통해 제조AI 공급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제조혁신 구축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자동화 구축지원(317,290백만원)

- 정부일반형: 535개×400백만원×50%=107,000백만원
- 자율형공장: (AI+DT) 50개×600백만원×50%=15,000백만원
  (AI트랙) 400개×400백만원×50%=80,000백만원
- 대중소상생형: (고도화) 250개×400백만원×30%=30,000백만원
  (AI트랙) 20개×1,000백만원×50%=10,000백만원
- 디지털협업공장: 6컨소시엄×5개사×400백만원×50%=6,000백만원
- R&D성과확산: 20개×1,000백만원×50%=10,000백만원
- 제조로봇: 180개×500백만×50%=45,000백만원
- 제조기반기업: (전문기업 지정) 500개×0.58백만원=290백만원
  (자동화 지원) 127개×190백만원×50%=12,000백만원
- 수준확인: 2,000개×1백만원=2,000백만원

○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공급기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충사항 해결(12,126백만원)

-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단독형 클라우드화) 7개 컨소시엄×536백만원×50%=1,876백만원

(통합형 클라우드화) 1개 컨소시엄×1,660백만원×50%=830백만원

- 공급기업 역량진단: 775개×1.29백만원×80%=800백만원
- 제조DX멘토단: (사전기획지원) (DX900개×4백만원+AX200개×8백만원)×85%=4,420백만원
  (사후관리) 210개×40백만원×50%=4,200백만원

○ 제조데이터생태계 구축: 공정 및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표준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8,140백만원)

- 국가표준정책연구: 표준개발, 참조모델개발, 교육과정운영 등 880백만원
- 제조데이터표준화: 장비 335개×21.7백만원=7,260백만원

○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를 통한 제조AI 공급 기술 향상(99,000백만원)

- 타입1(1년내 개발): 21개×3,750백만원×80%=63,000백만원
- 타입2(2년내 개발): 24개×3,750백만원×1/2년×80%=36,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은 2014년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민간차원의 스마트공장 보급이 시작되어 2024년까지 기초 25,466개, 고도화 9,183개 등[21] 총 35,000여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됨.

21) 스마트공장 구축수준별 단계

구분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고도	IoT/IoS 기반의 CPS화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IoT/IoS화	IoT/IoS(모듈)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중간2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공장운영 통합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다품종 개발 협업
중간1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능 간 통합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다품종 생산 협업
기초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관리 기능 중심 기능 개별 운용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단일 모기업 의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축현황

(단위: 개사,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구축수(A)		277	963	1,560	2,203	2,900	4,757	7,139	5,240	5,105	2518	2,620	35,282
기초		226	791	1,122	1,844	2,385	3,546	5,600	3,693	3,613	1,565	1,079	25,466
고도화	중간1(B)	44	141	416	354	474	1,124	1,466	1,462	1,426	891	1,387	9,183
	중간2(C)	7	31	22	5	41	87	73	85	66	62	154	633
고도화비율 ((B+C)/A)		18.4	17.9	28.1	16.3	17.8	25.5	21.6	29.5	29.2	37.8	58.8	27.8

주: (고도화)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분석 또는 제어 /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기존의 기초단계 양적확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DX 역량에 기반한 유형별 고도화 촉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동 사업을 개편하였음.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역량 ①우수기업, ②보통기업, ③취약기업으로 분류하여 역량 우수기업은 AI·디지털트윈 기반의 자율형공장 등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역량 보통기업은 데이터 실시간 분석·제어가 가능한 공장으로 고도화하며, 역량 취약기업은 로봇·자동화장비 및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공장을 지원하되, 역량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 등과 연계한 민간 자율 구축을 유도하기로 하였음.

기업의 DX 역량별 지원방향(2023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대상	① DX 역량 우수기업	② DX 역량 보통기업	③ DX 역량 취약기업
목표	선도모델 육성	고도화 기업	기초 단계 기업
지원 사업	• 자율형공장 • 디지털협업공장 • 가상제조기술개발 등	• 지능형공장 (고도화) • 대·중소상생형 공장 • 기업성장 패키지 등	• 로봇·자동화 • 지능형공장 (기초, 지자체) • 민간 수준확인 및 컨설팅

자료: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2023.9.18.) 중 발췌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기초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지 않고, 중간1·중간2 등 고도화 단계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수준·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추경		2026년(안)		증감내역 (2025 추경→2026)		
		과제수			결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증감률
		중간1	중간2	계								
정부일반형		569	66	635	120,000	685	137,000	535	107,000	△150	△30,000	△21.9
자율형공장		-	20	20	6,000	140	32,000	450	95,000	310	63,000	196.9
상생형		355	44	399	24,000	258	34,000	270	40,000	12	6,000	17.6
디지털 협업공장	계속	1	-	1	10,111	1	1,541	-	-	0	△1,541	△100.0
	신규	31	1	32	6,000	30	6,000	30	6,000	0	0	0.0
K-등대공장		-	15	15	6,000	-	-	-	-	-	-	-
R&D성과확산		-	-	-	-	-	-	20	10,000	20	10,000	100
합계		956	146	1,102	172,111	1,113	210,541	1,285	248,000	172	37,459	17.8

주: 2025년 추경사업은 현재 선정중으로 수준별 구분 불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정된 자원을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분야별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디지털 제조기업 고도화를 통해 제조혁신 성과를 매출 증가 등 경영 성과로 연계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비중이 14.6%로 높지 않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도 적지 않으며, 기초단계 구축지원이 감소한 2023년부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2],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 예산의 확대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별 공장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공장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전체 (A)	중견	중기업	소기업	소공인	전체 (B)	중견	중기업	소기업	소공인	비율 (B/A)
서울특별시	8,952	25	578	2,031	6,319	770	9	137	324	300	8.6
부산광역시	11,304	118	798	2,822	7,566	1,384	24	300	608	452	12.2
대구광역시	8,913	112	797	2,701	5,303	1,583	45	271	740	527	17.8
인천광역시	10,141	83	834	2,969	6,255	1,519	40	327	719	433	15.0
광주광역시	5,865	68	432	1,498	3,866	670	19	153	293	205	11.4
대전광역시	3,334	12	258	705	2,358	388	12	66	175	135	11.6
울산광역시	2,248	124	402	831	891	496	33	146	202	115	22.1
세종특별자치시	1,251	44	86	219	902	110	10	30	44	26	8.8
경기도	48,935	457	4,603	13,956	29,919	6,857	187	1,719	2,864	2,087	14.0
강원특별자치도	4,228	30	300	916	2,982	424	15	81	166	162	10.0
충청북도	7,863	237	1,151	1,959	4,516	1,127	89	352	405	281	14.3
충청남도	7,206	233	965	2,345	3,663	1,480	95	461	536	388	20.5
전북특별자치도	8,135	117	787	1,417	5,813	748	33	166	270	279	9.2
전라남도	7,393	123	689	2,156	4,425	901	26	130	359	386	12.2
경상북도	11,314	160	1,386	3,633	6,135	2,173	106	478	937	652	19.2
경상남도	15,295	179	1,674	3,988	9,453	3,055	94	692	1,292	977	20.0
제주특별자치도	895	0	35	256	604	99	0	13	44	42	11.1
합계	163,273	2,122	15,776	44,403	100,972	23,784	837	5,522	9,978	7,447	**14.6**

주: '24년도 실태조사 기준자료(법인 기준의 지원 기업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2)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건수: 3,693건('21), 3,613건('22), 1,565건('23), 1,079건('24)

(2) 부정행위 방지 및 환수금 징수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동 사업은 수요기업이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된 공급기업[23]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대상으로 신청하고, 국가 및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용역제공 대가를 50%씩 부담하는 구조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동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은 1,272개로, 스마트제조산업 분야를 기준으로는 정보화 솔루션 공급기업이 974개로 가장 많고, 기업규모를 기준으로는 50인 미만 기업이 970개이며, 공급기업 업력별로는 업력 4~7년, 8~12년, 13~20년, 21년 이상 기업이 각각 303개, 296개 305개, 264개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동 기간 중 스마트공장 구축을 50건 이상 중복 수행한 공급기업은 20개, 20~49건 수행한 기업은 102개임.

최근 4년(2021~2024)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현황

(단위: 개소)

분야별		규모별		업력별		구축실적별	
스마트제조	기업 수	구분(종사자수)	기업 수	업력별	기업 수	구축건수	기업 수
자동화 기기	123	~9인	540	0~3년	68	1~4건	789
연결화 기기	89	10~49인	430	4~7년	303	5~9건	195
정보화 솔루션	974	50~99인	55	8~12년	296	10~19건	166
지능화 솔루션	86	100~199인	29	13~20년	305	20~49건	102
-	-	200명~	33	21년 이상	264	50건 이상	20
-	-	기타(미기재)	185	기타(미기재)	36	-	-
합계	1,272	합계	1,272	합계	1,272	합계	1,27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3) 2025년 현재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등록된 공급기업 1,774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발된 부정행위가 220건이 있었는데, 그중 부정수급, 부실구축, 허위서류 제출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담합에 의한 부정행위가 164건이었음. 구체적인 담합유형은 세금계산서 취소 및 역발행, 기업부담금 페이백, 불법하도급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3년(2023～2025.8.) 부정행위 현황

(단위: 기업수(개))

구 분	제재 대상			
	수요기업 단독	공급기업 단독	수요·공급기업 동시	합계
부정수급	1	6	128	135
부실구축	4	0	9	13
부적정 인력 참여	0	0	0	0
유지의무위반	39	0	1	40
기타(허위서류 제출 등)	5	1	26	32
합계	49	7	164	2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시스템 내 수행과제 중 부정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능개발을 2025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고, 문제 과제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사업참여제한, 지원금액 환수 등 제재처분을 시행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은 부정행위 유형별로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해 일정 기간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도 제한 기

간이 지나면 사업 재참여가 허용되고 있고, 실제로 수요기업 2개사와 공급기업 3개사가 재참여한 사례가 있음.

본 사업은 수요기업이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된 공급기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대상으로 신청하는 구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부정행위 중 고의의 정도가 심한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참여 금지 등 보다 강한 제재조치의 부과를 통해 부정행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24)]

또한, 위의 최근 3년간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결정액 141억 7,700만원 중 2025년 8월 기준으로 70억 7,200만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데, 미징수 금액에는 소송 및 채권추심이 진행 중인 60억 5,600만원과 대상기업이 파산한 8억 3,4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 현재 관련규정은 환수금 미납부 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재참여 조건에 환수금 완납조건을 추가하는 등 부정행위 환수금 징수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중소벤처기업부는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2023.5.)」에서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발기업은 참여기회를 영구 박탈하는 “Two Strike Out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음.

최근 3년(2023～2025.8.) 부정행위 환수금 징수 현황

(2025.8월 말 기준)

구분	환수완료	분할납부	환수절차 진행중	소송 진행 (지급명령 포함)	채권추심 진행중	파산	계
건수 (과제기준)	61	27	5	58	18	13	182
금액 (백만원)	5,082	2,023	181	4,474	1,582	834	14,1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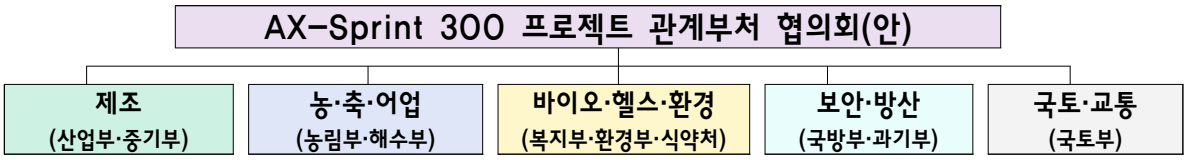
(3)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불이행

신규 내역사업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는 중소제조현장의 신속한 AI전환 촉진을 위해 1～2년 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스마트제조 분야 AI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990억원이 반영되었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소위 「AX-Sprint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에는 총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지원분야는 제조, 농·축·어업, 문화·컨텐츠·스포츠, 바이오·헬스·환경, 보안·방산·안전, 주택·교통·물류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제조 분야를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구조임.

AX-Sprint 300 프로젝트 개요

○ (사업기간/성격) '26년~'27년 / 출연 또는 보조(민간 매칭 10~20%)
○ (사업 참여부처) 산업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국방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
○ (총사업비) 1조 1,570.83억원, 국비 9,340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억원)	국비(억원)
산업부	65개	2,625	2,100	해수부	25개	937.5	750
복지부	31개	975	780	환경부	15개	750	600
농림부	30개	1,125	900	국토부	29개	1,450	1,160
중기부	45개	1,687.5	1,350	과기부	20개	1,000	800
국방부	30개	833.33	750	식약처	10개	187.5	1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은 총사업기간 2년('26.2월~'28.2월), 총사업비 1,687억 5,000만원 중 국고지원 1,350억원, 민자 337억 5,000만원으로 신규 계획된 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음.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5].

2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현장의 신속한 AI전환 촉진을 위해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스마트제조 분야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지원 필요에 따라,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DX 맞춤지원을 위한 기존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함.

「AX-Sprint 300 프로젝트」 관련 10개 부처 중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소관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26]에 따라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으나,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나머지 6개 부처는 소관사업을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임.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27], 소관부처 예산안에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형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여부를 해석한 것임.

「AX-Sprint 300 프로젝트」와 같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총사업비의 적정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세부사업은 2015년 산업통상부에서 8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되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이래 사업이 줄곧 확장되어 왔으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시행된 바가 없음. 대규모 신규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는지 내역사업으로 편성이 되는지 그 형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면, 신규사업을 최초에 소규모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이후 내역사업 편성을 통한 대규모 사업 신설 등의 방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우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형식보다는 실체적인 사업

2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789호)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내용과 규모에 기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기획 및 유관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방지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비R&D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이 새로운 AI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함.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9월 AI응용테마 발굴·기획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제조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 수요를 중심으로 793건을 발굴하였고, 향후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공급기업과의 매칭을 전제로 사업을 기획중임. 이를 통해 이미 일정 수준의 AI기술이 확보된 공급기업·연구기관의 기술을 제조중소기업의 실제 생산공정 문제에 맞게 현장검증(PoC)하여 상용화 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기획중에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 후보과제 예시

(타입1) 1년 즉시 성과형 후보과제 예시	(타입2) 2년 파급형 후보과제 예시
Vision AI 기반 도금 자동 랙로봇	고압주조 공정용 디지털트윈·AI 최적화 플랫폼
엘리베이터 안전 인증 자동검증 시스템	적층제조 기반 다품종 대량생산 자동화 라인
레미콘 품질개선 슬럼프 AI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자율이송·생산운영 AI 최적화
차체 부품 자동 전수검사(AI+로봇)	자동차부품 무인 자율공장(Lights Out Factory)
AI기반 대용량 페인트 자동포장기	기계제조업 AMR·자재관리 통합운영 플랫폼
프리미엄 원단 맞춤형 소재추천 AI 시스템	화학공정 AI 안전예측 및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제지산업재해 예방 디지털트윈 플랫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AI 기술 수준은 일부 핵심 분야(비전검사[28], 예지보전[29], 공정최적화 등)에서 글로벌 최고수준의 80~90% 수준으로 평가되고[30], 특히 제조분야 적용성과에서는 데이터 접근성과 현장 적응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현재 중소기업의 AI 도입이 저조한 이유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AI 기술 및 솔루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참고하여[31], 현재 보유한 AI 기술을 활용한 상용제품 개발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기획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8)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검사하는 기술
29) 설비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시점에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기술
30)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등 참고
31) AI에 대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KDI, 2021.1.15. 7p

기업체들은 AI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기업 수요에 맞는 AI 기술 및 솔루션 부족'(35.8%)을 꼽았고, AI 도입 시 'AI 시스템이 만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법적 책임'(23.1%)과 'AI의 잘못된 의사결정'(21.6%)에 대해 우려

또한, 「AX-Sprint 300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조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에 AI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제품 생산 등 유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양 부처 간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원대상과 범위를 검토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X-Sprint 300 프로젝트 관련 사업(안) 비교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지원분야	산업재해 근절, 인력난·열악환경 해소, 수출 경쟁력 확보(원가절감, 글로벌 시장 대응) 등을 위한 중소제조 공정혁신 관련 분야 중심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에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융합하여, 차별화된 신제품과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심, 특히 스마트공장 도입·확산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방법	정부지원금 80%, 민간 자부담 20%	정부지원금 80%, 민간 자부담 20%
예산(안)	1,350억원('26 990억원, '27년 360억원)	2,100억원('26~'27)
과제 수	45개	65개
지원단가	30억원	32.3억원
수행주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사후관리(AS) 자부담 비율 검토 필요

동 사업 중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고충사항 해결을 위한 제조혁신 전문가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중 사후관리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이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210개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AS)를 제공하기 위해 42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지원대상 품목은 스마트공장 HW 부속·부품, SW·솔루션(MES, ERP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센서 및 데이터전송 장치, SW오류 수정 등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50%를 부담하고 정부가 50%를 지원(1,900만원 한도)함.

사후관리 지원조건

예산명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50%)	민간부담(50%)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총 사업비의 50%	4개월	최대 19백만원	최대 19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약 350개 기업에 대해 AS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 사후관리 지원건수 현황

(단위: 개)

연도	2023	2024	2025(지원중)	합계
지원수	380	364	255	99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이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50%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지원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업성과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AS)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에 대해 “효과성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률을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제언한 바 있음.

3. R&D사업화 계정 출연(2131-306)

□ 예산안 현황

‘R&D사업화 계정 출연’(2026~, 출연)은 기술보증기금의 R&D사업화 계정[32]에 대한 출연을 통해 프로젝트 방식 R&D 보증, IP·R&D 유동화 보증 등 직·간접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R&D사업화 계정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R&D사업화 계정 출연	-	-	-	50,000	50,000	순증
IP·R&D 유동화 보증	-	-	-	17,800	17,800	순증
프로젝트 방식 R&D 보증	-	-	-	30,610	30,610	순증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	-	-	1,590	1,590	순증

32) 현행법상 계정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1)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지양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①로열티 수입이 확인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IP가 창출하는 기대 로열티를 기반으로 자산을 유동화하는 IP유동화 사업, ②R&D성과에 따른 매출시현이 예상되는 기업의 회사채를 기반으로 자산을 유동화하는 R&D기술 유동화 사업, ③기존의 기업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방식 R&D 사업화보증, ④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IP유동화
- 대손충당금 35.2억원 + 기본재산 30억원 + 운영시스템 구축 4억원
※ 대손충당금: 보증공급 300억원 × 대손충당률 11.6%(기보의 유사 보증 사고율 감안)
※ 기본재산: 손실 지급을 위한 기본재산. 보증공급 300억원 ÷ 운용배수 10배수
○R&D기술 유동화
- 대손충당금 58.8억원 + 기본재산 50억원
※ 대손충당금: 보증공급 500억원 × 대손충당률 11.6%
※ 기본재산: 보증공급 500억원 ÷ 운용배수 10배수
○프로젝트 방식 R&D 사업화보증
- 보증공급 2,600억원 ÷ 운용배수 8.5배수
※ 운용배수는 자금산정방식이 유사한 R&D 개발보증의 부실률과 민간은행 출연금 유치 가능성 등 감안하여 산출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운영 925백만원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515백만원
- 기술중개 지원 15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재정리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보증기금에 설치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3]

3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다만, 현행법 및 현행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34]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운용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 기술개발 후속 사업화 지원을 위한 보증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위임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서도 사업운영은 가능하나 민간 금융기관과 연계되는 보증사업의 특성상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35],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기술혁신사업화 계정”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정부 R&D 성과물의 후속 사업화 지원을 위한 보증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의결되더라도 향후 관련 개정법률안의 심사상황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거나 관련 개정법률안이 예산안 의결 당시의 사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심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지출 및 운용과 회계·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73호

35) 보증사업의 추가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과는 다른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의 개정만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사업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고시개정에 의한 사업추진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논하지 않기로 함

4.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2134-474)

□ 예산안 현황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신규, 출연)은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이 탄소 규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탄소 감축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36]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임.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	-	-	5,000	5,000	순증

36)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합섬원료,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재, 알루미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원동기 및 펌프

□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사전준비 절차 미비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R&D 지원사업이 대기업 중심 업종[37]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추진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38] 등 글로벌 탄소 규제[39]와 대·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감축 압박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감축 R&D를 지원하는 동 사업을 편성함.

이를 통하여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10대 핵심품목을 선정하여 3대 중점분야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적용 시 공정조건과 생산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이를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을 측정하는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및 3대 분야

10대 핵심품목	
❶ 정밀화학원료	❷ 석유화학합섬원료
❸ 합성수지	❹ 플라스틱 제품
❺ 자동차 부품	❻ 철강재
❼ 알루미늄	❽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❾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❿ 원동기 및 펌프

3대 중점분야
1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2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 저감
3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37)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다배출 업종

38)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EU 회원국 기업들의 경쟁력 보호와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들을 상대로 재화 등을 수출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출과정상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39)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2026년 52억원에서 2030년 7,042억원, 2034년 1조 8,858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실제 사업은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효과 전문 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2034년 기준 예상 연간 탄소 감축량은 306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음.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 기대효과

구분	'31년	'32년	'33년	'34년
연간 감축량(만톤CO2)	125	185	246	306
감축 기술 활용·확산(개사)	441	654	867	1,080
인증서 구매 저감 효과(억원)	2,004	3,809	6,283	9,591

주: 탄소 감축(배출)량을 효과(비용)로 환산하기 위해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산식 활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6년 예산안에는 71개 과제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7,050만원(1억 4,100만원 × 6/12개월)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경우 2025년 9월말 기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2026년~2030년, 4,168억원[40])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204억원으로 예산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차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40) 국비 3,058억원, 민간 1,110억원으로, 총 71개 과제에 약 5년간 평균 58억원(국비기준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025년 3월에야 신청했다는 점에서 사업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예상 일정

○ 예비타당성조사 요청시기 - '25-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신청('25. 3. 4.) ○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경과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5. 5. 13.) - 1차 자문회의 및 주관부처 사업설명회('25. 6. 30.) - 2차 자문회의 및 쟁점토론회('25. 8. 6.) - 과기혁신본부 중간 점검회의 : '25. 9. 23(화) ○ 향후 예상 일정 - 조사 완료 시기 : '25. 11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감축 R&D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동 사업의 시행이 시급[41]하였고, 동 사업은 2024년 초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이상 충실히 기획된 사업으로 사업 준비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지 않고 2026년 예산안에 사업비의 일부(50억원)만을 편성한 것은 다음과

41) 사업 추진 일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과'로 결정되었을 때 202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 예산안에 일부를 반영요구 하였다고 설명함.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첫째, 2022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이 이미 의결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응방안 마련에 주관부처로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간 CBAM 입법(안)이 합의된 것은 2021년 12월 18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정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대책을 발표하면서 '탄소 多배출 업종의 탈탄소화 기술개발 지원' 등 추진 과제를 2022년 말 이미 정리한 바 있음.

따라서 글로벌 탄소규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였다면 위 대책에 동 사업을 포함하여 2022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42]으로 보이고, 위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43]

---

42)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대책 내 '탄소 多배출 업종의 탈탄소화 기술개발 지원' 과제의 주관 부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 사업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진과제는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설명회, 가이드북 제작 등)', '배출량 측정 검인증 비용 지원, 간이 MRV 시스템 개발' 등임.

43)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의결 직후부터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기획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제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2025년 3월에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둘째,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44]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적정 투자시기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정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45]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R&D 사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의 경우, 각각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산안에 편성되었음. 특히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2020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차년도(2021년도) 예산안이 아닌 차차년도(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5)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2025, p.147.

최근 5년간(2020～2024)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R&D 편성 내역

(단위: 억원)

최초 편성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첫해 예산액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예타완료시기)
2022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	2022～2026	4,341 (3,288)	331	실시 (2020.11)
2023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2023～2031	5,400 (3,053)	15	실시 (2022.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산 편성절차를 살펴보면, 동 사업과 같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4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46)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자료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주요 R&D 예산의 배분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함.[47]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50억원에 대해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 주요 R&D 예산의 배분방향과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47)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2025, p.159.

5.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2134-487)

□ 예산안 현황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2026~2030, 출연)은 중소제조기업의 공정기술 고충해결을 위해 대표공정도를 기반으로 공정최적화 R&D를 지원하여 혁신적인 KPI[48] 제고를 도모하고 AX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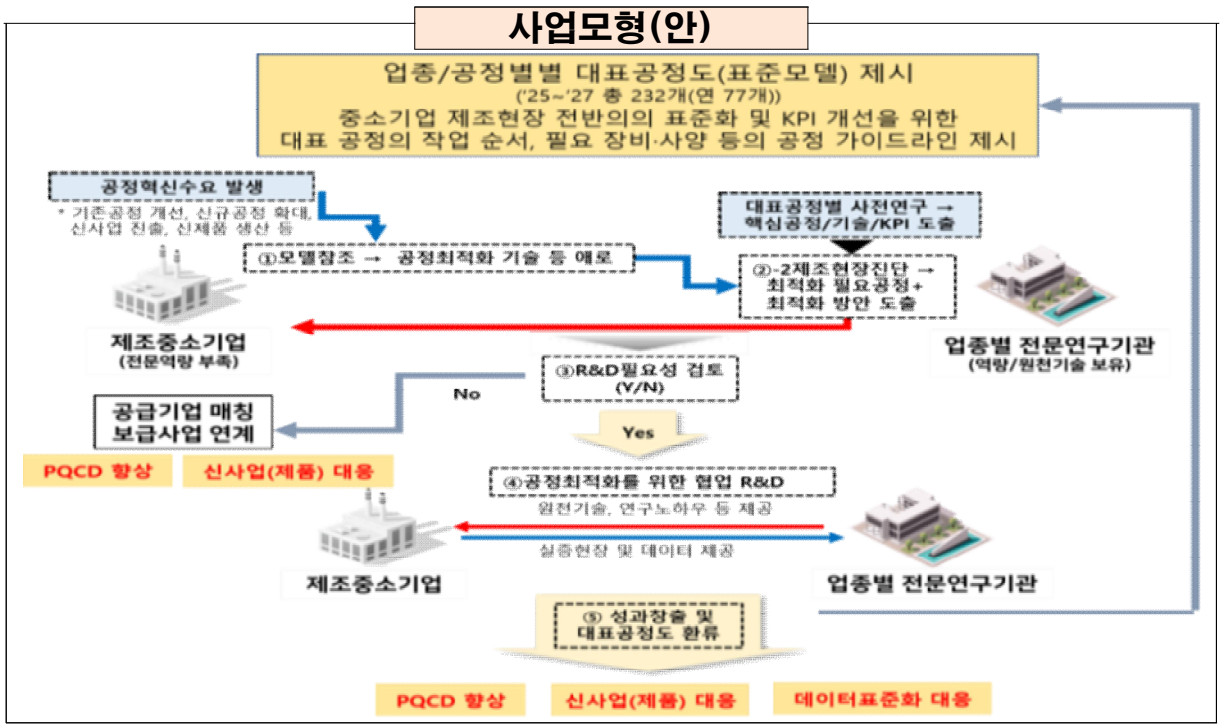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	-	-	3,000	3,000	순증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	-	1,750	1,750	순증
공정최적화 R&D	-	-	-	1,250	1,250	순증

48)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

□ 검토의견

(1) 진행중인 타사업의 결과물을 전제로 한 사업기획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동 사업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가표준정책연구 사업(2025~)을 통해 개발 예정인 240개 표준공정도를 활용하여 전문연구기관이 공정 분석, 핵심공정기술 발굴, 제조현장 진단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진단 기업 중 공정 KPI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여 AX·DX 기술을 활용한 공정최적화 및 고도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고, 총사업비는 452.5억원(국비 352.5억원, 민간 100억원)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 기획보고서」(2025.7.) 중 발췌

2026년도 예산안에는 표준공정도를 바탕으로 전문연구기관이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현장진단 기업 중 KPI 개선효과가 큰 기업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R&D 비용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전문연구기관 4개 × 437백만원 × 6/6개월 = 1,750백만원
※ 437백만원: 대표공정·데이터분석(20개x10백만원) + 현장진단(15개사x7.92백만원) + 공정최적화 방안 및 핵심기술 도출(15개사x7.92백만원)
○공정최적화R&D
- 10개 중소기업 × 500백만원 × 3/12개월 = 1,250백만원
※ 현장진단 기업 중 KPI 개선효과가 큰 기업의 과제를 선정하여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고도화R&D 수준까지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재정리

동 사업은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R&D)이 2025년 종료된 이후 제조현장 최적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기획되었는데, 기존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R&D)이 단기 소액과제 위주의 개별기업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 데 비해, 신규사업인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은 대표공정도 기반 핵심공정 중심 지원을 통해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정을 적용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음.

신규사업 신설 배경 및 주요내용

주요 이슈

정책배경

<스마트제조혁신생태계고도화방안(24.10.)>
- 핵심업종 핵심장비 제조데이터를 표준화
- 핵심업종 대표공정도 개발·보급 (매년 80개, 총 240개)

기존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종료('25)

그간성과
- 공정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고 원가절감, 매출 발생 등 경제적 성과 우수

한계점
- 바텀업 중심 저변확대로 인한 나눠주기식 보조금 사업이라는 인식과 단기소액 지원중심 ⇒ 지원규모와 기간확대 필요
- 중소제조기업 자체기술개발 역량 미흡

외부 지적사항
- 투자전략성을 확보한 후속사업 연계 필요

전략적 추진방향

1
R&D 지원공정 타겟팅
- 업종별 대표공정도(240개) 공정 중 파급력이 큰 연속공정
- 공정별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표준 등 참조모델 제시

2
R&D 지원기업 타게팅
- 업종별 전문기관의 현장진단을 통해 R&D필요성 검토 및 지원대상 선별
- 검증된 원천기술의 활용 또는 신규기술의 공동개발

3
선도모델 육성 및 환류
- 대표공정도 도입 선도모델 홍보
- KPI 등 대표공정도 반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 기획보고서」(2025.7.) 중 발췌

앞서 언급했듯이 동 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중인 국가표준정책연구 사업[49]의 결과물(240개 표준공정도)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바탕이 되는 대표공정도의 원활한 확보가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49)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일반회계, 2111-303) 사업의 내내역사업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R&D 프로세스

① 대표공정도 개발	② 사전연구 및 현장진단	③ R&D 지원
▪ 240개 표준공정도 개발 ▪ 공정 KPI·자동화율 도출 ▪ 공정별 장비 등 정보 수집	▪ 대표공정별 전문연 선정 ▪ 공정분석 등 사전연구 ▪ 취약공정 도출 등 현장진단	▪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 장비·시스템 고도화
별도 사업 추진 中('25~)	R&D 사업범위('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전제가 되는 국가표준정책연구 사업의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 사업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 순서에 따라 핵심장비, 데이터, 관리 요소 등 표준화된 공정정보를 도식화한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민간기업, 비영리기관(협·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제조데이터 표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80개씩 참조모델을 개발할 예정임.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념도

주조공정 참조모델 예시

	① 원재료 입고	② 주형 제작	③ 장입	④ 용해·용탕분석
				
주요장비	이송장지, 차량, 크레인 등	금형 가공기, 3D프린터 등	장입기, 컨베이어 등	아크로, 큐폴라 등
주요 데이터	입고량, 속도 등	온도, 습도, 수분 등	장입속도, 재료크기 등	용해온도, 속도 등
(주요 KPI) 부가가치 생산성, 설비종합효율, 에너지 생산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2025년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5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한 상태로, 목표 80개 참조모델 중 57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5년말까지 80개의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계획임.

국가표준정책연구사업 집행현황

사업명	집행실적(9월 말)			개발현황(9월 말)		
	본예산 (백만원)	실집행액 (백만원)	집행율	목표(개)	실적(개)	달성율
2025년 국가표준정책연구	510	510	100%	80	57	71%

주: '25년은 참조모델(표준공정도) 총 80개 개발 예정이며, '25.12월까지 개발/검증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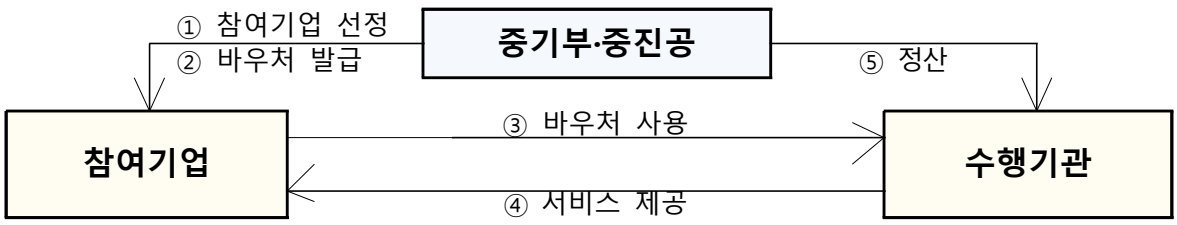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에 두 사업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표준공정도(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두 사업 예산의 2026년 집행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 예산안 현황

‘수출지원기반활용’(1999~, 보조)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4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지원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제공된 메뉴판의 서비스 기업에게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됨.

< 수출바우처 지원체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26억 4,300만원(17.8%) 증액된 1,502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수출지원기반활용	111,838	127,560	217,360	150,203	22,643	17.8

□ 검토의견

(1) 수출강소 트랙 지원기업의 수출실적 저조 문제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규모별·역량별로 지원 대상기업을 구분하고, 선정기업의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지원트랙에 따른 지원기업 요건과 지원한도, 국고보조율은 다음과 같음.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트랙별 지원한도

(단위: 백만원)

지원트랙	지원대상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내수기업	수출액 1,000불 미만	30	(매출액 기준) ■ ~100억원 : 70% ■ 100~300억원 : 60% ■ 300억원~ : 50%
수출초보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	
수출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수출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수출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테크서비스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기업	35	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 중에서 '수출강소' 기업은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수출 실적을 내고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의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강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 내 '수출강소' 트랙을 구분하여 별도 선발하며 다른 지원트랙에

비해 높은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트랙별 평균 수출증가액과 증가율을 살펴보면, 강소기업에 대한 평균 지원액이 '수출유망', '수출성장' 트랙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수출증가율 뿐만 아니라, 평균 수출증가액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50]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기업 트랙별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 천달러)

연도	지원트랙	평균지원액 (보조율)	평균수출액		증가율	증가액
			전년도	지원년도		
2022	유망	35.5(59.9)	388	530	36.8	142
	성장	47.1(53.9)	2,260	2,466	9.1	206
	강소	**51.8(50.3)**	**13,731**	**13,665**	**△0.6**	**△66**
2023	유망	33.2(68.0)	344	448	30.2	104
	성장	52.3(65.7)	2,143	2,267	5.8	124
	강소	**62.6(57.3)**	**14,604**	**14,652**	**0.3**	**48**
2024	유망	36.7(67.4)	352	548	55.7	196
	성장	53.9(64.4)	2,146	2,567	19.6	421
	강소	**58.7(55.8)**	**13,214**	**13,360**	**1.1**	**1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강소' 트랙의 기업들은 다른 트랙에 비해 평균수출액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으로, 높은 업력[51]과 주력 제품의 성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트랙에 비해 상대적으로

50) '수출유망' 트랙과 '수출성장' 트랙을 비교해보면, 수출실적이 높은 '수출성장' 기업의 수출증가율이 '수출유망' 기업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증가액의 절대규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51) 평균업력('25년 기준) : (내수) 9.3년, (초보) 10.4년, (유망) 14.7년, (성장) 18.5년, (강소) 22.2년

수출성장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처럼 ‘수출강소’ 기업들의 수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강소’ 기업들의 절대적인 수출증가액의 크기 역시 ‘수출유망’ 또는 ‘수출성장’ 기업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52)]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성과 개선을 위하여 ‘수출강소’ 지원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출강소’에 대한 지원비중을 축소하고 지원성과가 큰 ‘수출유망’, ‘수출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2)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지원트랙 중, 2022년 ‘수출강소’ 지원트랙만 유일하게 지원기업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홍보 강화 노력필요

수출바우처 사업 중 테크서비스[53]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제품 수출기업과는 다른 특성[54]을 가지고 있는 테크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특화 지원하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에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테크서비스 기업 400개에 대하여 5,000만원씩 수출바우처를 지원(보조율 70%)하기 위하여 140억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대비 100개가 늘어난 500개의 테크서비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5억원이 계상되었음.

동 사업은 2024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에 따라 2025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2.7%에 불과한 테크서비스 기업의 수출 지원 비중을 2027년 10%, 2030년 15%로 확대하여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힘.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은 일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

53) 테크서비스란 디지털·AI 기술 단독 또는 분야별 전문 지식과 융합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를 의미함.

<유형별 사례>

SW 분야	솔루션 분야	콘텐츠 분야	ICT 융합형 분야
빅데이터, AI, SaaS, 메타버스, 블록체인, 플랫폼 등	보안솔루션,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엔지니어링, 기업관리솔루션 등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영상, 캐릭터, 음악 등	에듀테크, 스마트헬스 케어, IoT제품, 핀테크 등

54) 일반 제조 수출기업과 달리 테크서비스 수출기업은 ①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AWS 등) 사용시 비용 부담, ② 빠른 서비스와 데이터 현지 보관을 위한 현지 데이터센터 비용 과다, ③ 언어, 문화, 사용 습관에 따라 UX/UI 개선 등 서비스 현지화 필요 등을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설명함.

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메뉴판(14개 분야 메뉴판)과 함께 테크서비스 참여기업 전용 메뉴판이 지원되며, 바우처 금액 내 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를 60% 이상 사용하여야 함. 테크서비스 특화 전용 메뉴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테크서비스 참여기업 전용 메뉴판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식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비용 (해외 트래픽 발생여부 必, 인건비 성격이 강한 MSP 구축·유지 등은 제외)	사후정산 ※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 검토를 거쳐 정산
데이터센터 활용	■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기료, 트래픽 비용 등 전산자원 활용 비용 (해외 현지소재의 데이터센터 이용에 한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및 모바일 지원	■ 국가별 문화, 환경, 언어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재구성, 해외향 모바일 앱 및 웹 개발 비용 등	
기타 서비스	■ 전문가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테크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임을 승인받은 항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2025년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기업 선정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1.44:1을 나타내고 있어 2025년 일반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쟁률(2.63:1) 대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사업 수요에 비해 사업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2025년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신청	선정	경쟁률
테크 1차	351	247	1.42 : 1
테크 2차	267	180	1.48 : 1
합 계	618	427	1.44 : 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에는 중소기업의 무역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수출바우처 등과 동 사업의 모집공고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 테크서비스 기업이 '일반 수출바우처 사업'에 지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 초기에 테크서비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했던 한계도 있어 2026년에는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55]을 밝히고 있음.

다만,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일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56]와 보조율 측면[57]에서 보다 유리했다는 점에서 수출바우처 사업 동시 공고로 인한 수요 분산의

55) 구체적으로, 테크서비스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겟 홍보, 홍보기사와 중진공SNS 등을 활용한 공개 홍보, 정책자금 이용기업 중 테크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2024년 2,000여개사, 2025년 1,300여개사)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사업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임.

56)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테크서비스 전용 메뉴판과 일반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물론, 바우처 금액 내 테크서비스 특화 서비스를 6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일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다면 이는 반대로 테크서비스 특화 수출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57) 기업 규모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 적용(최대 70%)되는 일반 수출바우처 사업과 달리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은 보조율이 70%로 고정되어 있음.

효과는 크지 않았을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에는 계획된 홍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쟁력있는 테크서비스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2025년 사업에 따른 테크서비스 기업의 수출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경쟁력을 갖춘 테크서비스 기업을 선별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추이 등을 고려한 물류바우처 지원 적정규모 검토 필요

수출바우처 사업 중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관세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105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9월 3일 발표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수출 중소기업 지원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수출물류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1,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1,500만원 한도(보조율 70%)로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임. 지원기업은 물류바우처를 활용하여 국제(샘플)운송료, 해외 내륙운송료 및 국제특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유상거래 샘플운송료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유상으로 운송되는 경우
해외 내륙 운송료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도착지에서 목적지로 이동
국제 특송	우체국 및 국제특송사(FEDEX, DHL, UPS 등) 이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현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거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편성 당시의 해상운임 지수와 현재의 해상운임 지수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물류바우처 방식으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긴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과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이후 해상 및 항공운임이 급등하고 선박부족 등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58]한 바 있음.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연도별(2021～2023) 운영현황

구분	2021	2022	2023
지원 내용	① 일반물류 ② 장기운송계약 지원	① 일반물류 ② 장기운송계약 지원	① 일반·온라인 ② 수출국 다변화
	· 해상 및 항공 국제운임 지원 ＊ 항공 해상운송료, 보험료 등 지원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 체결(회차별 전용선복 200TEU 제공)		· 해상 및 항공 국제운임 지원 ＊ 항공 해상운송료, 보험료 등
지원대상	○ 물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 시점에서도 수출 물류비가 수출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거 운영했던 물류 전용 수출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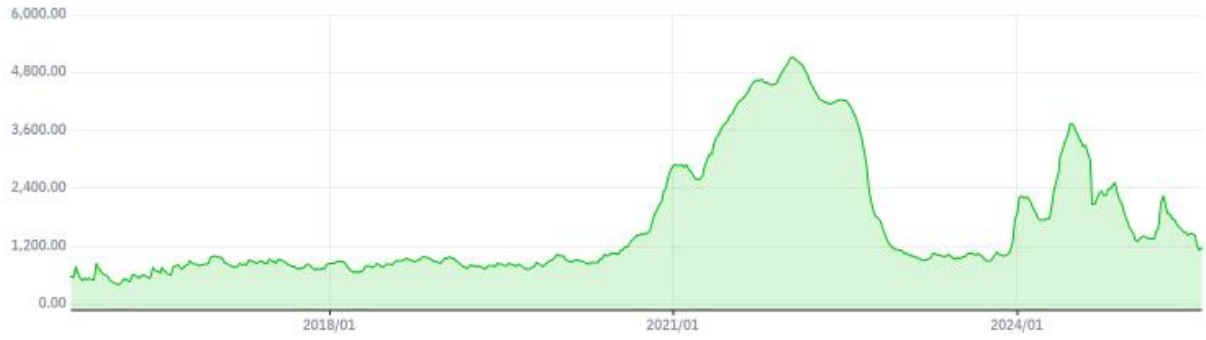
58) 2023년 사업 규모는 180억원임.

처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함.

그런데 현재 시점의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59]는 2025년 10월 17일 기준 1310.32 수준으로, 과거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이 편성될 당시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과거 2020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와 코로나19 격리·확진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항만 인력 감소, 컨테이너 처리 적체에 따른 컨테이너 부족 사태, 해운사들의 운항 증가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021년 중반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60]하였음.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변동 추이



자료: 네이버페이 증권 화면 캡쳐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적

59)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란 상하이 해운거래소(Shanghai Shipping Exchange:SSE)에서 집계하는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로, 글로벌 해운 및 무역 시장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60)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4배 이상 급등하였음.

으로 증가하였던 물동량이 해소되고 향후 미국·중국간 무역 갈등과 국가간 관세장벽으로 글로벌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류 비용을 여전히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저해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낮은 상황이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61]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될 위험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대미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2025.8월) 결과[62] 물류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함.

따라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해상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변동 추이와 미국과의 관세협상 경과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규모를 조정하거나 일반 수출바우처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

61) 예를 들어,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25.10.14)에 따라 미주 항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함.
62)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대미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25.8월) 결과, 정부지원 수요로 '물류지원(73.2%)', '정책자금(38.8%)', '정보제공 (23.5%)' 順 응답

7.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3133-301)

□ 예산안 현황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1998~, 직접, 보조 및 출연)은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하고 무역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억 1,400만원(5.5%) 증액된 865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466	82,058	92,058	86,572	4,514	5.5
수출컨소시엄	15,851	15,851	15,851	17,839	1,988	12.5
대·중소기업동반진출	16,851	16,851	16,851	16,851	-	-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	40,809	30,609	30,609	30,609	-	-
해외수출규제 대응지원	15,300	15,300	25,300	17,519	2,219	14.5
수출지원센터운영	2,658	3,447	3,447	3,754	307	8.9

□ 검토의견

(1) 수출컨소시엄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 중 '수출컨소시엄' 내역사업은 중소기업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63]하여 수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전시회·상담회 참가시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시장개척 활동 수행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9억 8,800만원(12.5%) 증액된 178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매년 70~80개 수준의 업종별 수출컨소시엄의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수출컨소시엄별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수출컨소시엄 중 12.1%에서 계약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시회·상담회 참여 이후 실제 제품 계약 및 납품까지 현지 기술검증, 인증취득 등으로 1년 내 성과가 바로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63) 관리기관에서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주관단체가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 모집공고·선정, 관리기관(중기중앙회) → 주관단체(업종별 협단체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최근 3년간 수출컨소시엄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달러)

구 분	2022	2023	2024	계
지원 수출컨소시엄 수	75	72	76	223
계약실적이 없는 수출컨소시엄 수	9(12.0%)	9(12.5%)	9(11.8%)	27(12.1%)
지원기업 수	1,204	1,268	1,335	3,807
계약액	367	742	492	533.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시회 연혁, 규모,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큰 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1회 선정시 3개년을 연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베트남 호치민 건축자재 전시회’ 수출컨소시엄은 2023년과 2024년 사업에서 수출계약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2025년에 또다시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출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성과 점검을 강화하여 유망전시회에 선정되더라도 성과가 미흡한 경우 차년도 지원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소비재 수출 성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동 사업 중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내역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주관기업이 보유한 현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역량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임. 주관기업[64]이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기업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제별 총 사업비의 60%(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를 지원함.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68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동 사업은 한류콘텐츠 등과 연계한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과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으로 구분됨.

그런데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재 부문 지원기업 수와 지원액이 산업재에 비해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수출성과는 산업재 부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64) 관리기관에서 주관기업을 공모·선정, 주관기업이 동반지출 참여 중소기업 공모·선정, 관리기관(대중소재단) → 주관기업(대기업 등) → 중소기업 (대중소 동반진출지원 사이트)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지원현황

(단위: 건, 개사, 백만원)

구분	지원과제		지원기업 수		지원액		수출성과	
	소비재	산업재	소비재	산업재	소비재	산업재	소비재	산업재
2021	26	50	952	458	11,927	5,645	79,624	122,596
2022	20	30	566	497	8,337	7,391	84,507	110,400
2023	16	34	672	504	8,124	7,275	61,014	247,629
2024	24	26	767	370	9,736	5,520	79,870	294,959
2025	24	23	1,039	422	9,438	6,017	사업진행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재의 경우 B2C 판매·마케팅 중심의 과제가 많아 기계·부품 등 B2B 중심의 산업재에 비해 계약 단가나 규모가 작고, 산업 성격에 따른 지원내용[65]의 특성상 소비재의 과제별 평균 지원금액이 산업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최근 5년간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소비재가 산업재에 비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 수요가 충분하고, 소비재는 국가 브랜드 상승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직접 수출성과 이외에도 폭넓은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5) 주요 지원내용 : (소비재) 행사·전시회 연계 공간 임차료, 설치비, 콘텐츠 제작 등
(산업재) 제품현지화(시제품 제작·재료비), 해외법인 설립 컨설팅(사전조사, 인·허가 등) 등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사업 참여 경쟁률

구 분	‘21	‘22	‘23	‘24	‘25(중간집계)
소비재	3.25	3.35	2.24	2.79	3.33
산업재	1.62	1.03	1.79	1.53	2.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만, 소비재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재 부문과 산업재 부문의 지원규모 대비 수출실적 등 지원성과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비재 부문의 수출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사업 지원품목의 수출실적 집계 필요

동 사업 중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내역사업은 해외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및 수출규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인증획득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해외인증 비용 등의 50 ~ 70%를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고 있음.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건수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억원	최대 4건	70%	60%	50%	규격인증별 한도 별도 (건별 한도)

주: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25년 추경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2억 1,900만원(14.5%) 증액된 17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타 수출지원 사업과는 달리 지원기업·품목의 수출 실적을 집계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은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하나로 인증획득이 수출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 사업은 기업이 아닌 개별제품에 대한 규격인증 지원사업으로 제품단위별로 수출실적을 산출하기 불가능[66]한 경우가 많아 수출관련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성과지표로 인증획득 성공률을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률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기간(3년) 내 인증획득 성공률	53.0	55.3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기업·품목의 수출성과를 집계·관리

66) HS코드가 제품이 아닌 품목군으로 되어 있어서 품목 단위가 아닌 개별제품 단위에서 수출실적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첫째, 동 사업의 최종 목적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라고 할 수 있으나, 인증획득 성공 이후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품목의 인증획득 성공률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실제 수출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별 수출 성공률 또는 수출액 등을 집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의 기업당 지원한도(1억원)와 지원비율(50~70%)이 다른 수출지원 사업에 비해 적지 않은 상황[67]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른 수출지원 사업들과 성과를 비교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 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수출지원 사업들의 경우 지원기업들의 전년도 수출액과 지원년도 수출액, 수출 증가율 등을 집계하고 있음.

셋째, 「국가재정법」 제34조[68]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 제출시 첨부

6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 2024년 기준 평균지원액은 기업당 3,500만원, 보조율은 64.7% 수준임.

서류로 함께 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에 동 내역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인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을 집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69]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에는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보조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동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가 아닌 출연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는 하나,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사업비가 출연되고 주관기관에서 지원기업에 일정 비율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과 성과계획서에서 동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 참여기업들의 수출액을 설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을 집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70]

---

68)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69) 정부가 제출한 2025년·2026년 성과계획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70)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사업 참여기업부터 연말 품목별 수출실적 등을 산출하여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8. 지역특구제도 운영(3335-304)

□ 예산안 현황

‘지역특구제도 운영’(2019~, 직접 및 보조)은 ①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②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 ③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실증·인증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혁신특구 제도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억 2,500만원(25.7%) 증액한 23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지역특구제도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지역특구제도 운영	12,385	18,395	18,395	23,120	4,725	25.7
지역특구제도 운영	4,489	4,489	4,489	5,429	940	20.9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7,896	13,906	13,906	17,691	3,785	27.2

□ 검토의견

(1)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정책설계 및 법적근거 보완 필요

동 사업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포함), 지역특화발전특구[71]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특구위원회 운영, 특구운영성과평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글로벌혁신특구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 예산 등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지역특구제도 운영: 5,429백만원
- 규제자유특구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90백만원
- 특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및 지원: 1,464백만원
- 사전컨설팅: 717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분석연구 및 법령개정: 802백만원
- 특구운영성과평가: 364백만원
- 지역혁신네트워크 운영: 52백만원
- 규제자유특구 제도 홍보: 340백만원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300백만원
- 정책기획: 1,000백만원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17,691백만원
-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1,080백만원
-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 15,531백만원
- 글로벌혁신특구 고도화 연구: 300백만원
- 선정 운영 및 성과관리: 580백만원
- 해외클러스터와의 협력: 2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재정리

71) 2025년 10월 현재 32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7개 포함) 및 172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영중

2026년도 지역특구제도 운영의 내내역사업으로 정책기획(10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규제자유특구의 신규유형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연계형 특구위원회 운영, 사무국 운영, 광역지자체 기획조정 협의체 운영, 수요조사 및 과제발굴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책기획 신규 편성내역

○ 예산안 산출내역 ('26년 1,000백만원)

- 광역연계형 특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76.4백만원

* 광역연계형 특구위원회 17명 × 1회 × 0.3백만원 = 5.1백만원
* 광역연계형 심의위원회 21명 × 1회 × 0.3백만원 = 6.3백만원
* 광역연계형 분과위원회 10명 × 5개분과 × 3회 × 0.3백만원 = 45백만원
* 광역연계형 현장점검 5명 × 5개분과 × 2회 × 0.3백만원 = 15백만원
* 안건제작 × 1회 × 1백만원 = 5백만원

- 위원회 운영 지원 및 광역연계형 사무국 운영지원 : 300백만원

* 광역연계형 사무국 운영 3명 × 2개 특구 × 50백만원 = 300백만원

- 사전컨설팅 : 15백만원

* 5개 광역연계형 특구 × 5명 × 2회 × 0.3백만원 = 15백만원

- 광역 지자체 기획·조정 및 협의체 운영 : 85백만원

* 중앙-광역지자체 기획조정위원회 4회 × 10백만원 = 40백만원
* 중앙-광역지자체 협의체 및 워크샵 2회 × 10백만원 = 20백만원
* 공동 정책개발 및 전문가 자문 5회 × 5백만원 = 25백만원

- 규제자유특구 제도홍보 : 24백만원

*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영상, 기획, 홍보물 등 제작 = 24백만원

- 정책기획 : 500백만원

* 산업현황 조사(수요, 데이터 수집 등) 및 과제발굴 5개 × 100백만원 = 5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자체 중심

의 행정구역 내 제한된 실증으로 이종 산업 융합 및 공급망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가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중심의 규제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전략과제 수행에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첫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을 목표로 사전 컨설팅·공급망 조사·정책기획을 선행 추진할 예정임.

광역 연계형 특구(가칭) 개요(안)

□ 추진배경
- 세계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기술을 신속히 상용화하여 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 국내는 지역 소멸, 고령화 등으로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 봉착
  ⇒ **규제자유특구도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新정책 필요**

□ 주요내용
- (**개념**) 2개 이상 지자체 간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특구
- (**사업방식**) 정부에서 공급망, 산업융합 등 다수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

①특구 전략과제 제시	⇨	②전략과제 관련 규제발굴	⇨	③특구 상세기획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지자체

□ 광역 연계형 특구 유형별 사업모델 예시안
- (**산업융합: 스마트 농업특구**) 자율주행트랙터, 드론, 신에너지농공단지 복합 실증
- (**유통망구축: 新물류특구**) 해운-육상 물류 연계, AI로봇·드론·자율주행선박 항구 복합 실증
- (**산업생태계 구축: 수소모빌리티특구**) 수소생산-저장·운송-수소모빌리티 공급망 실증

【 광역 연계형 특구 계획 구성 】

A 광역 연계형 특구(특구전략산업 A)		
지자체 1	**지자체 2**	**지자체 3**
제품1	제품2	제품3
특례 a,b	특례 c,d	특례 e,f

주: 상기자료는 계획안으로, 향후 변동 여지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 중인 광역연계형 특구 계획안을 보면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을 위해 단일지자체가 기획하기 어려운 공급망, 산업

융합 등 전략과제를 중기부가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임.

신기술 신속 상용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외에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여 광역 지자체간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규제특례를 넓게 적용한다는 구상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라는 2개의 특구를 축으로 운영하면서 민간과 지자체 중심으로 특구지정과 운영계획을 신청하면 중앙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승인하는 구조, 이른바 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내역사업인 '광역연계형 특구'의 경우 이와 같은 현행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특구를 신설하고 있는 점,

기존 특구의 운영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공급망, 산업융합 등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제들을 발굴하며, 특구 상세기획에도 지자체와 함께 관여할 예정인 점,

예산안에서 새로운 제도연구를 위한 정책기획(5억원) 예산 외에 광

역연계형특구 위원회 및 사무국, 협의체 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5억원)도 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광역연계형특구의 신규예산은 운영계획과 정책설계를 보완한 후 법률 근거 마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2) 규제특례 활용률 제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노력 필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함)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2025년 6월 기준 136개 시군구에서 172개 특구를 지정·운영 중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특구수(개)	10	6	5	2	3	1	0	3	19
시군구	10	6	3	2	3	1	0	3	15
지역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수(개)	13	16	16	13	29	21	13	2	172
시군구	10	10	11	11	20	18	11	2	136

주: 2025. 6.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주요 규제특례 내용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2024년 특화특구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162개 특구[72]의 특례 활용계획은 총 611건이었으나, 실제 특례 활용실적은 435건으로 계획 대비 71.1% 수준이고, 특례 활용 건수가 0건인 특구도 12개로 특화특구의 규제특례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특화사업 규제활용 건수가 없는 특화특구 현황

시도	시군구	특구명	규제특례	
			계획	활용
강원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6	0
강원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1	0
강원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	0
경기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1	0
경기	양평군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0	0
경북	청도군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	0
경북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	0
경북	경주시	경주 화랑 유소년스포츠 특구	3	0
대구	중구·수성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4	0
충남	서천군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6	0
충남	서천군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	0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충북 태양광특구	0	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특화특구제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화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7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024년 말 기준 175개 특화특구 중 보고서를 미제출한 13개 특구를 제외한 162개 특구의 특례 활용 현황을 살펴봄.

것은 그만큼 특화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2025년 6월 기준 172개 특화특구의 특화사업자는 총 289개로 이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214개이고 민간기관이 75개인데, 전체 특화특구 중 144개 특화특구는 기초지자체만 특화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외의 특화사업자가 없는 상황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화특구에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하지 않고,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 조정, 특화특구 운영성과 평가, 특화특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운영업무를 수행 중이나,

향후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사업자의 규제특례 활용률을 제고하고, 민간특화사업자의 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특화특구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지역특구제도 운영 세부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조성 개수를 설정하고 있음.

지역특구제도 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조성 (단위: 개)	목표	-	-	4	3	3	'25년 3차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비 반영하여 설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	의결 주문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동 사업을 포함한 특구제도운영(3335), 규제자유특구제도(3339)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특구제도의 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성공률"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역특구제도 운영 세부사업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 단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세부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특구 관련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2	'23	'24	'25	'26	'27	'28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성공률(%)	0.4	일반재정	목표	-	-	51.5	52.6	53.1	53.6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제품을 양산 또는 판매 중인 기업 비중 ㅇ 산식: (∑R&D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생산된 제품/ 서비스의 양산 또는 판매 중인 과제수/∑사업화대상 과제수)×100 - 사업화대상 과제수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의 전년도까지 연구개발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수	실적 조사 증빙 (KIAT)
			실적	-	0	70.7	-	-	-	-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중 발췌

지역특구제도 운영 세부사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운영 및 제도 홍보,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규제샌드박스 분석연구 및 법령개정,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특구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제도 운영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조성 개수를 설정한데 대하여 '24년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사업이 신규로 시작되어 규제 소관부처와의 특례 부여 협의 및 지자체 특구계획 개선 등의 특구지정을 위한 지정노력이 중요하여 신규 조성 개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동 사업은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포함)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일부 제도의 지표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개선 노력을 포

괄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구사업자의 특례 활용률, 신규 특례 발굴 현황 등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특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특구제도 전반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 예산안 현황

‘장애인기업 육성’(2007～, 보조)은 장애인 창업지원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억 400만원(28.3%) 증액한 136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장애인기업 육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장애인기업 육성	10,517	10,597	10,597	13,601	3,004	28.3
장애인 창업육성	3,169	3,169	3,169	3,019	△150	△4.7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3,095	3,095	3,095	6,025	2,930	94.7
센터운영	4,253	4,333	4,333	4,557	224	5.2

□ 검토의견

(1)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면밀한 수요 파악에 기반한 신규사업 편성 필요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내역사업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업무보조인력 지원, 수출 및 공공입찰 등 국내외 판로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인증·마케팅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공공구매촉진’, ‘수출역량강화’, ‘정책연구’ 등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3,000만원(94.7%) 증액한 60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업무지원인 서비스’(17억 8,000만원)와 ‘기업가 역량강화센터’(10억원) 내내역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2026년도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3,095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6,025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기술사업화) 1,109백만원 -(공공구매촉진) 1,014백만원 -(수출역량강화) 552백만원 -(정책연구) 420백만원	-(기술사업화) 1,230백만원(+121백만원) -(공공구매촉진) 1,014백만원(전년동) -(수출역량강화) 581백만원(+29백만원) -(정책연구) 420백만원(전년동) -(업무지원인 서비스) 1,780백만원(신규)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1,000백만원(신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을 보내 장애경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73]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74]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추진 결과(2024년, 2025년)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신청	지원	신청	지원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80개사	40개사	131개사	40개사	타 내역사업 예산(2억원) 전용하여 시범실시

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2025년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관련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 같은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의 보조

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를 전용(2억원)하여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는바,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 115개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17억 8,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반영함으로써 근로자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임.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개요(2026년도 예산안)

□ 사업목적

○(목적)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보조, 의사소통, 경영지도 등 지원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 사업개요

○(지원규모) 115개사 내외(17.8억원)

○(지원내용) 경영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지원인 제공

구분	지원 직무
업무보조형	고객응대, 행정보조(바우처 신청 행정기관 신청서류 작성 등), 이동지원(동승자가 동행해야 차량 탑승이 가능한 경우), 서류정리, 정보검색, 기타 필요한 업무보조 등
의사소통형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가격결정, 트렌드 분석 등), 홍보 컨설팅(온・오프라인 홍보, 고객 재방문 유도) 등

○(시행주체)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업 지원체계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공고 및 지원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추진**	⇨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안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기준 1인 중증장애경제인 규모를 추정(11,519개사)[75]한 뒤 유사 제도인 '근로지원인 서비스'(고용노동부 소관)의 최초 5개년(2013~2017) 연평균 지원비율(약 1%)[76]을 참고하여 지원규모(115개사)를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신규 내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의 수혜자인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타 부처의 유사 지원제도 사례의 과거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규모를 임의로 산출하는 것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지속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77]

75)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8~2023년 1인 중증장애경제인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14.4%)를 반영하여 2025년 추정치를 산출함.

구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인 중증장애경제인	4,494개사	6,091개사	9,142개사	8,802개사	10,069개사 (추정)	11,519개사 (추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6)

근로지원인(고용노동부) 최초 5개년 지원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증장애인 임금근로자 수(A)	102,432명	117,309명	98,846명	109,410명	106,446명
근로지원인 실적(B)	769명	769명	923명	1,259명	1,609명
비율(B/A)	0.8%	0.7%	0.9%	1.2%	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7)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해당 조사('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 대상 정책수요조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인 2023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 목적 또한 현행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파악 및 '(가칭)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이었음.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칭)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91.9%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는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산출근거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은 신규 내역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다는 입장임.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안 산출근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16억 9,000만원(115개사×1,500만원) -지원규모(115개사): '25년 1인 중증장애경제인 추정 수(11,519개사)에 '25년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최초 5년간 연평균 지원비율(1%) 적용 -지원단가(1,500만원): '26년 최저시급(10,320원) × 125시간(유사 제도인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무시간) × 95%(중도퇴사 등 감안한 참여율) ○(사업운영비) 9,000만원 -현장실사, 조사연구(성과분석), 전문가 활용비(심사, 자문 등) 및 토론회, 교육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다른 신규 내내역사업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는 장애인 기업가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권역별 장애 특성화대학과 협업하여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 대학생 취업 지원사업'(교육부 소관) 운영 경험이 있는 장애 특성화대학[78]을 대상으로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1개소를 신설·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구축비(5억원)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5억원) 등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예산안 산출근거

○ 교육시설 구축비: 민간자본보조(320-07), 500백만원(1개소 × 500백만원) ○ 강사비, 보조인력 등 운영비: 민간경상보조(320-01), 5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78) 2024년 기준 10개 대학(권역별): 수도권(강남대, 경민대, 인천대, 한경국립대), 중부권(나사렛대), 강원권(가톨릭관동대), 서부권(전북대), 남부권(대구대, 부산대, 제주대)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사업개요(2026년도 예산안)

□ 사업목적

○ 장애인 기업가 양성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권역별 장애 특성화대학과 연계하여 장애인 혁신인재의 창업에서부터 기업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장애 특성화대학 협업을 통해 장애인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200명 내외)

○ (특화교육) 장애유형별 요구되는 공간, 인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과정(안)	추천훈련과정
스마트팜 특화교육・실습(발달)	스마트팜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스마트팜 내 발달장애인 직무 분류에 따른 직무훈련, 발달장애인 사회화 교육
요식업(지체)	외식/푸드 창업을 위한 메뉴 개발, 브랜딩, 마케팅 등 창업을 위한 심화교육, 푸드메이커를 위한 특화 컨설팅(밀키트 제조, 온라인 판매 등)
미디어콘텐츠(청각)	영상콘텐츠 기획 입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실습, 스토리텔링 창작 실습, 촬영/조명 실습, 동영상 제작 기초, 영상콘텐츠 비즈니스 설계
전자상거래(정신)	사이트 기획・구축・운영, 환경분석, 마케팅 관리 및 활용, 오픈마켓 플랫폼 이해, 판매관리 실무
안마 특화교육・실습(시각)	안마・마사지・지압 등 수기요법에 관한 전반적인 실습, 생리적인 구조와 형태 및 계통별 학습을 통한 시술 실습, 침구 시술과 관련 있는 경락, 경혈을 파악하고 습득

○ (멘토링) 기업 운영 시 겪게 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 멘토와의 1:1 멘토링, 비즈니스 상담, 워크샵, 네트워킹 이벤트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신설・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원칙적으로 수요에 기반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79]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

79) 「국가재정법」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

이 추진될 경우 신청 저조로 인한 사업지연 및 예산 집행부진으로 사업수행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80]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1인 중증장애 경제인의 수요 및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신설·운영에 대한 유관 대학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신규사업의 적정 지원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로 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80)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3년 9월에 12개 국립대와 '청년장애인 창업공유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동 업무협약은 장애학생에 대한 균등한 창업교육기회 제공 및 포용적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포괄적 상호협력에 관한 것으로, 2026년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신설·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음. 또한, 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대학과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관련 협업 대상으로 제시된 장애 특성화대학이 일치하지도 않는바, 동 업무협약 체결로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갈음하기는 어려워 보임.

10.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4835-301)

□ 예산안 현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1999~, 직접 및 보조)은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억 4,800만원(6.3%) 증액한 652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55,805	61,386	61,386	65,234	3,848	6.3

□ 검토의견

(1) 수요에 기반한 수행기관 관리 및 수행기관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700개사에 대한 바우처 발급 정부부담금,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비용, 플랫

폼 운영, 성과분석, 회계정산 등 사업운영비, 지역수요발굴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바우처 발급: 바우처 발급을 위한 정부부담금(61,132백만원)**
- 2,700개사 × 약 22.6백만원 = 61,132백만원
○ **사업운영비: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비용, 성과분석, 회계정산 등(3,902백만원)**
- 사업운영비(변동): 2,700개사 × 약 1백만원 = 2,687백만원
- 사업운영비(고정): 플랫폼운영, 성과분석, 회계정산 등 1,215백만원
○ **지역수요발굴: 13개 지방청의 지역수요발굴 운영비(200백만원)**
- 13개 지방청 × 15백만원 = 2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재정리

본 세부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바우처 사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3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이 기업부담금을 입금하면 사업시행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당 부담금에 정부부담금을 합한 금액만큼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요기업은 사전에 등록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수행기관으로부터 바우처 금액만큼의 서비스 지원을 받는 형식임. 보조율은 수요기업의 매출액 및 소재지에 따라 40~95%로 차등 운영됨.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개요(안)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컨설팅 (6개)	경영기술전략	경영전략, 기술사업화전략, 생산관리, 영업/마케팅전략, 노무관리, 회계관리, 융복합	15
	AX·DX컨설팅	AX·DX컨설팅	30
	탄소중립	탄소수준진단, 심층컨설팅	20
	중대재해예방	안전체계 구축, 화학물질관리법	20
	진로제시컨설팅	기초진로제시, 회생조기진입, 재창업, 사업정리	10
	회생컨설팅	Pre-회생, 회생컨설팅, 개인회생컨설팅, 워크아웃컨설팅	30
기술지원 (7개)	시제품 제작	CAD설계, 디자인 목업, 샘플금형, 공정설계, 시험생산	30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20
	IP기반 기술사업화	특허출원, 기술이전	15
	제품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국외인증, 국내인증, 제품시험	15
	(저탄소)시제품 제작	CAD설계, 디자인 목업, 샘플금형, 공정설계, 시험생산	30
	에너지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에너지효율향상설비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20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활용	국외인증, 국내인증, 제품시험	15
마케팅 (2개)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 개발	20
	광고 및 홍보 지원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광고지원	20

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프로그램 및 한도의 일부 조정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보조율(안)

평균 매출액	수도권	일반[1] (비수도권, 83개)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우대[2](44개) +10%	특별[3](40개) +15%
3억원 이하	85%	90%	95%	95%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5%	80%	85%	9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65%	70%	75%	80%
50억원 초과~140억원 이하	45%	50%	55%	60%
140억원 초과	40%	45%	50%	55%

주 1. 일반: 특별, 우대지원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시·군·구
2. 우대: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44개
3. 특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2023~2025년) 동 사업을 통한 바우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건수 및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프로그램은 기술지원 분야의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기술지원(탄소) 프로그램, 마케팅 분야의 광고지원(홍보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세개 프로그램의 합은 전체 바우처 이용 건수의 47.7%(9,140건 중 4,357건), 이용 금액의 61.3%(1,596억 7,200만원 중 978억 2,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2023~2025년) 바우처 이용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8월말)		합계	
분야	프로그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198	2,395	224	2,702	393	4,220	815	9,317
	융복합	72	1,119	85	1,020	-	-	157	2,139
	제조혁신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32	404	47	533	-	-	79	937
	ESG컨설팅	127	1,825	-	-	-	-	127	1,825
	안전보건 및 규제 대응	22	246	-	-	-	-	22	246
	중대재해예방	-	-	217	2,720	149	1,739	366	4,459
	탄소중립 경영혁신	274	2,972	315	3,287	339	3,451	928	9,710
기술지원	AX·DX추진전략	-	-	-	-	8	159	8	159
	시제품제작	**543**	**13,735**	**620**	**16,344**	**750**	**18,084**	**1,913**	**48,163**
	시스템 및 시설구축	99	1,778	136	2,546	151	2,840	386	7,164
	IP기반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67	857	86	1,160	115	1,373	268	3,390
	제품 시험·인증·연구장비 활용	127	1,668	110	1,468	198	2,331	435	5,467
	기술지원(탄소)	**316**	**9,603**	**315**	**8,917**	**337**	**7,922**	**968**	**26,442**
마케팅	디자인 개선	106	1,224	103	1,278	94	1,172	303	3,674
	브랜드 지원	76	1,274	85	1,460	102	1,650	263	4,384
	홍보물 제작	-	-	-	-	626	8,977	626	8,977
	광고 지원(홍보지원)	**579**	**9,070**	**624**	**10,005**	**273**	**4,144**	**1,476**	**23,219**
합계		2,638	48,170	2,967	53,440	3,535	58,062	9,140	159,67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이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수행기관을 선택하여[81]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행기관 모집 공고 이후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걸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수행기관은 선정 이후 2개년간 사업 참여가 가능함.

최근 3년(2023~2025년) 등록 수행기관 현황

(단위: 개사)

구분		등록 수행기관 수		
분야	프로그램	2023년(누적)	2024년(누적)	2025년(누적)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507	665	478
	융복합	16	22	6
	제조혁신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124	127	47
	ESG컨설팅	210	-	-
	안전보건 및 규제 대응	146	-	-
	중대재해예방	-	395	167
	탄소중립 경영혁신	154	174	89
	소계(중복제거)	653	792	613
기술지원	AX·DX추진전략	-	-	66
	시제품제작	**950**	**956**	**588**
	시스템 및 시설구축	401	486	292
	IP기반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356	335	285
	제품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260	224	133
	기술지원(탄소)	**367**	**369**	**196**
	소계(중복제거)	1,451	1,672	1,347
마케팅	디자인 개선	503	523	264
	브랜드 지원	426	427	251
	홍보물 제작	-	-	126
	광고 지원(홍보지원)	**1,117**	**1,254**	**653**
	소계(중복제거)	1,016	1,188	903
합계(중복제거)		2,664	3,143	2,462

주: 수행기관이 복수의 프로그램에 등록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81) 2025년 기준 등록 수행기관은 2,577개사로, 수행기관 현황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 게재되어 있음

본 사업의 성과는 바우처를 사용한 수요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이 얼마만큼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이 될 것인데, 그를 위해 1차적으로 수요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충분히 있는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수요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기업에 대한 바우처 지원 종료 시 수행기관의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일정준수, 결과물 만족도, 재이용 및 타인추천 의향 등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82],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추가 및 바우처 프로그램 추가 수요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에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등록 수행기관 중 매년 1회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1,500~2,100개에 이르는 반면 매년 10회를 초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수가 30~50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 또는 역량 미달 수행기관의 정리를 통해 소수의 수행기관에 역량을 초과하여 수요가 몰릴 우려를 해소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83].

82) 2025년 8월말 기준 서비스 계약 1,140건에 대해 평균점수 9.8점(10점 만점 기준)
83) 연도별 최다 사업 수행기관의 수행건수: ('23) 89건, ('24) 95건, ('25) 97건(협약 기준)

최근 3년(2023～2025년)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8월말 기준)			
수행 횟수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계 (중복제외)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계 (중복제외)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계 (중복제외)
0회	465	921	645	2,031 (1,680)	587	1,129	843	2,559 (2,148)	416	850	539	1,805 (1,528)
1~ 5회	161	506	339	1,006 (897)	179	515	306	1,000 (898)	165	462	304	931 (806)
6~ 10회	16	14	21	51 (54)	13	12	26	51 (59)	18	21	38	77 (78)
10~ 20회	6	6	8	20 (20)	6	11	8	25 (22)	10	10	17	37 (33)
20회 초과	5	4	3	12 (13)	7	5	5	17 (16)	4	4	5	13 (17)
계	653	1,451	1,016	3,120 (2,664)	792	1,672	1,188	3,652 (3,143)	613	1,347	903	2,863 (2,4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수행기관의 확보 및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2023～2025년) 수요기업의 업력·규모·지역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업력	3년 이하	41	1,139	108	4,244	198	6,280	347	11,663
	3~7년	390	10,671	354	13,626	475	14,876	1,219	39,173
	7년 초과	**1,189**	**36,359**	**1,016**	**35,600**	**1,286**	**36,907**	**3,491**	**108,866**
규모	3억 이하	244	6,751	244	9,517	270	9,184	758	25,452
	3~10억	283	7,906	253	9,747	333	9,870	869	27,523
	10~50억	**783**	**23,428**	**664**	**23,914**	**919**	**27,402**	**2,366**	**74,744**
	50~120억	310	10,084	245	7,851	333	8,522	888	26,457
	120억 초과	-	-	72	2,440	104	3,085	176	5,525
지역	서울	123	3,039	127	4,711	254	5,693	504	13,443
	부산	125	2,218	86	2,453	119	2,980	330	7,651
	인천	**95**	**9,840**	**88**	**9,963**	**128**	**10,850**	**311**	**30,653**
	대전	69	1,324	61	1,725	71	2,071	201	5,120
	대구	103	4,153	96	3,592	140	3,978	339	11,723
	광주	38	3,298	47	3,769	48	3,878	133	10,945
	울산	40	1,208	48	1,792	47	1,670	135	4,670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종	26	1,219	18	1,720	21	1,756	65	4,695
	경기	299	452	279	522	351	486	929	1,460
	강원	52	1,304	49	1,428	79	1,999	180	4,731
	충북	93	2,171	63	2,240	84	2,777	240	7,188
	충남	81	2,826	95	3,781	112	3,623	288	10,230
	전북	73	1,974	77	2,740	73	2,401	223	7,115
	전남	68	1,971	56	2,069	64	2,231	188	6,271
	경북	**138**	**4,485**	**120**	**4,472**	**151**	**4,988**	**409**	**13,945**
	경남	**184**	**6,347**	**138**	**5,414**	**192**	**6,056**	**514**	**17,817**
	제주	13	339	30	1,077	25	626	68	2,0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성과지표 및 정산지연 관련 사업운영개선 필요

동 사업은 2025년 보조사업연장평가 및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에서 사업운영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구체적으로 ① 성과지표가 매출액 증가율로 구성되어 성과 확인이 시차를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당해연도 성과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조지표를 추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② 내역사업 '재기컨설팅'이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것은 바우처라는 수단을 제외하고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 세부사업의 목적과 대상과의 부합도가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먼저 성과지표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혁신바우처 수혜기업의 지원 전후 매출액 향상 정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도 수혜기업의 매출액 자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당해 연도 성과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조지표로 ①(위험성평가) 중대재해예방에 기여 정도 ②(회생인가율) 컨설팅 종료 시 판정되는 회생인가율, ③(지원기업 만족도) 서비스 완료 시 측정되는 지원기업 만족도 등 유형별 보조지표를 통해 성과관리 및 사업 환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혁신바우처 지원업체 매출액 증가율(%)	목표	3.90	4.0	4.1	4.2	4.3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2~3% 정도 목표치를 상향	혁신바우처 수혜기업의 지원 전후 매출액 향상 정도를 측정	전문기관 위탁평가 결과
	실적	3.90	4.11	4.12	-	-			
	달성도	105	103	100	-	-			

자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다만, 보조지표 추가 설정 외에 현재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성과지표는 바우처 수혜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대비 바우처 사용 연도 매출액 증가율로 측정하는데, 전년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한 매출액이 바우처 사용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인한 것인지 물가상승이나 경기변동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성과지표 산출시 바우처 수혜 이후 폐업한 기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성과측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둘째, 혁신바우처지원사업과 내역사업 '재기컨설팅'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재기컨설팅바우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컨설팅과 진로제시컨설팅 등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중 회생컨설팅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보통 2~3년으로 정하고 있음.

혁신바우처지원사업은 2024년 바우처 미사용 잔액 109억 2,200만원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 혁신바우처 사업비 정산·집행 잔액 현황(2025.8.기준)

(단위: 원)

구분		세부사업용도	계획(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혁신 바우처	직접비	지원보조금	46,369,542,000	36,844,959,000	9,524,583,000
		민간위탁사업비	1,680,000,000	1,680,000,000	0
	간접비		2,540,458,000	1,580,800,936	959,657,064
	소계		50,590,000,000	40,105,759,936	10,484,240,064
재기 바우처	직접비	지원보조금	4,687,600,000	4,437,020,000	250,580,000
	간접비		327,400,000	140,503,381	186,896,619
	소계		5,015,000,000	4,577,523,381	437,476,619
합계			55,605,000,000	44,683,283,317	10,921,716,68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정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기간이 긴 재기컨설팅바우처 사업이 동일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는 문제를 들 수 있음. 사업잔액의 반납이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짧은 혁신바우처의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이 끝난 상황이더라도 사업기간이 긴 재기컨설팅바우처의 집행잔액 정산을 기다리기 위해 동 사업의 전체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내역사업 재기컨설팅바우처사업의 주기와 혁신바우처사업의 취지를 면밀히 고려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혁신바우처와 재기컨설팅바우처의 사업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점검 필요

동 사업은 수요기업이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 비용을 수요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하는 바우처로 결제하는 구조로 수요기업과 수행기관간 담합을 통한 부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구조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업을 공고할 때 사업운영기관,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 제재 등의 사후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또한,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요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 선정 및 협약 단계에서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중간·최종점검 시 혁신바우처 서비스 결과물 표절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중에 있음.

부정행위 단계별 대응 전략

단계별 대응		
【관찰】 (운영기관) 서비스별 서류 재검토 【주의】 (운영기관) 관련 소명자료 요청 【위험】 (중진공-운영기관) 현장 실태 점검	⇨ (환류)	○ 소명 부족 및 다수 의심사례 발생 기업은 현장점검 실시 ▼ ○ 부정행위심의위원회 개최 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 ○ 주요 위반사례 교육자료 활용 및 플랫폼 팝업 게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간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나 동 사례는 국민

권익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로,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의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수행기업은 최종 제출된 수행결과물을 거짓 보고했으며 참여기업의 기존결과물을 과도하게 재활용·재가공했다는 사유로 참여제한 3년 및 해당 사업비 환수의 제재조치가 결정된 바 있음.

최근 3년(2023～2025년) 부정행위 적발 및 제재 현황

기업명		제재사유 및 근거	제재조치	환수금액
수행사	엘리***	■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 최종 제출된 수행결과물 거짓 보고 및 수요기업의 기존결과물을 과도하게 재활용·재가공	참여제한 3년, 해당 사업비 환수	20백만원
참여기업	**산업(주)	■ 수행기관과의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정산하는 경우	참여제한 3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정행위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부정행위 대응 전략이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세목조정 반복 지양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동안 바우처 설명회 및 교육추진을 위해 세목조정을 반복하고 있음. 세목조정 금액은 2022년 3,700만원, 2023년 5,500만원, 2024년 7,600만원, 2025년 5,600만원임.

세목조정 반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본 예산	예산 현액	본 예산	예산 현액	본 예산	예산 현액	본 예산	예산 현액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61,805	61,805	55,805	55,805	55,805	55,805	61,386	61,386	65,034
· 일반수용비(210-01)	300	263	200	145	200	124	200	144	200
· 임차료(210-07)	-	14	-	10	-	25	-	36	-
· 일반용역비(210-14)	-	23	-	45	-	51	-	20	-
· 민간경상보조(320-01)	61,505	61,505	-	55,605	55,605	55,605	61,186	61,186	65,034
세목조정 사유	바우처 설명회 및 교육 추진에 따른 세목 조정 (37백만원)		바우처 설명회 및 교육 추진에 따른 세목 조정 (55백만원)		바우처 설명회 및 교육 추진에 따른 세목 조정 (76백만원)		바우처 설명회 및 교육 추진에 따른 세목 조정 (56백만원)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부사업 예산편성 시 바우처설명회 및 교육추진에 필요한 임차료 및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아 일반수용비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세목조정을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 전체규모에 비해 세목조정 금액은 크지 않으나 같은 내역으로 수년째 세목조정이 반복되고 있고, 2026년 예산안에도 임차료 및 일반용역비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2026년에도 동일한 세목조정이 예상됨.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투명한 재정정보 관리와 함께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사업 추진성격에 맞는 과목별 예산편성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 계획안 현황

‘창업사업화지원’(2009~, 보조 및 출연)은 창업기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억 100만원(11.1%) 증액한 4,484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창업사업화지원	359,131	403,567	457,567	448,468	44,901	11.1
창업패키지	188,560	162,255	204,255	181,817	19,562	12.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103,096	130,996	142,996	145,622	14,626	11.2
창업중심대학	67,475	77,475	77,475	88,250	10,775	13.9

□ 검토의견

(1)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TIPS와의 차별화 필요

‘창업패키지’ 내역사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7년이내)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성장단계별로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5억 6,200만원(12.1%) 증액한 1,818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26년도 창업패키지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내역
181,817	① 예비창업패키지: 748개사*65.5백만원=49,125백만원 ② 초기창업패키지: 47,542백만원 - (일반) 400개사*72.3백만원=28,926백만원 - (딥테크) 100개사*150백만원=15,000백만원 - (투자연계) 50개사*72.3백만원=3,616백만원 ③ 창업도약패키지: 65,750백만원 - (일반) 300개사*145백만원=43,500백만원 - (딥테크) 75개사*200백만원=15,000백만원 - (투자연계) 50개사*145백만원=7,250백만원 ④ 특화창업패키지: 19,400백만원(글로벌 창업허브 운영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사업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창업기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지원 유형별(일반·딥테크·투자연계)로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구분	일반형	딥테크형	투자연계형
지원대상	◦ 전(全)분야	◦ 딥테크 5대 분야	◦ 투자실적 보유 기업
지원규모	◦ 1,488개사	◦ 175개사	◦ 100개사
사업화자금 (최대)	◦ 예비 1억원 ◦ 초기 1억원 ◦ 도약 2억원	◦ 초기 1.5억원 ◦ 도약 3억원	◦ 초기 1억원 ◦ 도약 2억원
프로그램	◦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지원 등	◦ 딥테크 분야별 특화지원	◦ 해외 투자연계 등 후속투자유치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형은 전(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및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딥테크형은 딥테크 5대분야(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및 기술이전 등 딥테크 특화형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투자연계형은 AC, VC 등 투자 전문기관의 투자유치 실적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및 후속 투자유치를 지원함.

다만,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예산액 108억 6,600만원)한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는 민간투자사가 선제적으로 투자한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및 해외 투자연계 등 후속투자유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과 매우 유사함.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 vs. TIPS

구분	투자연계형	TIPS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로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지원	◦ 민간이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R&D·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
지원대상	◦ 민간투자를 받은 업력 7년 이내 유망기술 보유 창업기업	◦ 민간(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간: 1년 ◦ 사업화자금(초기: 1억원, 도약 2억원) 및 후속투자유치 지원	◦ 지원기간: 2년 ◦ 사업화자금(1.5억원) 및 후속투자유치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는 TIPS 운영사가 아닌 AC, VC 등 민간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시장성을 입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TIPS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를 보면 운영사 신청자격으로 AC, VC(초기전문, LLC[84] 포함),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을 제시하고 있기에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의 민간투자사와 차이가 없으며, 민간 전문투자사가 딜소싱(Deal sourcing)[85]한 벤처스타트업에 재정을 투입하여 시드머니를 공급하는 사업구조의 본질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84)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85)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액셀러레이터 등이 투자할만한 기업을 발굴하거나 사업기회를 포착해내는 과정을 말함.

TIPS 운영사 신청자격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2025.9.16.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연계형 창업패키지의 TIPS와의 차별화 등 조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정책패키지 연계강화 필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역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억 2,600만원(11.2%) 증액한 1,456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26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내역
145,622	① 기술사업화자금: 121,622백만원 - (기본지원) 599개사*178백만원=106,622백만원 - (후속지원) 30개사*500백만원=15,000백만원 ② 핵심분야 특화지원프로그램: 24,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창업 후 10년이 넘지 않은 딥테크 분야[86]의 우량 기업에게 매년 2억원(평균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종료 후에는 매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추가 후속지원도 제공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 개요

○ (개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내 스타트업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자금 및 연계 지원
○ (추진체계) 총 3단계로 지원, 단계별 평가를 통해 매출액 등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상위 10% 이내 스타트업은 다음 단계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딥테크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 상용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진입 및 확산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절 없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므로, 정책패키지 간 연계성과 참여 연

86) 딥테크(deep tech) 분야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로서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술분야를 의미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 등이 있음.

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다른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직접적인 사업화자금 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수출바우처 등 다른 창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심사 간소화 및 가점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연계 지원실적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수행 시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채택[87]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연계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함.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다른 지원과의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수행시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그런데, 2024년 연계 지원현황을 보면 기술보증, R&D, 수출바우처 등의 영역에서 2023년에 비해 지원율이 상승했고, 특히 기술보증은

8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4.11.

14.2% → 39.6%, R&D는 14.9% → 65.0%로 지원율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정책자금은 14.5%, 수출바우처는 15.7% 등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한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연도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 지원현황

(단위: 개, %)

구분	2023			2024			2025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정책자금	275	40	14.5	503	73	14.5	577	29	5.0
기술보증		39	14.2		199	39.6		122	21.1
R&D		41	14.9		327	65.0		-	-
수출바우처		27	9.8		79	15.7		73	12..7

주: 2025년은 지원기업 선정시점을 감안하여 분석에서 제외함(2025.4.23. 선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은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독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성공 시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스타트업(모방형 스타트업, 기존 기술 활용 스타트업)에 비해 연구개발 위험(R&D risk)[88], 시장-제품 위험(market-product risk)[89]이 높은 고위험·고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초기 자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초기 및 후속 투자, 규제 완화 등 재정적·제도적 집중 지원이 필요함[90].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책자금, 기술보증, R&D, 수출바우처 등 다른 정책패키지와의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88) 기술 상용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을 말함.
89)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시장에서 실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함.
90) 김정호, 「딥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2023.6, pp. 101-102.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지원기업 (B1)	지원율 (B1/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2)	지원율 (B2/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3	4.5	300	24	36.4	1,233
바이오헬스	156	14	9.0	517	66	42.3	1,364
미래 모빌리티	91	22	24.2	978	35	38.5	1,164
친환경에너지	55	11	20.0	969	23	41.8	1,512
로봇	57	16	28.1	256	27	47.4	1,201
빅데이터·AI	35	2	5.7	625	11	31.4	1,911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2	9.5	200	7	33.3	964
우주항공·해양	12	3	25.0	233	4	33.3	874
차세대원전	5	-	-	-	1	20.0	200
양자기술	5	-	-	-	1	20.0	1,235
계	503	73	14.5	458	199	39.6	1,308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R&D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B3)	지원율 (B3/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4)	지원율 (B4/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50	75.8	432	9	13.6	31.6
바이오헬스	156	91	58.3	823	18	11.5	39.5
미래 모빌리티	91	59	64.8	928	12	13.2	33.8
친환경에너지	55	41	74.5	512	11	20.0	34.6
로봇	57	40	70.2	422	16	28.1	36.1
빅데이터·AI	35	27	77.1	555	7	20.0	30.8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8	38.1	304	5	23.8	32.6
우주항공·해양	12	5	41.7	462	1	8.3	45.0
차세대원전	5	3	60.0	270	-	-	-
양자기술	5	3	60.0	424	-	-	-
계	503	327	65.0	5,132	79	15.7	3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2.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계획안 현황

‘민관협력창업자육성’(2013~, 보조 및 출연)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5억 7,500만원(15.2%) 증액한 2,398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06,506	208,281	208,281	239,856	31,575	15.2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130,363	113,281	113,281	123,656	10,375	9.2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지원	11,143	20,000	20,000	24,200	4,200	21.0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43,000	53,000	53,000	60,000	7,000	13.2
유니콘 브릿지	22,000	22,000	22,000	32,000	10,000	45.5

□ 검토의견

(1) 수도권 운영사 편중 해소 필요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내역사업은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마케팅 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기술창업프로그램(TIPS)[91]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3억 7,500만원(9.2%) 증액한 1,236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음.

2026년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내역
123,656	○ 사업출연금(350-02): 123,656백만원 ①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650개사*100백만원=65,000백만원 ② 프리팁스: 65개사*100백만원=6,500백만원 ③ 포스트팁스: 65개사*360백만원=23,400백만원 ④ 글로벌팁스: 80개사*200백만원=16,000백만원 ⑤ 창업클러스터 운영: 팁스타운 및 창업존 운영 12,756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사인 TIPS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선(先)투자 후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매칭하여 R&D, 사업화, 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임.

91)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프로그램 사업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는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TIPS 선정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등 역할을 수행하는 TIPS 프로그램의 핵심 주체로서 투자재원 및 실적, 지원인프라, 프로그램 등 초기 기술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역량을 중심으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을 선정함.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운영사에 가점(3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운영사 선정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음.

수도권-비수도권 팁스 운영사 선정 현황(누적)

(단위: 개사,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개수(개사)	수도권	4	11	16	20	28	33	41	44	48	59	76	85	98
	비수도권	1	2	5	9	10	11	15	16	18	22	29	37	51
	합 계	5	13	21	29	38	44	56	60	66	81	105	122	149
비중(%)	수도권	80.0	84.6	76.2	69.0	73.7	75.0	73.2	73.3	72.7	72.8	72.4	69.7	65.8
	비수도권	20.0	15.4	23.8	31.0	26.3	25.0	26.8	26.7	27.3	27.2	27.6	30.3	34.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운영사 비중은 TIPS 시작연도인 2013년 20%에서 2016년 31.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5.0%~27.6%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2025년 현재 34.2%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은 여전히 65: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사 실적을 보면 투자액만 일부 차이를 보일 뿐 추천권 소진율 및 TIPS 최종선정률 모두 비수도권 운영사가 수도권 운영사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수도권-비수도권 팁스 추천 및 선정 실적(누적)

(단위: 개, %, %p, 백만원)

구 분	추천권 보유건수	추천권 소진건수	추천군 소진율	누적 투자액	기업당 투자액	팁스 선정건수	팁스 선정률
수도권(A)	3,946	3,260	82.6	658,049	247	2,669	81.9
비수도권(B)	1,470	1,276	86.8	228,784	211	1,085	85.0
차이(A-B)	2,476	1,984	△4.2	429,265	36	1,584	△3.1
합 계	5,416	4,536	83.8	886,833	458	3,754	82.7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 표와 같이 추천권 소진율은 비수도권 86.8%(1,470개 중 1,276개 소진), 수도권 82.6%(3,946개 중 3,260개 소진)로 비수도권이 4.2%p 높고, TIPS 최종선정률은 비수도권 85..0%(1,276개 중 1,085 선정), 수도권 81.9%(3,260개 중 2,669개 선정)로 역시 비수도권이 3.1%p 높으며, 기업당 투자액은 비수도권 2억 1,100만원, 수도권 2억 4,700만원으로 비수도권이 3,600만원 낮음.

이처럼 TIPS 실적에서 비수도권 운영사가 수도권 운영사보다 우수하거나 대등한 수준인데도 운영사 선정시 수도권 편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가점부여 외에 우수 지역기업 IR, 지역 스타트업-운영사 네트워킹, 권역별 상담채널 구축 등 비수도권 소재 운영사의 TIPS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후속 민간투자 및 회수 활성화 필요

TIPS는 운영사 엔젤투자에 매칭한 재정투입으로 벤처스타트업에 시드머니를 제공하는데, TIPS 사업의 최종목표는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유니콘기업을 배출하고 자금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구조를 조성하는 것임.

먼저, TIPS 선정기업의 후속 투자유치율은 아래와 같음.

팁스 후속 투자유치율 실적

(단위: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년차	-	-	53.3	79.5	67.1	68.2	66.8	76.6	79.2	92.3	70.0	59.4
2년차	-	33.3	56.4	59.5	47.1	47.3	61.3	60.8	58.3	59.0	49.8	43.1
1년차	0.0	15.4	20.3	28.2	11.2	22.7	22.4	25.3	28.0	24.4	27.5	12.7
평 균	0.0	24.4	43.3	55.7	41.8	46.1	50.2	54.2	55.2	58.6	49.1	38.4

주: 최근 3개년 선정기업이 해당년도 말까지 후속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비율 평균값(예시: 2025년 실적은 2023년(3년차), 2024년(2년차), 2025년(1년차)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비율 평균값을 의미) * '25년 실적의 경우 차년도 성과조사를 통해 집계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와 같이 2022년 58.6%까지 상승했던 후속 투자율은 2023년 49.1%, 2024년 38.4%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24년 실적 38.4%는 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으로서 TIPS 목표인 41.7%에 3.3%p 미달하는 수치임.

다음으로, 시드투자인 TIPS 이후 후속 투자라운드와 최종 엑시트 통과비율은 아래와 같음.

팁스 선정기업 후속 투자라운드 통과비율(누적)

(단위: %)

구 분	팁스선정	시리즈A (10억 이상~50억 미만)	시리즈B (50억 이상~100억미만)	시리즈C (100억 이상)	엑시트
기업수	3,754	1,261	620	364	127
통과율	100.0	33.6	16.5	9.7	3.4

주1: 투자라운드 통과비율은 팁스선정된 전체기업 중 다음 투자라운드에 진입한 비율임(예시: 팁스선정 누적기업 5,000개 중 시리즈 A 투자받은 누적기업이 1,000개면 시리즈 A 통과비율은 1,000/5,000=20%)

주2: 엑시트비율은 팁스선정된 전체기업 중 각 라운드 중 M&A 또는 IPO된 누적기업수(예시: 팁스선정 누적기업 5,000개 중 M&A된 누적기업이 100개, IPO 누적기업이 100개일 경우 엑시트비율은 200/5000= 4%)

주3: 투자라운드 구분의 경우 통용되는 투자유치 규모로 단계를 구분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되어 시드투자를 받은 3,754개 벤처스타트업이 시리즈A 라운드에 진입한 비율은 33.6%(1,261개), 시리즈B 16.5%(620개), 시리즈C 9.7%(364개)이고, 최종 엑시트(M&A, IPO 등) 3.4%임.

정리하면, 100개의 TIPS기업을 선정할 경우 엑시트까지 이루어지는 기업은 3개에 불과한 실정임.

팁스 후속 투자 및 엑시트 실적(연도별)

(단위: 억원, 건)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누적
투자금액	-	397	748	2,062	1,752	5,897	15,426	16,823	39,151	35,845	27,009	29,049	집계중	174,159
IPO	-	-	-	-	-	1	1	2	4	4	7	10	5	34
M&A	-	1	1	1	1	4	8	10	23	19	9	14	3	9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TIPS 사업 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누적 후속투자는 17조 4,159억원, IPO는 34건, M&A는 94건임.

팁스운영사의 역할은 창업기업 발굴 및 추전, 엔젤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M&A, IPO 등 후속관리까지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역량(운영사)을 활용하여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선별하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려는 TIPS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투자 이후 후속 민간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TIPS 운영사의 역할

○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창투사, LLC 등),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②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③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④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⑤ 창업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 진출 등)**

* 보육공간을 구비하고 있거나,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투자·기술개발 연구·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대학, 연구기관, 병원, AC, VC, 기업, 공공기관 등)를 협력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2025.9.16.

13.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5132-314)

□ 예산안 현황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2023~2031, 출연)은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사무공간, 바이오 연구장비·시설 등 집적형 인프라와 바이오 특화 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여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억 200만원(346.1%) 증액한 69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971	1,561	1,561	6,963	5,402	346.1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	-	-	5,208	5,208	순증
연구개발활동비등	971	1,561	1,561	1,755	194	12.4

□ 검토의견

(1) 본사업 지연에 따른 차질없는 장비운용체계 마련 필요

동 사업은 2022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92]한 이후 20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음. 2024년 총사업비 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2차례 조정을 거쳐 2025년 9월 현재 총사업비는 1,599억원[93]임. 연세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에서 건축을 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구축 및 R&D와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차별(3단계) 예산과 K-바이오랩허브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연구장비 24대(17종) 구축을 위한 비용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네트워킹 플랫폼(400백만원)
- 1식 × 400백만원 = 400백만원
※ ISP(2024.7.~11.) 수립 이후 플랫폼 구축 1~4단계 중 3단계 구축 예산
○ 사업단 운영 및 관리(1,355백만원)
- 인건비 600백만원 + 운영관리비 755백만원 = 1,355백만원
○ 연구장비 구축(5,208백만원)
- 24대(17종) × 평균 217백만원 = 5,20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재정리

92) B/C 0.71, AHP 0.575, 신약 개발은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므로, 의약바이오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속도 단축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인정

93)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초 총사업비는 2,725.5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1차 조정시 전체 사업비 중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만 총사업비 관리사업으로 등록함.

본 사업의 당초 계획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건물을 구축한 후 2026년부터 K-바이오랩허브를 개소하고 60개사를 입주시킬 예정이었으나, 건축을 담당하는 인천시의 건설타당성조사 결과 행정절차기간을 포함하여 구축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9년 2월까지로 변경되었음. 이후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를 통해 준공시기를 2027년 11월로 단축하였으나, 2025년 10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실시설계적정성 검토 및 조달청의 건축 실시설계적정성 검토가 지연되고, 건축 계약절차 소요기간 재검토,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준공이 2028년 하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건축 지연으로 인해 현재 K-바이오랩허브사업단이 인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중이고(임차료 연 3,5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부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건축 완료 시까지 시범사업으로 사전인큐베이팅사업(인천시비 100%)을 추진중임.

사전인큐베이팅사업은 K-바이오 랩허브 본사업 운영('28년) 전에 유망 의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사전 발굴하여 본사업 진입·연계를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사무·실험공간 제공, 오픈이노베이션(OI) 매칭, 멘토링, 네트워킹, 외부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현재 39개사가 선발되어 이중 8개사는 K-바이오 랩허브 부지 인근 임시건물에 입주해 있으며(입주공간 임차비 인천시 부담), 90개사까지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

사전인큐베이팅사업 개요

○ **(사전 인큐베이팅 프로세스)** K-바이오 랩허브 본사업 운영('28년) 전, 유망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사전 발굴하여 본사업 진입·연계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인천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100%로 운영

- **(지원내용)** 사무·실험공간 제공, 오픈이노베이션(OI) 매칭, 멘토링, 네트워킹, 외부투자 연계 등 지원
- **(사업기간)** '25.3.~'27.12.
- **(사업비)** 652백만원('25년 223백만원 / '26년 214.4백만원 / '27년 214.4백만원)
- **(지원규모)** 의약바이오 창업기업 39개사(입주지원 8개사)

* 입주기업 8개사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간('25~'27) 입주로 모집·선발하여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결격사유나 퇴거의사가 없는 한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음

** 멤버십 기업은 1차년도('25, 현재 모집완료, 입주기업 포함) 39개사이며, 2~3차년도에도 매년 30개사 내외로 추가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3개년 90개사 이상 선정·운영 계획)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구축되는 17종 24대의 장비는 현재 시범사업 기업 8개사가 입주해 있는 K-바이오랩허브 부지 인근 임시건물에 설치된 이후 2028년 본건물이 완공되면 이전 구축할 예정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6년 17종 24대의 장비를 도입하여 사전인큐베이팅 기업에게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나, 사전인큐베이팅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기획사업이므로, 장비운용체계 구비, 임시건물 내 장비 작동 상 안정성 및 본사업 개시 후 장비이전 계획 등이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K-바이오랩허브 건축 준공시기 지연에 따라 본사업이 지연

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본사업 추진 관련 추가 도입장비는 당초 장비 도입계획, 변경된 건축일정, 사전인큐베이팅 사업 성과 및 연구장비 기술력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일정 및 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한 구축 계획 장비 목록

(단위:백만원)

장비명(영문명)		단가	수량(개)	총금액
1	**형광현미경** (Automated Fluorescence Microscope)	50	1	50
2	**고속원심분리기** (High Speed Centrifuge)	100	2	200
3	**초저온 냉동고** (ULT Freezer)	17	5	86
4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 (Microplate Reader)	50	1	50
5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시스템** (Real-time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system)	100	2	200
6	**동적 광산란 광도계** (Dynamic light scattering)	200	1	200
7	**고진공 적외선 분광계& 현미경이미지시스템** (FT-IR Micrscope with imaging system)	372	1	372
8	**유세포 분리기** (Flow Cytometry Cell Sorter)	325	1	325
9	**유세포 분석기** (Flow Cytometry Cell Analyzer)	325	1	325
10	**공초점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600	1	600
11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사중극자-비행시간 질량분석기** (LC-Q-Tof)	700	1	700
12	**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100	2	200
13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기**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er)	400	1	400
14	**다중 분석 미량시료 분석기** (Multi-Analysis Microvolume Analyzer)	200	1	200
15	**홀로토모그래피 시스템** (Holotomography system)	500	1	500
16	**디지털 중합효소 연쇄반응기** (Digital PCR System)	200	1	200
17	**스피닝 디스크 공초점 현미경** (Spinning Disk Confocal Microscope)	600	1	600
합 계		4,839	24	5,2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4. 벤처캐피탈선진화(5231-302)

□ 계획안 현황

‘벤처캐피탈선진화’(2004~, 직접수행, 민간위탁, 출연)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상담·IR 개최, 대학(원)생 투자교육 및 국내외 투자경진대회 참가지원, 벤처투자정보센터 운영, 펀드운용사 평가·검사, M&A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2,300만원(40.2%) 증액한 49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벤처캐피탈선진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벤처캐피탈선진화	2,786	3,533	3,533	4,956	1,423	40.2
기업승계 M&A 지원	0	0	0	850	850	순증
벤처투자활성화	0	702	702	875	173	24.6
벤처투자정보센터	470	650	650	750	100	15.4
펀드운용사 평가 검사	124	124	124	124	0	0.0
M&A활성화 지원	617	617	617	917	300	48.6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1,575	1,440	1,440	1,400	0	0.0

□ 검토의견

(1) 기업승계 M&A 지원: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기업승계 M&A 지원’ 내역사업은 CEO 고령화[94]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M&A 방식 제3자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인식확산(간담회, 권역별 설명회), 수요발굴(기초·종합 컨설팅), 매칭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출연금 8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업승계 M&A 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내역
850	○ **사업출연금(350-02): 850백만원** ① 간담회 등 인식확산: 50백만*3회=150백만원 ② 수요발굴: 350백만원 - 기초컨설팅: 100개사*0.7백만=70백만원 - 종합컨설팅: 40개사*7백만=280백만원 * 기업 자부담 30%제외하고 산정 ③ 매칭인프라 구축: 350백만원 * 기업승계 M&A 수요기업 및 인수기업 매칭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2023년 한국기업 M&A 거래건수는 1,564건, 거래규모는 143.2조원이고, 이중 중소·벤처기업 M&A 거래건수는 1,171건, 거래규모는 39.4조원임.

94)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CEO 중 36.8%가 60세 이상임.

한국기업 M&A 연도별 동향

(단위: 건, 조원)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규모	한국기업 전체	48.2	58.1	36.9	143.2
	중소·벤처기업	12.8	13.1	13.5	39.4
건수	한국기업 전체	524	576	464	1,564
	중소·벤처기업	390	425	356	1,1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2023년 M&A 현황조사」, 2024.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본시장연구원 추정 후계자 부재율(28.6%)[95]을 기준으로 기업승계 곤란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은 13,000개사, 고용규모는 260,000명으로 추산되어 축적된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가 CEO 은퇴 후 폐업으로 사장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 등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친족승계 곤란 중소기업의 M&A 방식 제3자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다만, 출연금은 그 특성상 다른 보조금에 비하여 집행상 탄력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96] 「국가재정법」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출연금 지원시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며[97],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출연금 편성을 위한 타당성 기준으로 법령상 출연

95) 자본시장연구원,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방안」, 24.11.

96) 사후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보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후정산하여 국고반환하는 반면, 출연금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처리하고 비연구개발사업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름.

97)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근거 및 기관명이 명백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도 기업승계 M&A 지원을 기금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98] '기업승계 M&A 지원' 내역사업의 출연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99], 동법 제13조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은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므로 동 사업 출연금을 M&A 지원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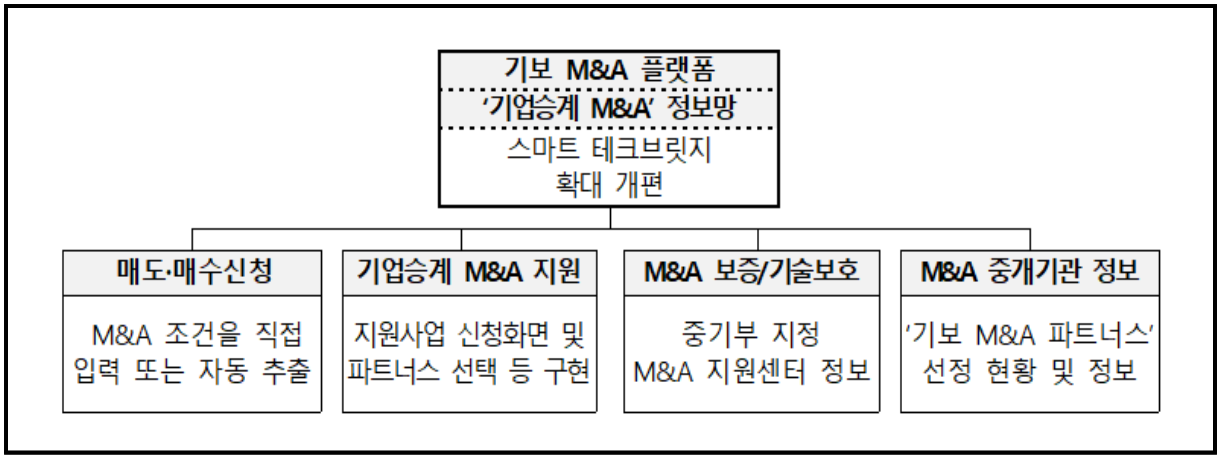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M&A 희망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신청, 지원사업 운영, M&A 보증 및 기술보호 신청까지 원스톱 지원하

---

98)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99)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를 출연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기술거래 및 사업화 관련 규정으로 동사업 출연을 위한 직접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100)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는 '기업승계 M&A 전용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임.

기업승계 M&A 전용 플랫폼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내년 사업설명회 및 권역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업승계 M&A 인식확산, 수요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면 민간 M&A 기관(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101]이 기업승계 M&A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수행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향후 동 사업 출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M&A 지원 사업비 출연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비 출연을 위한 별도계정을 설치하는 등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1)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엘지 등 15개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1.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 예산안 현황

‘지식산업센터(자율)’(2012~, 보조)은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억 1,800만원(10.6%) 증액한 948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지식산업센터(자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지식산업센터(자율)	63,770	85,699	85,699	94,817	9,118	10.6

□ 검토의견

(1)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012년 사업시작 이후 72개[102]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추진되었고,

건립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는 23개, 건립 중단 센터는 1개이며, 현재 건립이 진행중인 센터는 49개(2026년 신규 추진 5개 센터 포함)임.

지식산업센터건립 추진 현황

구분	1차 ('12~'16)	2차 ('15~'18)	3차 ('16~'19)	4차 ('17~'20)	5차 ('18~'21)	6차 ('19~'22)	7차 ('20~'23)	8차 ('21~'25)	9차 ('22~'26)	10차 ('23~'27)	11차 ('24~'28)	12차 ('25~'29)	13차 ('26~'30)
지역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대구(수성) 대전(동구) 경남(진주)	대구(달서) 충북(청주) 전북(전주)	울산(남구) 전북(전주) 경북(포항)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강원(춘천) 전북(남원) 전남(나주) 전남(영광) 경남(창원)	부산(강서) 대구(북구) 광주(북구) 충북(제천) 충남(홍성) 전북(전주) 전남(광양)	충북(충주) 충북(영동) 충남(아산) 충남(서천) 전남(화순) 경북(경산) 세종 제주	광주(남구) 강원(강릉) 충남(금산) 전북(김제) 전북(순창) 경북(영천) 경남(김해)	광주(북구) 울산(울주)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남(밀양)	광주(광산) 충남(공주) 대전(중구) 충남(보령) 대전(유성) 전북(익산) 충북(청주) 전남(목포) 충북(보은) 경남(양산) 충북(증평)	부산(서구) 부산(사상) 강원(동해) 충남(계룡) 전북(전주) 경북(안동) 경북(예천) 경남(사천)	강원(삼척) 충남(천안) 전북(정읍) 전남(강진) 경북(포항)
진행상황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건립중	운영중 공사중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공사중 설계중	공사중 설계중	설계중	설계 준비	설계 준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진행 상황별로 공사비, 설계비 등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지식산업센터 진행 상황별 건립비 반영
- **7차 건립비** : 부산(강서) 746백만원
- **8차 건립비** : 충남(아산) 6,577백만원, 경북(경산) 6,100백만원
- **9차 건립비** : 광주(남구) 8,550백만원, 강원(강릉) 4,423백만원, 충남(금산) 2,246백만원, 전북(김제) 1,875백만원, 경북(영천) 5,000백만원, 경남(김해) 6,186백만원

102) 72개 센터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의 제주센터(1개), 세종계정의 세종센터(1개)가 포함됨.

- **10차 건립비**: 광주(북구) 6,000백만원, 울산(울주) 1,500백만원, 충남(천안) 400백만원, 전남(순천) 3,000백만원, 경남(밀양) 6,605백만원
- **11차 건립비**: 대전(유성) 1,161백만원, 대전(중구) 4,300백만원, 충북(청주) 5,400백만원, 충북(보은) 4,610백만원, 충북(증평) 2,200백만원, 충남(공주) 1,000백만원, 충남(보령) 1,500백만원, 전북(익산) 3,000백만원, 전남(목포) 3,000백만원, 경남(양산) 1,840백만원
- **12차 건립비**: 강원(동해) 500백만원, 전북(전주) 1,500백만원, 경북(안동) 4,250백만원, 경북(예천) 500백만원, 경남(사천) 348백만원
- **13차 건립비** : 전북(정읍) 5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재정리

동 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2021년, 2023년, 2024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

2025년 8월 현재 실집행률은 39.9%로, 각 지자체에서 2024년 일정 지연으로 발생한 2024년 국비 예산 이월액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먼저 사용한 후 2025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지식산업센터(자율)사업 실집행 현황 (2025.8.기준)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현액 (C=A+B)	실집행액 (D)	실집행률 (D/C)
	본예산	추경						
지식산업센터 (자율)	85,699	85,699	54,584	54,584	82,487	137,071	54,625	39.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지식산업센터별로 2025년 8월 현재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5년 사업이 진행 중인 29개 지식산업센터 중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지식산업센터가 25개(86.2%)이고, 실집행률이 10% 이하인 지식산업센터도 13개(44.8%)에 이르고 있음.

2026년 예산 반영 지식산업센터별 2025년 실집행현황(2025.8.)

(단위: 백만원)

차수	센터명	2025. 8.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진행 단계	2026 예산안	
								금액	비고
7차 ('20~)	부산 (강서)	6,714	2,904	9,618	7,083	73.6	공사중	746	26.4월 준공 (공정 60%)
8차 ('21~)	충남 (아산)	4,635	3,726	8,361	3,696	44.2	공사중	6,577	26.12월 준공 (공정 70%)
	경북 (경산)	4,000	2,318	6,318	2,318	36.7	공사중	6,100	26.12월 준공 (공정 25%)
9차 ('22~)	광주 (남구)	2,700	3,417	6,117	3,135	54.2	공사중	8,550	26.12월 준공 (공정 40%)
	강원 (강릉)	4,627	6,427	11,054	3,319	30.0	공사중	4,423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충남 (금산)	2,650	4,851	7,501	-	-	공사중	2,246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전북 (김제)	6,500	5,139	11,639	4,026	34.6	공사중	1,875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경북 (영천)	2,500	-	2,500	-	-	착공 예정	5,000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경남 (김해)	6,494	448	6,942	3,854	55.5	공사중	6,186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10차 ('23~)	광주 (북구)	3,000	0	4,137	364	8.8	착공 예정	6,000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울산 (울주)	-	1,710	1,710	19	1.1	설계중	1,5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충남 (천안)	600	979	1,579	129	8.2	설계중	4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전남 (순천)	3,751	656	4,407	466	10.6	설계중	3,000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경남 (밀양)	4,000	1,000	5,000	1,015	20.3	공사중	6,605	관급자재, 기성금 지급
11차 ('24~)	대전 (중구)	1,250	1,000	2,250	686	30.5	설계중	4,3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대전 (유성)	3,500	1,000	4,500	453	10.1	설계중	1,161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충북 (청주)	1,000	905	1,905	345	18.1	설계중	5,4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충북 (보은)	2,375	477	2,852	59	2.1	설계중	4,61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충북 (증평)	1,000	600	1,600	-	-	설계중	2,2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충남 (공주)	-	1,000	1,000	650	65.0	설계중	1,0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충남	-	983	983	298	30.3	설계중	1,500	설계완료후

차수	센터명	2025. 8.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진행 단계	2026 예산안	
								금액	비고
	(보령)								공사 선급금지급
	전북 (익산)	750	1,000	1,750	101	5.8	설계중	3,0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전남 (목포)	700	-	700	-	-	설계중	3,0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경남 (양산)	706	550	1,256	485	38.6	설계중	1,84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12차 ('25~)	강원 (동해)	800	-	800	-	-	설계중	500	설계비 등
	전북 (전주)	1,000	-	1,000	-	-	설계중	1,50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경북 (안동)	1,000	-	1,000	-	-	설계중	4,250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경북 (예천)	510	-	510	222	43.5	설계중	500	설계비 등
	경남 (사천)	1,000	-	1,000	-	-	설계중	348	설계완료후 공사 선급금지급
13차 ('26~)	전북 (정읍)	-	-	-	-	-	-	500	설계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025년 8월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지식산업센터의 실집행 저조 사유는 지식산업센터별로 다르나, 부지변동, 건축심의 지연 및 토지 수용으로 인한 설계지연 등 건축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2025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

2025년 실집행률 50% 미만 센터의 집행률 부진사유

차수	센터명	실집행 부진 사유(2025.8월말)
8차	충남 아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25.4월 공사 착공, 현 공정률 70%(기성금 지급 미도래) ○ 26.12월 공사 준공 예정
9차	강릉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25.2 공사 착공, 현 공정률 5%(기성금 지급 미도래)
9차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 23년 실시설계(23.12.~25.1) ○ 25.9월 공사 착공, 현 공정률 5%
10차	광주 북구 AI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 실시설계(23.12.~25.6) * 당초 설계기간보다 1년 연장되어 집행 저조 ○ 공사 착공예정
10차	울산 울주 탄소중립 에너지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 부지변동 등으로 설계지연 ○ 25년 설계 완료 및 착공예정, 집행률 저조로 감액편성
10차	천안 지식산업센터	○ 25년 설계완료 및 착공 예정, 집행률 저조로 감액편성
10차	순천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 24년 실시설계(24.1.~25.6) *당초 설계기간보다 지연되어 착공 등 지연

차수	센터명	실집행 부진 사유(2025.8월말)
		○ 공사 착공예정
10차	밀양 지식산업센터	○ 실시설계 지연 ○ 25년 공사 착공, 현 공정률 5%
11차	대전 중구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건축심의 지연 및 토지 수용 등으로 설계지연 ○ 집행률 저조로 감액편성
11차	청주 지식산업센터	○ 설계 지연으로 집행 저조 ○ 26년 공사 착공
11차	보은 지식산업센터	○ 24.7월 실시설계(24.7~25.5)로 일부 선금 지급 ○ 25.12월 공사 착공예정
11차	보령 지식산업센터	○ 실시설계('25.3~25.12) ○ 26년 공사 착공
11차	익산 지식산업센터	○ 실시설계('25.9~26.6) ○ 26년 공사 착공
11차	양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실시설계('25.3~26.3) ○ 26년 공사 착공
12차	예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건축심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지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 편성시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2025년도 실집행 현황 및 각 지식산업센터별 공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견임.

다만, 동 사업은 집행률 부진 및 차년도 이월 과다 등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를 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103]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03) 참고로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은 자율편성사업의 편성 절차와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 중 자율적으로 예산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각 부처는 지자체의 신청금액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의견만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요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되 사업내역 조정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유지해야 함.

<지역지원계정>

2.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3339-310)

□ 예산안 현황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2020~, 출연)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의 실증 테스트 및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1억 6,500만원(60.1%) 증액한 164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4,961	10,261	10,261	16,426	6,165	60.1
암모니아 벙커링	-	-	-	1,070	1,070	순증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	-	-	1,830	1,830	순증
글로벌혁신특구 실증기반조성(R&D)	-	8,000	8,000	13,526	5,526	69.1

□ 검토의견

(1) 구축장비 활용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 지원을 위해 실증에 필요한 임상시험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 5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 ①「제10차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②「제10차 전북 건강기능성식품 특구」의 규제특례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R&D에 필요한 공통 인프라 구축 예산, ③2024년에 1차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된 강원·충북·전남·부산 등 4개 특구와 2025년 2차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된 대전·대구·경남 등 3개 특구에 대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구축 비용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암모니아 벙커링 인프라 구축(울산): 암모니아 TTS 벙커링 기자재 모사 플랫폼 구축 등(1,070백만원)

- 1식 × 1,070백만원 × 12/12개월 = 1,070백만원

※ 2년차 사업(2026~2027, 총사업비 42.8억원, 국비:지방비등=5:5) 중 1차년도분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전북):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의 지역 공공 인프라 시설·장비 개보수를 통해 공유공장시스템으로 전환(1,830백만원)

- 1식 × 1,830백만원 × 12/12개월 = 1,830백만원

※ 단년도사업(2026, 총사업비 36.6억원, 국비:지방비등=5:5) 중 1차년도분

○글로벌혁신특구 실증기반조성(R&D): 글로벌혁신특구의 실증 테스트 및 임

상시험 인프라 구축(13,526백만원)

- (1차 특구) 1,881백만원 × 4개특구 = 7,526백만원
- (2차 특구) 2,000백만원 × 3개특구 = 6,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한 실증장비의 구축 장소는 테크노파크, 산업연구원, 국립대학, 가스안전공사 등 해당 규제자유특구 내의 공공기관이고, 규제자유특구 내의 특구사업자에게만 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구사업자로부터 장비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음. 특구의 지정기간 만료 또는 지정 해제의 경우에는 특구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장비와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됨.

2020년 동 사업 시작 이후 구축한 장비의 가동률[104]을 살펴보면, 전체 구축 장비 124대의 취득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평균 가동률은 45.8%이고, 취득 이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25.8%인 32대, 장비가동률이 0%인 경우도 전체의 8.9%인 11대에 이르는 등 구축된 장비의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04) 장비가동률(%) = 장비 가동시간 / 장비 가용시간 × 100
 ○ 장비 가동시간 : 장비사용을 위해 수행한 실질가동시간과 보조가동시간의 합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 장비 가용시간 : 근무일수 × 8시간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 장비 가용기간이 1년인 경우 장비 가용시간은 2,000시간(250일 × 8시간)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전체 장비 가동률 현황

(단위 : 대, %)

구분	10% 미만	10~30%	30~50%	50~70%	70~100%	100% 초과	합계	가동률 평균
장비 대수	32	24	11	30	16	11	124	-
비율	25.8	19.4	8.9	24.2	12.9	8.9	100	4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축장비 가동률의 저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124대 전체 장비의 장비가동률 45.8%는 국가 전체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장비가동률 3년 평균 대비 5% 높은 수준이지만, 장비가동률 10% 미만이 25.8%에 이르는 이유는 구축장비 대부분이 실증사업과 특구사업자에게만 사용되고 실증특례의 부대조건 이행 등으로 실증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국가 전체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장비가동률

구분		2021	2022	2023	3개년 평균
장비가동률	국가 전체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비영리 연구기관)	40.0	41.7	40.8	40.8

주: 2022~2024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 집중지원을 위해 특구 내에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실증특례 기간 중에는 특구사업자만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제자유특구 내 구축된 실증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105]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3D 스캐너, 스펙트럼분석기 등 범용 장비의 경우에는 특구사업자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특구사업자 이외에게도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등 장비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06].

또한, 특구사업자의 특례 실증 부대조건의 이행기한 설정 및 점검 등 규제자유특구의 사업관리에도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05) [별표 1] 단독활용 시설장비 판정기준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시설장비
3. 특수목적용 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시설장비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장비
5.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완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시설장비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장비
7. 초고감도 정밀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장비
8.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

106)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증특례 지원이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목적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특구지정 기간 중에는 특구사업자에게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산업기반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26년 운용규모는 2025년 11조 5,595억원 대비 2,841억원(2.5%) 증가한 11조 8,435억원으로 계획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변경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559,453	12,594,453	11,843,528	284,075	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융자 원리금 회수액,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한 민간차입금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본사업, 경상사업 등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수입 계획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 계획안은 11조 8,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1억원(2.5%)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수정			%
□ 자체수입	5,486,742	5,486,742	5,452,876	△33,866	△0.6
▪ 융자금이자수입	623,146	623,146	646,618	23,472	3.8
▪ 기타재산수입	9,665	9,665	11,867	2,202	22.8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술료)	30,710	30,710	30,685	△25	△0.1
▪ 기타잡수입 (용역판매)	11,172	11,172	7,480	△3,692	△33.0
▪ 융자원금 회수	4,812,049	4,812,049	4,756,226	△55,823	△1.2
□ 정부 내부수입	1,540,561	1,875,561	2,205,864	665,303	43.2
▪ 일반회계 전입금	1,457,941	1,792,941	2,122,556	664,615	45.6
▪ 복권기금 전입금	82,620	82,620	83,308	688	0.8
▪ 공자기금 예수금	-	-	-	-	-
□ 차입금	4,523,150	5,223,150	4,175,788	△347,362	△7.7
□ 여유자금 회수 (예치금)	9,000	9,000	9,000	-	-
합 계	11,559,453	12,594,453	11,843,528	284,075	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지출 계획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 계획안은 11조 8,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1억원(2.5%)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 사업비	5,335,234	6,370,234	5,619,005	283,771	5.3
▪ 융자지출	4,529,460	5,229,460	4,125,788	△403,672	△8.9
▪ 경상지출	284,114	319,114	368,230	84,116	29.6
▪ 자본지출	521,660	821,660	1,124,987	603,327	115.7
□ 기금운영비	141,578	141,578	151,732	10,154	7.2
▪ 인건비	114,606	114,606	123,958	9,352	8.2
▪ 기본경비	26,972	26,972	27,774	802	3.0
□ 정부 내부지출	30,387	30,387	-	△30,387	순감
▪ 공자기금 예수원금	30,000	30,000	-	△30,000	순감
▪ 공자기금 예수이자	387	387	-	△387	순감
□ 차입금 원금상환	5,300,000	5,300,000	5,300,000	-	-
□ 차입금 이자상환	752,254	752,254	772,791	20,537	2.7
합 계	11,559,453	12,594,453	11,843,528	284,075	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차입금 원금상환 및 정부 내부지출 등을 제외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 계획안은[107] 전년 대비 3,145억원(5.0%) 증가한 6조 5,435억원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 계획안(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수정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229,066	7,264,066	6,543,528	314,462	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7) 지출 총계(11조 8,435억원)에서 정부 내부지출(-) 및 차입금 원금상환(5조 3,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Ⅱ. 검토의견

1.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 계획안 현황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2006~, 직접)은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자금 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통한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각 정책자금 내에 개별적으로 편성되던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통합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5억 1,400만원(4.6%) 증액한 791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458	75,588	75,588	79,102	3,514	4.6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	599	58,496	58,496	61,803	3,307	5.7
기업진단	5,170	4,893	4,893	4,893	-	-
정책자금성과창출지원	1,288	8,798	8,798	9,005	207	2.6
시설투자촉진	3,401	3,401	3,401	3,40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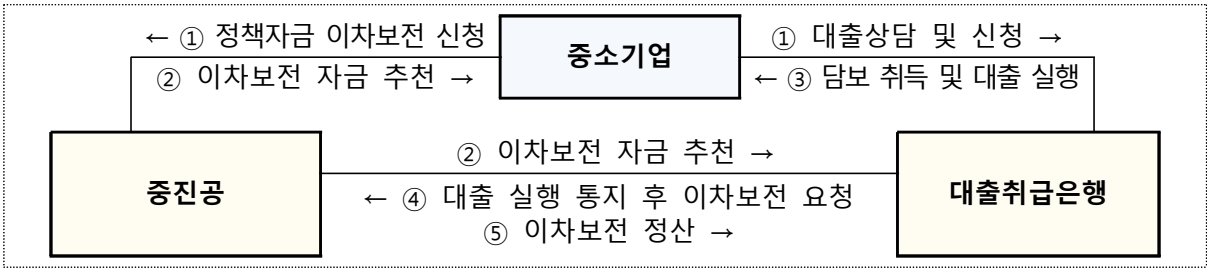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이차보전 사업의 직접융자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정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기업이 은행과 대출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 및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은행에서 대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차보전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됨.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혁신성장지원 자금),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저탄소·친환경 제조전환 추진 기

업(Net-Zero 유망기업 자금) 등이 지원대상이고, 연 최대 3.0%의 이자를 3년(만기일시상환)간 지원함.[108]

2026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이차보전금은 612억 300만원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578억 9,600만원 대비 33억 700만원(5.7%) 증액되었고,[109] 기존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556억 9,800만원과 신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55억 500만원으로 구성됨. 그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이차보전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 **신성장기반자금**: 261억 3,500만원(기존 230억 7,500만원 + 신규 30억 6,000만원)
('23년 기존) 5,134억원 × 0.5(평잔) × 3% + ('24, '25년 기존) 5,125억원 × 3% + ('26년 신규) 2,040억원 × 0.5(평잔) × 3%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85억 8,500만원(기존 161억 4,000만원 + 신규 24억 4,500만원)
('23년 기존) 2,240억원 × 0.5(평잔) × 3%+ ('24, '25년 기존) 4,260억원 × 3% + ('26년 신규) 1,630억원 × 0.5(평잔) × 3%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64억 8,300만원(전액 기존)
('24, '25년 기존) 2,997억원 × 5.5%

2026년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신규자금 규모는 3,670억원으로 2025년 공급규모인 6,027억원에 비해 2,357억원(39.1%) 감소한 수준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여력을 확보[110]하고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108)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이차보전은 5.5%를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지원하나, 2026년부터 신규지원은 종료됨.
109) 이 외에 시스템 유지보수와 외부평가수당, 실사여비, 콜센터 용역비 등 이차보전 운영지원 경비가 6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화 기조와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하여 향후에도 이차보전 사업을 직접융자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융자로의 자금지원 방식 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첫째, 이차보전은 기본적으로 담보를 보유하는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자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소기업 등 담보가 없거나 업력이 짧아 신용이 취약한 반면,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융자 사업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한정된 재정여건 내에서 이차보전 사업보다는 직접융자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정책자금의 사업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중소기업들이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려운 고금리 상황이 완화되면 이차보전 사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0)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직접융자 사업 대비 단기적으로 직접 투입되는 재정규모가 작음.

둘째, 직접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체 채권발행(중진채)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 회수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금공급이 가능하지만, 이차보전 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정책자금 평균금리와 중진채 조달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평균금리는 중진채 누적평균 조달금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차액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임. 그런데 정책자금 금리와 중진채 조달금리 간 차이는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3.0%p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중진채 조달금리 및 정책자금 평균금리 현황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2Q
정책자금 평균금리	2.02	2.07	2.69	2.67	2.96
중진채 누적평균 조달금리	1.67	2.26	2.73	2.96	2.99
중진채 당해연도 발행금리	1.80	3.69	3.92	3.38	2.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만, 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부실책임을 자금을 공급한 시중은행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사업과 달리 직접융자 사업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진기금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의 일부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담보나 업력, 신용도가 부족하여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시장실패(정보의 비대칭 및 자본시장의 불완전성)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과거 2013년에도 정부지출 절감을 통한 통합수지 개선을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을 도입[111]하였으나,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민간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시장실패 영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자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개시 1년만에 폐지되었던 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차보전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들이 적용받는 실질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2025년 9월 잔액기준 중소기업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은행별로 3.74 ~ 4.97% 수준[112]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들이 이차보전 전에 적용받는 평균 대

111)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에 대하여 2.0~3.0%p의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75억원 규모로 이차보전 예산이 편성되었음.
112)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조회 기준

출금리인 5.00%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없이 시중은행에서 시장의 평균적인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이차보전 지원 이후 각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평균 2.03%로 시장금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 금리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0.23%의 금리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차보전 지원기업의 실질 부담금리 현황

('25.3Q 기준)

구분	대출금리(%)	이차보전율(%p)	실질 기업부담금리(%)
■ 신성장기반자금	4.89	2.64	2.25
혁신성장지원	4.88	2.54	2.34
제조현장스마트화	4.93	2.77	2.15
Net-Zero 유망기업	4.80	2.87	1.92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03	3.00	2.03
수출기업 글로벌화	5.03	3.00	2.03
개발기술제외 전체	4.95	2.81	2.15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5.60	5.36	0.23
개발기술사업화	5.60	5.36	0.23
전체	5.00	2.97	2.0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 신성장기반자금(융자)(1261-301)

□ 계획안 현황

‘신성장기반자금(융자)’(1979~, 융자)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와 같은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 ‘스케일업금융’ 등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000억원(△15.3%) 감액한 1조 1,11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신성장기반자금(융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508,327	1,311,110	1,311,110	1,111,110	△200,000	△15.3
스케일업금융	100,000	60,000	60,000	60,000	-	-
혁신성장지원	835,692	690,750	690,750	540,750	△150,000	△21.7
제조현장스마트화	476,041	466,610	466,610	416,610	△50,000	△10.7
Net-Zero 유망기업	96,593	93,750	93,750	93,750	-	-

□ 검토의견

(1)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철저한 리스크 및 수익률 관리 필요

동 세부사업 중 ‘스케일업 금융’ 내역사업은 자체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나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6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토대로 1,800~2,000억원 수준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임.

‘스케일업금융’은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113]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114]을 발행하여 민간투자자 및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 이 경우 민간투자자의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인수[115]로 재정지원금액보다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임.[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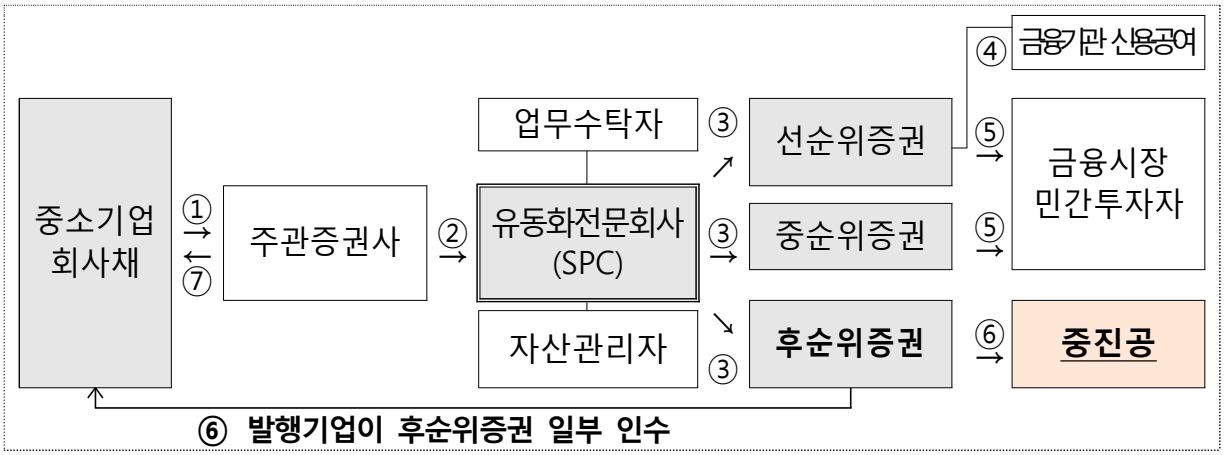
113) 국내 공모 회사채시장은 A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지닌 채권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투자기준으로 인하여 그 이하 등급의 신용도를 지닌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보증 공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이에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것임.

114)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Primary CBO)라고 하고, 이미 발행된 채권을 기초로 하는 유통시장 CBO를 S-CBO(Secondary CBO)라고 함. ‘스케일업금융’은 이중 P-CBO(Primary CBO)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115) 선순위증권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중순위증권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자산운용사 등이 주요 구매자임.

116)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후순위채권 인수, 하자담보책임, 신용공여약정 등

스케일업 금융(P-CBO) 발행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러한 지원방식은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조달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증권을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해당 부실을 대부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동 사업을 통해 발행된 P-CBO의 발행연도별 부실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발행분의 부실률은 1.15% 수준이었으나 2021년 4.08%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그리고 2022년 발행분과 그 이후 발행분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만기 이후 재투자 수익을 인식하고 청산과정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최종 부실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2021년 발행분의 부실률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117]

발행연도별 P-CBO 부실률 현황

(단위: 억원)

발행 연도	발행금액 (A)	후순위 인수액(A′)	후순위손익 (B)	발행액 부실률 (C=B/A)	후순위 부실률 (D=B/A′)
2019	3,536	1,000	△41	(3년) 1.15%	(3년) 4.08%
2020	3,506	974	△77	(3년) 2.20%	(3년) 7.93%
2021	2,603	700	△125	(3년) 4.80%	(3년) 17.86%
2022	1,882.3	600	△235	(3년) 12.46%	(3년) 39.16%
2023	1,860.4	600	△200	(2년) 10.74%	(2년) 33.33%
2024	3,234.7	1,000	△53	(1년) 1.62%	(1년) 5.3%

주: 2022년 이후 발행분은 만기도래 전으로, 재투자수입과 청산과정의 부실채권 매각 수입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는 사업 초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분에는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신용도가 높은 산금채[118]와 중금채[119]를 일정부분 포함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산금채와 중금채를 채권 구성내역에서 제외하고 신용도가 B- 등급인 중소기업 회사채의 차환 발행을 지원한 점과 고

117) 2024년도 발행분의 경우 발행 이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하지 않아 부실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118) 산업금융채권으로 기간산업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함.
119)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의미함.

금리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대내외 산업환경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됨.

발행연도별 채권 구성내역

(단위: 억원)

발행연도	산금채	중금채	회사채					
	AAA		BB+	BB0	BB-	B+	B0	B-
2019	7.6% (270)	2.8% (100)	0.8% (30)	4.1% (145)	40.2% (1,422)	39.3% (1,389)	5.1% (180)	-
2020	-	12.8% (450)	-	3.8% (133)	17.2% (604)	66.1% (2,319)	-	-
2021	8.8% (230)	-	-	-	23.3% (607)	67.8% (1,766)	-	-
2022	-	-	-	-	22.9% (430.2)	69.7% (1,312)	6.2% (116.1)	1.3% (24)
2023	-	-	-	-	12.5% (232.8)	75.9% (1,412.4)	8.8% (163.1)	2.8% (52.2)
2024	-	-	1.9% (60)	-	13.0% (421.6)	82.6% (2,672.5)	2.1% (68.6)	0.4% (11.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중진기금은 P-CBO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발행액의 약 30% 규모로 후순위채를 인수하고 있어 P-CBO 전체 부실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유동화증권의 부실률이 약간 상승하더라도 후순위채의 부실률은 급증할 수 있는 구조임. 예를 들어, 중진기금은 2022년 전체 P-CBO 발행액 1,882억 3,000만원 중에서 후순위채 600억원을 인수하였으나 현재까지 235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부실을 모두 후순위채에서 부담함에 따라 사고율이 39.16%에 달하고 있음.[120)]

따라서 향후 P-CBO의 부실률이 상승하는 경우, 과거(2000~2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P-CBO 발행을 지원하였으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던 사례[121]와 같이 중진기금이 감당해야하는 부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발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사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스케일업 금융 사업의 부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스케일업 금융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 현황

구분	시기	주요내용
사전리스크 관리	발행전	❶ 민간(증권사・은행・VC 등 참여) 선별역량 활용한 기업선정 강화
		❷ 중점지원분야 지원 강화 - 혁신성장, 초격차·신산업 분야,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등 중점 지원
		❸ 정책대상 명확화 : (~'24) 중소기업 → ('25) 중기업
		❹ 단기 신용위험 모형(FCR) 활용 상환능력 평가
	발행시	❺ 후순위증권 신용보강(주관증권사) 및 후순위증권 인수분담(발행기업)
		❻ 만기확대(3년→5년)를 통한 발행기업의 상환부담 완화
사후리스크 관리	발행후	❼ 민간 전문 자산관리사 및 회생법원을 통한 안정적 사후관리 체계구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1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만기 이후 청산과정에서 재투자수익을 인식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함에 따라 실제 부실률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21) 과거(2000~2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P-CBO 발행을 지원하였으나, 총 인수한 후순위채 5,335억원 중 2,77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률이 52.0%에 달하였던 사례가 있음.

특히,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행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증권사·은행·VC가 참여하여 민간의 선별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선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발행기업 선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증권사는 후순위증권 신용보강을 통해 손실을 분담[122]하는 한편, 은행은 선순위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약정을 체결[123]하여 평가와 선정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주관증권사가 후순위증권 신용보강을 통해 부담하는 손실의 규모가 주관수수료 수입 대비 많지 않다는 점(2025년 유동화증권 2,000억원 발행에 대한 주관수수료 5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수준), 선순위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는 은행의 경우 사업 구조상 선순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기업들에 대한 평가와 선발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최근 2년간 P-CBO 채권 발행시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매입하는 선순위 채권의 경우 3.3~4.5%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에서 주로 매입하는 중순위 채권의 수익률은 6.6~11.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122) 주관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SPC에 납입하고, 해당 금원의 지급을 후순위 유동화증권보다 후순위로 함.
123)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함.

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채권의 채권시가평가수익률(금융투자협회 공시) 등을 고려하여 공모발행을 통해 수익률을 설정하고 있고, 중순위 채권의 경우 선순위 채권 대비 위험도가 높아 매각처가 한정적이어서 수익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선/중/후순위 채권 발행시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채권 구분	신평 등급	만기	23-1차		23-2차		24-1차		24-2차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선순위	AAA	1년	150	4.048%	150	4.220%	115	3.680%	300	3.318%
		2년	150	4.225%	150	4.430%	115	3.660%	300	3.363%
		3년	100	4.284%	-		-		300	3.411%
		4년	100	4.377%					300	3.489%
		5년	200	4.472%					300	3.519%
중순위	A-		-		-		-		-	
	BBB+				20	7.200%	18	6.600%	90	7.200%
	BBB0				22	7.500%	18	6.800%	90	8.200%
	BBB-		135	11.00%	7.57	9.000%	16	8.400%	124	9.200%
후순위	CCC		465	4.26%	210.86	7.56%	152.7	6.45%	996	4.51%

주: 선/중/후순위증권 수익률은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산출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러나 정부 재정으로 매입하는 후순위 채권에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순위 채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순위 채권의 매입처를 다양화하는 등 중순위 채권의 금리를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 표에서 중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리스크가 큰 후순위 채권의 수익률이 중순위 채권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중진기금에서 인수하는 후순위 채권의 경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 중순위 채권의 경우 현재까지 손실을 기록한 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해당 증권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후순위 채권의 수익률을 중순위 채권보다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창업성공패키지(5152-302)

□ 계획안 현황

‘창업성공패키지’(2011～, 직접수행)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 등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4억원(△6.4%) 증액한 1,064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창업성공패키지	97,368	100,031	100,031	106,431	6,400	6.4
창업성공패키지	93,071	96,131	96,131	102,531	6,400	6.7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4,297	3,900	3,900	3,900	0	0.0

□ 검토의견

(1) 창업성공패키지: 성인지 성과목표 상향 필요

‘창업성공패키지’ 내역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

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전(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데 1학년 과정은 업력 3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전국 19개소(광역 3개소 포함) 캠퍼스에서 창업공간 제공 및 교육·코칭 등 초기보육을 실시하고, 2학년 과정은 광역 캠퍼스 3개소(서울, 광주, 경산)에서 업력 7년 이내 청년창업자 중 딥테크 기술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과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연계 등을 지원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적	◦ 혁신적인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공간, 사업화자금, 교육·코칭,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과정 패키지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 제공 ◦ 기업가정신과 창업실무역량 등 기술창업 교육 ◦ 전문인력 1대1 배치 코칭 ◦ 기술개발,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 지원 ◦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기술 및 장비 지원 ◦ 정책자금·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2026년 계획안	◦ 1,025억원(1년차 650명, 2년차 300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재정법」 제26조[124]에 따라 작성한 「2026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여성창업자 수혜비율(%)’이고 2026년도 성과목표는 34.4%임.

창업성공패키지 성인지 성과지표

성과지표	’24년 실적	’25년 추정치	’26년 목표치	측정방법
여성창업자 수혜비율(%)	38.3	36.0	34.4	성공평가에서 ‘성공’ 판정받은 졸업자(예정자) 중 여성비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5. 9.

그런데 2026년 목표치 34.4%는 2025년 추정치 36.0%보다 △1.6%p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기 어려움.

---

124)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하는 창업기업동향 '업종별·성별 창업기업수'를 보면 2024년 기술기반업종 여성 창업기업 비중은 41.3%이기 때문에 이보다 6.9%p 낮은 여성창업자 수혜비율(%) 34.4%는 보수적인 목표치로 볼 수 있음.

기술기반업종 여성 창업기업 현황

구 분	13	14	15
개수(개사)	95,413	91,130	88,713
비중(%)	41.6	41.2	4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2025.3.

「2026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성평등 목표를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의 지원 확대'로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여성 CEO 양성 및 여성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이 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성창업 비중 및 실적 추세를 반영한 성인지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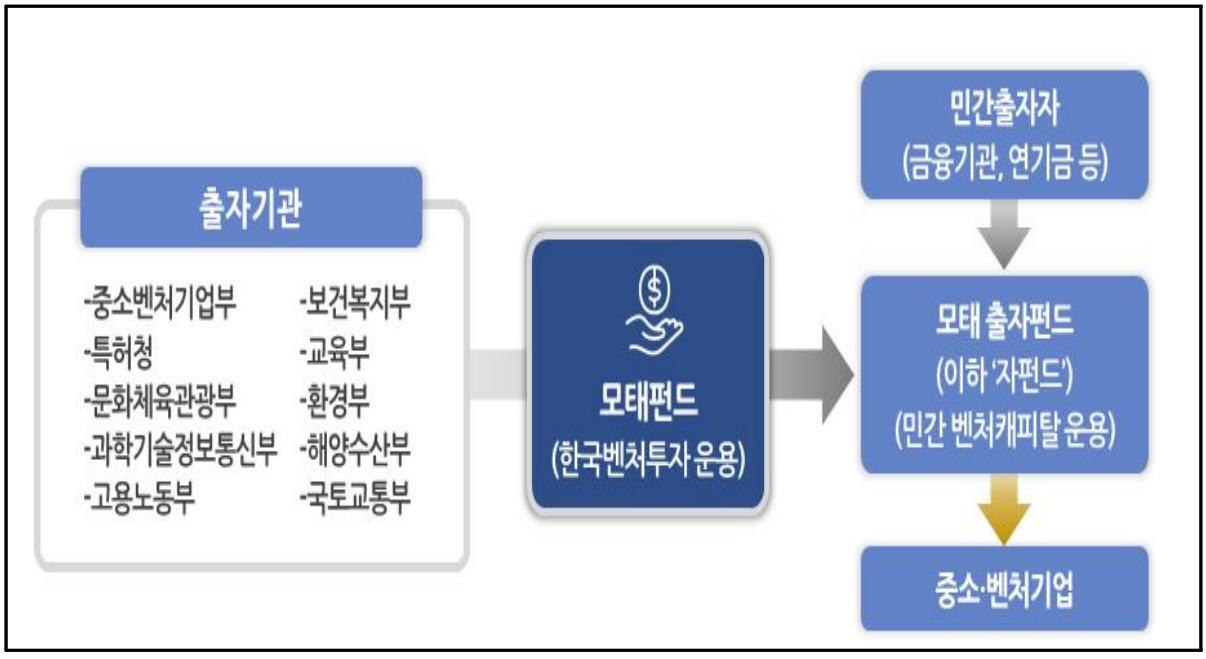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계획안 현황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005~2035, 출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는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에 기금을 출자하는 사업임.

동사업은 아래 개념도와 같이 모태펀드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가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다시 민간이 운용하는 자펀드에 출자하며 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중소기업모태펀드 개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가 출범한 2005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포함 10개 부처)는 11조 3,313억원의 출자를 통해 총 1,376개, 46조 4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이러한 자펀드에서 11,162개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총 35조 4,505억원을 투자함[125].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000억원(120.0%) 증액한 1조 1,00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50,000	500,000	800,000	1,100,000	600,000	120.0

□ 검토의견

(1) 추경 출자사업 연내 펀드결성 및 투자실행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3일 제2회 추경을 통해 동사업을 현계획 5,000억원 대비 4,000억원(80.0%)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심의를 거쳐 7월 5일 현계획 대비 3,000억원(60.0%) 증액한 8,000억원으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바 있음.

125) 315개 자펀드(9조 868억원) 청산을 통해 2조 9,811억원을 모태펀드에 배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하여 대규모 집중 투자가 필요한 AI·딥테크 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에 2,400억원,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에 1,6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이었으며, 증액규모가 3,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에 1,500억원,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에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2025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변경	세부내역
NEXT UNICORN PROJECT	3,000	①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기업당 평균 20억원 투자 × 125개사 × 60% 출자 = 1,500억원 ②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기업당 평균 100억원 투자 × 30개사 × 50% 출자 = 1,5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추경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3,000억원을 활용하여 전문기술인력이 창업한 AI·딥테크 창업기업 125개사에 기업당 20억원 내외 투자하는 2,64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기업 30개사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 3,066억원 등 총 5,706억원 규모의 NEXT UNICORN PROJECT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함.

추경재원 3,000억원 활용 NEXT UNICORN펀드조성목표

구 분	투자 대상	조성 규모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	전문기술인력이 창업한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모태펀드 1,500억원 출자 → 2,640억원 규모 펀드 조성(출자비율 60%)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중기부 지원사업(R&D·융자·보증·창업사업화 등) 참여기업 중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 등 유망 AI·딥테크 기업에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 소액 분산형 투자가 아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성과 달성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모태펀드 1,500억원 출자 → 3,066억원 규모 펀드 조성(출자비율 50%)
펀드조성목표 합계		**5,706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회계연도가 2개월 남은 11월 현재까지 펀드운용사만 선정된 상태로 결성에 성공한 NEXT UNICORN PROJECT 펀드는 전무한 실정임.

추경재원 3,000억원 활용 NEXT UNICORN PROJECT 펀드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분 야		선 정			결 성		
		출자예산	조성 목표	펀드 수	모태약정	결성 총액	펀드 수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	1,500	2,640	9	없음	없음	없음
	스케일업 펀드	1,500	3,066	2	없음	없음	없음
합 계		3,000	5,706	11	없음	없음	없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 위원회는 제2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후 모든 펀드가 결성 완료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9개월 정도이고, 역대 최단기간에 펀드 결성을 완료한 2024년의 소요기간도 5개월인 점[126]을 지적하면서 NEXT UNICORN PROJECT 펀드의 연내결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펀드결성에 실패할 경우 기업에 대한 실제투자도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만약 펀드결성시한(12.11) 내 모든 펀드가 결성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딜소싱(Deal Sourcing)→초기 검토(Initial Screening)→투자검토보고서 작성→투자심의위원회 개최→실사(Due Diligence)→투자조건 협상 및 계약체결→투자금 납입 등 단계별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경편성의 목적으로 제시한 유망 AI·딥테크 기업에 대한 연내 자금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127].

한편, 2020~2025년 선정된 자펀드 중 현재 투자기간이 남아있는 펀드의 미투자 잔액[128]은 3조 4,096억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에 적당한 투자 대상이 나타났을 때 집행하기 위한 대기자금으로 볼 수도 있기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Dry Powder)이

126)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모태펀드 역대 최단기 100% 결성 완료, 하반기 벤처투자 가속화”, 2024.9.3.

127)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 통과(7.5) 1주일 이내 출자공고(7.11), 공고 이후 2개월 이내 운용사 선정(9.11)하여 연내 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결성시한 3개월, 12.11)를 목표로 출자사업을 진행 중이고, 추경 사업 특성 상 신속 집행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기결성’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며, 최종 선정 펀드의 73%(8개/11개)가 조기결성 인센티브를 신청했기 때문에 연내 펀드결성이 다수 예상된다는 입장임.

* 조기결성 인센티브: 결성시한(3개월) 이내 펀드 결성을 확약 시 가점 부여, 미이행 시 출자사업 참여제한(6개월) 패널티 부여

128) 펀드의 미투자액에서 펀드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최근 5년 결성 자펀드 미투자 잔액(2025년 8월 기준)

(단위: 억원)

선정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미투자 잔액	2,019	7,018	5,839	13,059	5,493	34,09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추경을 통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이미 확정된 계획에 변경을 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다음연도 계획안 수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NEXT UNICORN PROJECT 펀드에서 예상되는 미투자 잔액 5,706억원(조성목표액 기준)은 통상의 대기자금인 드라이파우더로 볼 수 없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경기 불확실성, 회수시장 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진한 벤처펀드의 투자지연은 유망 AI·딥테크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자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 기회 상실과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연내 결성 및 투자가능성이 불투명한 펀드출자를 위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부적절한 재정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자펀드 민간LP 비중 제고 필요

최근 벤처투자펀드 결성 실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2021년 17조 8,481억원에서 2024년 10조 5,550억원으로 40.9% 줄었고, 결성 펀드 수는 2021년 1,198개에서 2024년 811개로 32.3% 감소하였음.

2020～2024년 벤처투자펀드 결성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결성금액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벤처투자조합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15.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23.0%
결성펀드 수	650	1,198	902	859	811	△5.6%
벤처투자조합	206	404	380	290	286	△1.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44	794	522	569	525	△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펀드 결성액의 출자자별 구성 현황을 보면, 2024년 전체 벤처투자펀드 결성액 10조 5,550억원 중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 3,516억원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며, 2021년 9.8%, 2022년 8.5%, 2023년 7.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자 비중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출자 비중이 2021년 80.9%, 2022년 81.9%, 2023년 83.3%로 상승세였다가 2024년 들어 77.0%로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정책

자금 투입이 민간 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20～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의 출자자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11.3%
	비중	26.0%	19.1%	18.1%	16.7%	23.0%	-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37.8%
	비중	13.3%	9.8%	8.5%	7.5%	12.8%	-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4.2%
	비중	5.5%	5.0%	5.6%	2.7%	3.8%	-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26.8%
	비중	3.6%	2.3%	2.1%	3.4%	3.1%	-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14.4%
	비중	3.6%	2.1%	1.9%	3.1%	3.2%	-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25.1%
	비중	74.0%	80.9%	81.9%	83.3%	77.0%	-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23.5%
	비중	8.3%	16.2%	13.1%	11.0%	10.4%	-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5.0%
	비중	18.3%	22.4%	20.7%	20.9%	21.9%	-
금융기관(산은 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31.9%
	비중	23.3%	25.2%	27.8%	32.4%	27.2%	-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6.2%
	비중	11.2%	3.8%	7.5%	5.7%	3.1%	-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12.3%
	비중	9.8%	11.5%	10.6%	10.5%	11.4%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11.4%
	비중	3.0%	1.8%	2.1%	2.8%	3.0%	-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주: 2024년 기금출자액 4,500억원과 청산 후 재출자액을 합친 총 출자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최근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민간출자자(LP)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데, 2020~2025년 결성한 자펀드의 출자자 비중을 보면 2022년 64.3%였던 민간LP는 2023년 60.9%, 2024년 57.5%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모태LP는 2022년 35.7%, 2023년 39.1%, 2024년 42.5%로 상승함에 따라 모태출자의 승수(자펀드 결성액/모태출자액)는 2022년 2.80에서 2024년 2.35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2020~2024년 결성 자펀드 LP현황(모태 vs. 민간)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펀드 결성액(A)	금액	37,290	47,695	42,133	29,096	31,54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모태출자(B)	금액	14,295	17,725	15,028	11,388	13,400
	비중	38.3	37.2	35.7	39.1	42.5
민간출자	금액	22,995	29,970	27,105	17,708	18,149
	비중(%)	61.7	62.8	64.3	60.9	57.5
승수(A/B)		2.61	2.69	2.80	2.55	2.3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2005년 결성된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129]에 따라 30년으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청산될 예정인데, 자펀드가 통상 8년~10년 운용[130]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6

1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130) 조기 청산이 가능하지만 평균 IPO 소요기간(2023년 기준 15.5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을 감안할 필요 있음.

년 결성된 만기 10년 자펀드는 존속기간 중 모펀드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함[131].

모태펀드는 지난 20년간 한국 벤처투자시장이 연간 11조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초기·딥테크·지역균형 등 시장실패 우려가 큰 분야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시장다변화와 혁신생태계 저변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132]와 함께,

최근 정책펀드의 민간투자 유인효과가 축소되었고, 장기간 정책자금이 대규모 자금공급자로 기능함에 따라 민간 앵커LP(핵심출자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운용사의 정부 의존성이 심화되어 민간주도 생태계가 약화되었다는 의견[133]도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자펀드의 민간LP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1) 이에 현재 우리 위원회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중임(의안번호 2211994 권칠승의원안, 의안번호 2213194 정진욱의원안).

13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2024.10.2.

133) 배승욱(2024)은 2014년 이전에는 모태출자가 1% 증가하면 민간출자가 0.845%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민간출자 증가분이 0.209-0.282%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함.「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4.3.

(3)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관리·감독 부실 문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매년 관리보수를 지급받고 있는데, 2024년에 누적출자금 9조 8,617원에 대한 관리보수 416억원을 수령하였음(출자금 2조원까지 0.55%, 2조원 초과분에 0.4%의 보수율 적용)[134].

한국벤처투자 지급 관리보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가액 (B-A)	증가율 (B/A)
출자금 (누적)	58,481	72,774	82,153	88,968	98,617	40,136	68.6%
관리보수	248	305	350	379	416	168	67.7%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매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은 존속기간인 2035년까지 국고로 회수되지 않고 자펀드 청산시에도 투자금은 다시 모태펀드로 귀속되기에 출자금이 매년 누적됨에 따라 관리보수는 매년 비율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위 표를 보면 출자금이 2020년 5조 8,481억원에서 2024년 9조 8,617억원으로 4조 136억원(68.6%) 증가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에 지급한 관리보수도 2020년 248억원에서 2024년 416억원으로 168억원(67.7%)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134) 보수율은 「벤처투자모태조합 규약」에 따름.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45억 3,000만원에서 2024년 160억 7,200만원으로 115억 4,200만원(354.8%) 증가했으나, 2024년 배당성향은 2020년보다 1.8%p 낮은 28.0%로 책정함으로써 2020년 399억원 8,900만원이었던 내부유보금은 2024년 722억 2,700만원까지 확대되었음(322억 3,800만원, 180.6% 증)[135].

한국벤처투자 당기순이익, 배당금, 내부유보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A)	2021	2022	2023	2024(B)	증가액 (B-A)	증가율 (B/A)
당기순이익	4,530	2,178	12,508	8,750	16,072	11,542	354.8
배당금	1,350	650	3,100	2,170	4,500	3,150	333.3
배당성향	29.8	29.8	24.8	24.8	28.0	△1.8%p	△6.0
내부유보금 (이익잉여금)	39,989	40,818	52,675	58,325	72,227	32,238	180.6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관리보수와 그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내부유보금 확대에 반해, 202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2025.10.23.)에서는 자펀드가 피투자기업과 맺은 불공정계약(IPO 불발시 손해배상 독소조항) 관련 한국벤처투자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바 있음.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136]을 보면 펀드운용사는 피투자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시 한국벤처투자에 투자계약

1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벤처투자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 받은 배당금은 45억원임.

136) 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2024.12, p26.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투자금액, 투자방식은 물론 주요 조건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벤처투자가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않은 것은 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137].

한편, 2023년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계약시 투자기업이 아닌 이해관계인(창업자, 대주주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국모태펀드 출자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조항이 규약에 없는 경우에는 연대책임부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 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모태펀드 출자금이 누적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의 관리보수와 당기순이익 및 내부유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펀드 관리는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보수 삭감, 배당성향 확대,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7)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사가 '준법사항 체크리스트'를 통해 규약상 불공정 계약 체결 또는 금지 행위 여부를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투자계약서 점검을 통해 규약에 따른 불공정 투자계약 조항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함. 한국벤처투자는 불공정 계약조항을 열거하여 금지하고 있고 해당 사안은 금지된 불공정 계약 조항에 미해당되므로 향후 업계 의견청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계약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기술보증기금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술보증기금의 2026년도 운용규모는 2025년 3조 3,080억원 대비 5,446억원(16.5%)이 증가한 3조 8,526억원으로 편성됨.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변경			%
기술보증기금	3,308,026	3,378,026	3,852,586	544,560	1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구상채권 회수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기술보증대위변제,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팩토링금융 등의 산업금융지원사업 및 기보IT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수입 계획안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수입 계획안은 3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6억원(16.5%)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수입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수정			%
□ 자체수입	1,465,431	1,465,431	1,603,965	138,534	9.5
▪ 금융기관 출연금	631,503	631,503	754,696	123,193	19.5
▪ 이자수입	63,509	63,509	49,060	△14,449	△22.8
▪ 구상채권 회수	157,000	157,000	155,736	△1,264	△0.8
▪ 보증료수입	352,752	352,752	357,198	4,446	1.3
▪ 기타수입	260,667	260,667	287,275	26,608	10.2
□ 정부 내부수입	46,595	116,595	260,255	213,660	458.5
▪ 일반회계 전입금	40,000	110,000	60,000	20,000	50.0
▪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	-	-	195,000	195,000	순증
▪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	6,595	6,595	5,255	△1,340	△20.3
□ 여유자금 회수	1,796,000	1,796,000	1,988,366	192,366	10.7
▪ 유가증권 매각대	140,000	140,000	150,000	10,000	7.1
▪ 정부예금 회수	1,656,000	1,656,000	1,838,366	182,366	11.0
합 계	3,308,026	3,378,026	3,852,586	544,560	1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지출 계획안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지출 계획안은 3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6억원(16.5%)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

2026년도 기술보증기금 지출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 사업비	1,617,321	1,630,621	1,877,267	259,946	16.1
▪ 산업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	1,597,401	1,610,701	1,844,569	247,168	15.5
▪ 기보IT운영	19,920	19,920	32,698	12,778	64.1
□ 기금운영비	226,532	232,852	238,895	12,363	5.5
▪ 인건비	165,434	171,644	177,296	11,862	7.2
▪ 기금관리비	61,098	61,208	61,599	501	0.8
□ 여유자금운용	1,464,173	1,514,553	1,736,424	272,251	18.6
합 계	3,308,026	3,378,026	3,852,586	544,560	1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Ⅱ. 검토의견

1. 민간출연금(59-594)

□ 계획안 현황

‘민간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법」[138]에 따라 법정출연금 외에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특별출연을 받는 수입과목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9억 7,100만원(14.0%) 증액한 975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민간출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민간출연금	71,154	85,550	85,550	97,521	11,971	14.0

□ 검토의견

(1) 기술보증기금 민간출연금 수입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민간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의

138)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하나로서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른 특별출연금을 징수하는 수입과목임.

기술보증기금은 2026년도 계획으로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금 965억 8,600만원, 이노비즈[139]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금 9억 3,500만원 등 총 97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음.

2026년도 민간출연금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기관의 BIS비율 제고를 위해 법정부담금 외에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특별출연	96,586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이노비즈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기보는 전액보증을 지원하고, 협약금융기관은 보증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출연	935
합계		**97,521**

자료: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은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등과 같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원을 출연받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은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 대한

139) 이노비즈 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우대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재원 규모에 대한 조건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원을 출연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그런데 최근 민간출연금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계획과 실제 수납에 상당한 차이(과소 또는 과다 수납)가 발생함.

2019~2025년 민간출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				
'19	40,900	40,900	40,900	110,953	110,953	271.3
'20	55,200	55,200	55,200	125,348	125,348	227.1
'21	100,000	100,000	100,000	128,258	128,258	128.3
'22	100,000	100,000	100,000	68,107	68,107	68.1
'23	100,000	100,000	100,000	100,380	100,380	100.4
'24	107,300	107,300	107,300	71,154	71,154	66.3
'25.9	85,550	85,550	85,550	101,862	101,862	119.1

자료: 기술보증기금

2019년에 당초 409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1,109억 5,3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271.3%이고, 2020년 계획은 552억원인데 실적은 1,253억 4,800만원으로 수납률이 227.1%이며, 2021년 계획은 1,000억원인데 실적은 1,282억 5,800만원으로 수납률 128.3%, 2022년 계획은 1,000억원인데 실적은 681억 700만원으로 수납률 68.1%, 2024년 계획은 1,073억원인데 실적은 711억 5,400만원으로 수납률 66.3%, 2025년 계획은 855억 5,000만원인데 9월말 기준 실적은 1,018억 6,200만원으로

수납률 119.1%임.

2019~2025년 민간출연금 결산내역(상세)

(단위: 백만원, %)

출연 종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	20,000	85,160	33,900	99,443	99,100	116,274	99,300	61,223	98,760	94,361	106,450	65,638	85,200	93,750
지자체 등 협약 특별출연	-	3,150	-	22,000	-	10,707	-	6,505	1,000	4,447	-	2,333	-	3,433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400	370	400	270	400	274	400	379	240	1,072	350	2,683	350	4,679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특별출연	1,000	1,568	1,300	96	500	1,003	300	-	-	-	-	-	-	-
농·수협 임의출연*	19,500	20,705	19,600	3,539	-	-	-	-	-	-	-	-	-	-
한국벤처투자 특별출연	-	-	-	-	-	-	-	-	-	500	500	500	-	-
합계 (수납률)	40,900	110,953 (271.3)	55,200	125,348 (227.1)	100,000	128,258 (128.3)	100,000	68,107 (68.1)	100,000	100,380 (100.4)	107,300	71,154 (66.3)	85,550	101,862 (119.0)

주: 농·수협 임의출연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20.3월부터 법정출연금으로 수납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민간출연금의 당초 계획과 실제 수납에 차이(과소 또는 과다 수납)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에서 계속하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2024년에 1,064억 5,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계획액의 61.7%인 656억 3,800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음.

또한, 이노비즈 금융지원협약 특별출연은 2024년 3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26억 8,3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766.6%였고, 2025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9월말 기준 46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336.9%에 달함.

한편, 지방자치단체 협약 특별출연에서 매년 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3년 계획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 수입계획안에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2024년·2025년 역시 수입계획 없이 각각 23억 3,300만원 및 34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2026년 역시 수입계획안에 계상하지 않음.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민간출연금은 금융기관 등이 성과목표, 대내외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보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수납되는 출연금 수입으로, 협약체결과 출연이 주로 당해연도에 결정되는 등 사전 예측에 한계가 있어 과거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예상 수입액을 편성하고 있다고 함.

또한, 출연금 先 수납 후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과 달리,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협약보증 대출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년도에 정산하여 출연하는 구조로 운영되기에 정확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민간출연금은 경제상황과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당초 계획과 실제 수납에 계속하여 괴리가 발생하면 기술보증기금의 효율적인 계획안 작성 및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계획안 현황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회수, 임차보증금·대여금·공탁금 반환, 선급법인세 환입 등을 받는 수입과목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1,800만원(0.1%) 감액한 2,872억 7,500만원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49,382	287,593	287,593	287,275	△318	△0.1

□ 검토의견

(1) 구상채권 회수: 구상채권 질적 개선 도모 필요

‘구상채권 회수’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소송, 경매 등을 통해 채무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과목이며, 기술보증기금은 2026년도 계획안으로 최근 5개년 평균 구상채권 회수액 및 연대보증인 회수비중 등을 근거로 산출한 1,557억원을 계상하였음.

최근 복합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위변제도 증가하였으나 구상권 회수는 부진한데, 구상권 발생액은 2022년 6,701억원에서 2024년 1조 3,358억원으로 6,657억원(199.3%) 증가하였으나 구상권 회수율은 3.5%에서 3.1%로 0.4%p 하락하였음.

2019~2025년 구상권 회수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대위변제순증(A-C)		7,959	6,420	4,906	4,946	9,596	11,677	11,052
구상권 발생액(A)		9,882	8,380	6,734	6,701	11,105	13,358	11,949
회수*	연도중(B)	2,321	2,352	2,349	2,208	2,114	2,243	1,358
	원금(C)	1,923	1,960	1,828	1,754	1,509	1,681	897
구상권 잔액(D)		65,567	62,430	57,090	55,773	58,881	62,526	70,343
회수율[B/(전년말D+A)]		3.0	3.2	3.4	3.5	3.2	3.1	1.8

주: 출자전환 등 비현금성 회수 포함(총보증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개인회생·신용회복 활성화 등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채권 확대,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채무관계자 수 감소 등을 그 이유로 설명하였음.

권리행사 제한채권 및 채무관계자수

(단위: 억원,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구상채권 잔액(A)	20,015	18,533	16,757	15,445	19,334	22,717	25,887
권리행사제한채권 잔액(B)	5,529	4,908	4,722	4,357	5,324	5,781	6,767
비율(B/A)	27.6%	26.5%	28.2%	28.2%	27.5%	25.4%	26.1%
채무자 수	40,429	37,707	33,332	30,772	30,213	29,696	30,934
연대보증인 수	16,977	14,801	12,314	10,116	8,594	6,994	6,626

주: 직접보증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한편 회수예상금액이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하거나 채무자의 생계

수단·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상각하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함.

구상채권 상각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 분	직전년도 구상채권 잔액(A)	상각 현황		
		업체수	금액(B)	상각률(B/A)
2019	20,552	3,183	8,281	40.3
2020	20,015	3,235	7,803	39.0
2021	18,533	3,085	6,675	36.0
2022	16,757	2,864	6,266	37.4
2023	15,445	2,363	5,022	32.5
2024	19,334	3,005	7,452	38.5
2025.9	22,717	2,915	7,095	31.2
계	133,353	20,650	48,594	36.4

주: 직접보증 기준
자료: 기술보증기금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은 채권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면밀한 재산조사, 채무경감을 통한 상환 유도 등으로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높이는 한편, 실익이 없는 구상권의 경우에는 상각 등을 통해 기금보유 구상채권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계획안 현황

‘기술보증대위변제’(1989～)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73억원(14.8%) 증액한 1조 5,275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기술보증대위변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기술보증대위변제	1,329,686	1,330,200	1,330,200	1,527,500	197,300	14.8

□ 검토의견

(1) 사고율 및 한계기업 증가에 대비할 필요

동사업은 2021·2022회계연도에 계획액의 절반 정도만 소진하였는데, 이는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

라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편성 시 추정한 사고율보다 실제 사고율이 낮았기 때문임.

그러나, 2023년부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23년은 당초 계획액인 1조 535억원에서 자체변경을 통하여 560억원을 증액시킨 계획현액 1조 1,095억원 중 1조 1,05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이고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04.9%였으며, 2024년은 당초 계획액 1조 3,301억 9,500만원 중 1조 3,29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임.

최근 기술보증대위변제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008,300	965,318	1,017,000	822,491	1,213,000	663,512	1,291,500	662,649	1,053,500	1,105,880	1,330,195	1,329,686	1,330,200	1,194,879
95.7		80.9		54.7		51.3		104.9*		99.9		89.8	

주: 2023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음.

그런데 2023년 및 2024년에는 이러한 조치가 2025년 9월까지로 연장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보증기업의 채무불이행(즉, 사고)에 따른 보증해지가 당초 추정치보다 높게 발생한 것임.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정부의 금융권 상환유예조치 현황

구분	기간	대책	관련 지침
최초	2020.4.1. ~ 2020.9.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2020.3.19.,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2020.3월 중기부)
1차 연장	2020.10.1.~ 2021.3.31.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2020.8.27.,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0.9월 중기부)
2차 연장	2021.4.1.~ 2021.9.3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2021.3.2.,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1.3월 중기부)
3차 연장	2021.10.1.~ 2022.3.3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2021.9.16.,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1.9월 중기부)
4차 연장	2022.4.1. ~ 2022.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 (2022.3.23.,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2.3월 중기부)
5차 연장	2022.10.1.~ 2025.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2022.9.27., 금융위)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운용 지침(2022.9월 중기부)

자료: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기술보증대위변제 사고율을 보면, 2019년에는 4.8%로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4.5%였고, 2020년에는 4.8%로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3.4%였으며, 2021년에는 4.5%를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2.5%, 2022년에는 4.8%를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2.7%를 기록하여 2019~2022년의 4년 동안 모두 추정 대비 낮은 사고율을 보인 반면,

2023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0.8%p 낮은 4.0%의 추정사고율과 이에 상응하는 계획액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사고율은 추정치보다 0.2%p 높은 4.2%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사고율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0.6%p 높은 4.6%로 추정사고율 및 해당 계획액을 편성하였음에도 실제 사고율은 추정치보다 0.1%p 높은 4.7%를 기록함.

최근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신규보증		52,859	52,465	48,480	78,208	49,276	42,638	60,957	55,156	51,045
보증잔액(A)		213,306	220,334	218,052	254,453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98,014
사고금액(B)		9,430	9,921	9,848	8,611	6,693	7,197	11,832	13,473	11,847
사고율	추정	4.8	4.8	4.8	4.8	4.5	4.8	4.0	4.6	4.9
	실제(B/A)	4.4	4.5	4.5	3.4	2.5	2.7	4.2	4.7	4.0
기본재산(C)		18,397	15,579	15,570	21,100	29,176	33,670	34,424	33,174	30,069
운용배수(A/C)		11.6	14.1	14.0	12.1	9.0	7.9	8.1	8.6	9.9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를 코로나19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사고율은 2.5%~3.4%였지만, 2024년 사고율은 4.7%로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치인 4.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됨[140].

140) 기술보증기금은 2026년 사고율을 전년 대비 0.3%p 높은 5.2%로 추정하고 계획안을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로 최근 5년여간 코로나19 팬데믹 및 초저금리, 복합위기, 통상리스크 등 급변한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대내외 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사업을 최근 7년 경험칙을 활용(기존에는 최근 5년 경험칙 활용)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코로나19 전·후 기술보증 사고율 비교

(단위: %)

구 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기간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사고율	4.4	4.5	4.5	3.4	2.5	2.7	4.2	4.7	4.0

자료: 기술보증기금

2025년 월간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보증잔액(A)	284,078	284,527	286,388	289,801	292,851	292,053	293,515	294,763	298,014
사고금액(B)	1,593	2,832	4,248	5,588	6,692	8,022	9,476	10,619	11,847
사고율(B/A)	0.56	1.00	1.48	1.93	2.29	2.75	3.23	3.60	3.98

주: 월별 사고금액은 누적 사고금액
자료: 기술보증기금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등을 한계기업(성과부진기업)[141]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이 총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0.85%(22조 334억원 중 1,870억원)에서 2025년 9월 기준 1.44%(29조 8,014억원 중 4,293억원)으로 0.59%p 증가하였고, 기업비중도 2018년 0.21%(78,239개 중 166개)에서 2025년 9월 기준 0.41%(81,975개 중 337개)로 0.2%p 증가하였음.

141) 보증이용기간이 10년(기술혁신선도형기업은 12년)을 초과하고 업종별 금융성운전자금 가중평균보증금액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중 ①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② 최근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③ 최근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시현, ④ 최근 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부(-), ⑤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중 하나 이상에 저촉되는 경우 한계기업(성과부진기업)임.

기술보증기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단위: 개, 억원, %)

구분	총 보증(잔액기준)		한계기업보증(잔액기준)			
	기업 수(A)	보증잔액(B)	기업 수(C)		보증잔액(D)	
			개사	비중(C/A)	금액	비중(D/B)
2018	78,239	220,334	166	0.21	1,870	0.85
2019	80,288	218,052	212	0.26	2,378	1.09
2020	83,870	254,453	265	0.32	2,865	1.13
2021	85,082	262,684	316	0.37	3,445	1.31
2022	84,239	265,029	372	0.44	4,157	1.57
2023	81,962	279,176	323	0.39	3,627	1.30
2024	82,230	284,713	320	0.39	3,900	1.37
2025.9	81,975	298,014	337	0.41	4,293	1.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최근 사고율 및 한계기업 보증잔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은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 누적 방지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 계획안 현황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014～)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142] 중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SPC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용공여 약정에 대하여 기금이 보증하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기한 내 상환되지 않거나 신용공여에 대한 보증 기한 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순증액 26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11,044	-	-	26,610	26,610	순증

□ 검토의견

(1) 유동화회사보증 특성을 고려한 사고율 추정으로 면밀한 기금 운용계획 수립 필요

142) 기술중소·중견기업 등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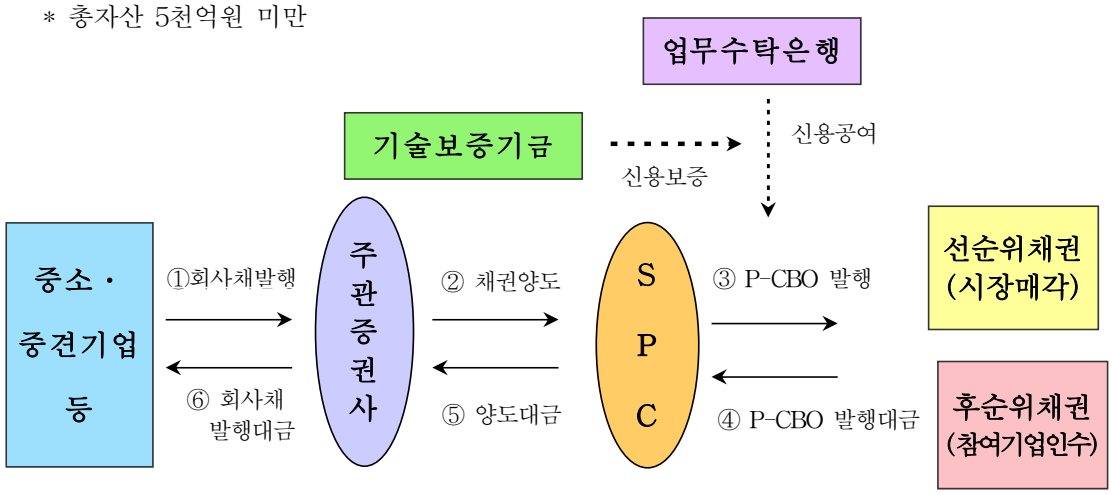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운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중소·중견기업 등에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143]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자금을 개별기업에 공급하는 구조임.

유동화회사보증 세부내용

○ **(편입지원가능 등급)**
- (중소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중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회사채등급 BB- 이상

○ **(편입지원결정)**
- (중소기업) 기술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등을 평가
- (중견기업*) 기술평가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 등급 적용

* 총자산 5천억원 미만



자료: 기술보증기금

143) 유동화회사가 매입한 회사채를 바탕으로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을 발행함.

최근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2020년 67.3%, 2021년 19.4%, 2022년 24.0%, 2023년 40.4% 등 낮은 집행률과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에는 추세가 반전되어 당초 계획액으로 3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고율 상승으로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10억 4,600만원으로 증액 수정되었고, 110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289.0%를 기록하였음.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19	28,800	24,070	83.6	4,730
2020	18,700	12,577	67.3	6,123
2021	16,500	3,209	19.4	13,291
2022	9,811	2,355	24.0	7,456
2023	11,724	4,733	40.4	6,991
2024	3,821	11,044	289.0	-

주: 2024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과거 5개년의 평균 사고율 및 평균 대위변제보증해지율 등을 기반으로 2024년 사고금액 및 대위변제 지출소요를 산정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 복합위기 장기화 등으로 실제 사고금액 및 대위변제보증해지율이 상승하여 계획액과 실제 지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아래 표를 보면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기준이 된 사고율과 실제 발생한 사고율에는 지속적인 괴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다시 낮은 집행실적으로 나타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임.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편성 사고율 및 실제 사고율

(단위: %)

구 분	편성 사고율	실제 사고율	괴 리(%p)
2020	5.6	4.9	△0.7
2021	6.7	1.4	△5.3
2022	6.1	1.2	△4.9
2023	3.3	1.3	△2.0
2024	0.5	1.5	1.0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동 사업의 사고율 괴리(편성 사고율과 실제 사고율의 차이)는 기술보증대위변제의 사고율 괴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 사고율 괴리를 비교해 보면 기술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평균 1.0%p인데 반해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1.4%p 높은 2.4%p이고, 2024년의 경우만 따로 떼어 보면 기술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0.1%p인데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0.9%p 높은 1.0%p임.

유동화회사보증-기술보증 대위변제 편성 대비 실제 사고율 괴리 비교

(단위: %p)

구 분	유동화회사(A)	기술보증(B)	괴리 비교(A-B)
2019	0.7	△0.3	0.4
2020	△0.7	△1.4	0.7
2021	△5.3	△2.0	3.3
2022	△4.9	△2.1	2.8
2023	△2.0	0.2	1.8
2024	1.0	0.1	0.9
괴리 평균(절대값)	**2.4**	**1.0**	**1.4**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와 같은 현상은 유동화회사보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첫째, 유동화회사보증은 일반보증과는 달리 차환발생 시 2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가 기술보증에 대비하여 유동화회사보증에 더 크게 작용한 점,

둘째,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일반 보증부대출과 달리 유동화회사보증은 분기별로 이자를 납부하기에 일시적 자금경색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점,

셋째, 편입기업에 고액('23~'24 업체당 평균 신규보증 지원금액: 유동화보증 19억원, 기술보증 4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

동화회사보증의 특성상,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이 크기에 일부 기업의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넷째, 유동화회사보증은 보증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만기 이후에 대위변제로 현실화(만기 : 유동화보증 3년, 기술보증 1년)되기에, 기업 부실이 단기에 파악되는 기술보증과 달리 사고 영향이 여러 해에 누적되어 만기 시점에 일괄적으로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점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기술보증기금은 2026년도 만기도래 예정인 2,848억원의 유동화증권(신규 1,991억원, 차환 857억원)의 2026년도(3년차) 예상사고율을 5.97%로 추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통상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점, 2026년 차환 대상인 2023년 유동화회사보증 편입기업의 경우 평년 대비 고금리로 발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를 추정하였다고 설명함.

최근 유동화회사보증 공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
신규공급	-	-	-	-	1,991	4,157	2,800
차환공급	1,558	1,064	1,182	778	857	489	0
계	1,558	1,064	1,182	778	2,848	4,646	2,800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대위변제와는 다른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만의 특수성과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동 사업 도입 이후 10여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정교한 계획액을 계상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팩토링금융(2441-311)

□ 계획안 현황

‘팩토링금융’(2022~)은 기술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500만원(0.1%) 증액한 994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팩토링금융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팩토링금융	99,338	99,370	99,370	99,405	3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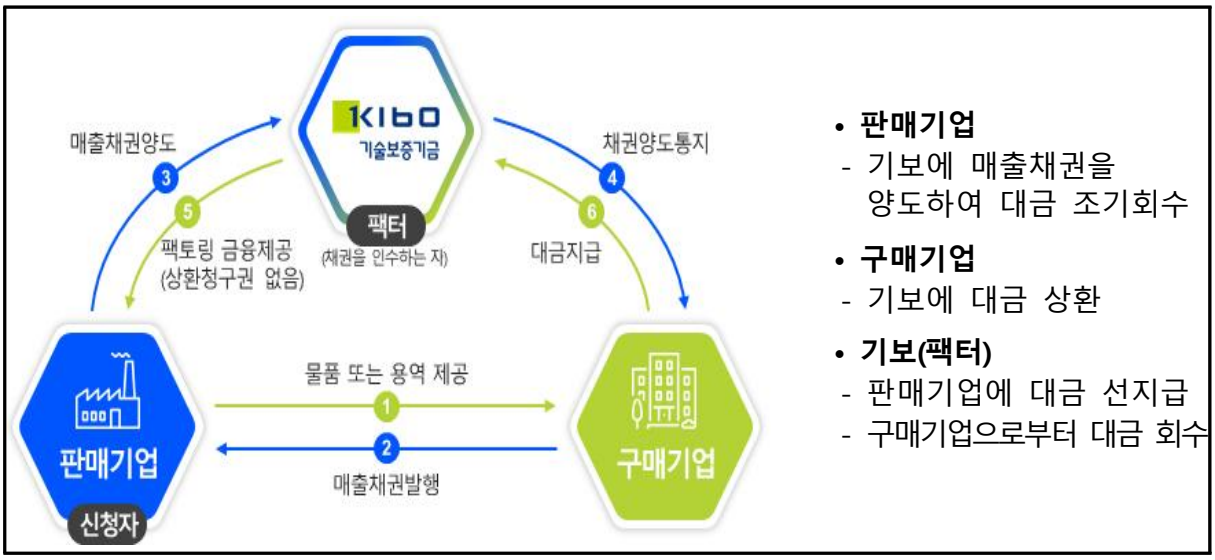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경영애로 구매기업에 30일 상환연장제도 적용 관련 유사 기금운용 등에 공유 필요

팩토링금융은 판매기업이 팩터(factor)인 기술보증기금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단기금융서비스이며 2022년부터 기술보증

기금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팩토링금융 개념도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 사업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중 물품공급 등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행일로부터 결제기일이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을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팩토링금융 내용

구분	내용
판매기업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중 물품공급 등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중소기업
구매기업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등
매출채권	◦ 발행일부터 결제기일이 90일 이내인 매출채권 (전자세금계산서 한정)
지원한도	◦ 매출액×1회전기간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이내
할인율	◦ 구매기업의 팩토링 평가등급별 차등 부여(3.1%~7.0%)

자료: 기술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절차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2026년도 계획안에 매출채권 매입, 이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9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음.

2026년도 팩토링금융 계획안 세부내역

○ 24년도 계획안: 99,405백만원 - 매출채권 매입 = 99,080백만원 · {25,000백만원(1회 매입액) × 4회전(평균 만기 90일 기준)} -(25,000백만원 × 3.68%(연할인율)} - 이용수수료 등 = 325백만원 · 팩토링 전산시스템 이용수수료(316백만원), 운영비(9백만원)

자료: 기술보증기금

한편, 2024년 말까지는 기술보증기금처럼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144]과 비교시 기술보증기금이 가장 높은 부실률을 기록한바 있음.

2024년 말까지 기술보증기금이 매입한 매출채권 1,981억 100만원 중 104억 8,000만원이 부실화되어 부실률이 5.3%였고, 중소벤처기업진

144)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2021.6.)」에 따라 매출채권팩토링을 3개의 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진함.

흥공단은 1,725억원 중 66억 7,900만원이 부실화되어 부실률이 3.8%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3,197억 8,800만원 중 13억 2,700만원이 부실화되어 부실률이 0.4%였음.

매출채권팩토링 부실률 비교(2024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입금액(누계, A)	부실금액(B)	부실률(B/A)
기술보증기금	198,101	10,480	5.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72,500	6,679	3.8%
신용보증기금	319,788	1,327	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 기술보증기금의 부실률은 3.7%로 2024년 말 사고율 대비 1.6%p 감소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실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매출채권팩토링 부실률 비교(2025년 9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입금액(누계, A)	부실금액(B)	부실률(B/A)
기술보증기금	273,566	10,252	3.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1,500	12.341	5.3%
신용보증기금	486,391	1,327	0.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매입심사조건 강화, 매입한도 설정 등 리스크관리를 통해 부실금액(2023년 67억원→2024년 34억원→2025년 2억원)이 감소되었고, 상환연장제도 시행, 팩토링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부실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팩토링금융 제도개선 현황

<table>
<tr><th>구 분</th><th>기 존</th><th>개 선</th></tr>
<tr><td>매출채권 매입 심사조건 강화 (‘23.10월)</td><td>○ 구매기업의 부실로 인한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td><td>○ 팩토링 거래기업 등록 및 매입심사기준 강화
<table><tr><td>재무제표</td><td>2기 이상 보유기업으로 제한</td></tr><tr><td>전결권</td><td>영업점장 전결금액 하향(5억 → 3억)</td></tr><tr><td>당좌거래</td><td>당좌거래기업 취급 제한</td></tr><tr><td>결제기일 위반</td><td>구매기업이 결제기일 이후 결제 시 매입 제한기간 설정(90일)</td></tr></table></td></tr>
<tr><td>기업한도 설정 (’23.10월)</td><td>○ 특정 기업에 과도한 팩토링금융 지원 가능성 상존</td><td>○ 업종별 1회전 기간을 반영한 기업 한도 세분화</td></tr>
<tr><td>매입한도 설정 (’24.1월)</td><td>○ 분기별 매입한도 제한이 없어 예산 조기 소진 및 신청 건이 과다 집중 시 심사 소홀 가능성 존재</td><td>○ 연간 분기별 25%씩 매입한도를 설정하여 팩토링금융 운영계획 수립</td></tr>
<tr><td>전담조직 신설 (’25.1월)</td><td>○ 영업점과 팩토링심사팀으로 업무 이원화</td><td>○ 팩토링심사팀을 팩토링지원팀으로 확대 개편</td></tr>
<tr><td>상환연장 시행 (’25.7월)</td><td>○ 만기일 다음 영업일까지 미상환 시 부실처리</td><td>○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팩토링채권의 상환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시행</td></tr>
<tr><td>구매기업 등급 상향 (’25.7월)</td><td>○ 팩토링 대상 구매기업의 거래 가능 등급 요건
- 기술사업평가등급, 팩토링 등급 B 등급 이상</td><td>○ 팩토링 대상 구매기업의 거래 가능 등급 상향
- 기술사업평가등급, 팩토링 등급 BB등급 이상</td></tr>
</table>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팩토링금융 제도개선은 매입채권 부실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특히 2025년 7월 시행한 상환연장제도는 기존에 만기일 다음 영업일까지 미상환시 부실처리하던 것을 자금경색, 거래처 가동중단 등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구매기업에 상환기회(30일 연장)를

제공하여 정상거래를 유도하고 매입채권의 기계적인 부실화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26년도 운용규모는 2025년 7조 859억원 대비 3,877억원(△5.5%)이 감소한 6조 6,982억원으로 편성됨.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변경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7,085,996	11,375,812	6,698,247	△387,749	△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5년에 신설되었으며,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융자금 회수액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정책자금 융자사업, 경상사업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수행함.

1. 수입 계획안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계획안은 6조 6,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7억원(△5.5%)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음. 자체수입은 4조 594억원, 정부 내부수입은 2조 6,388억원이 계상됨.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수정			%
□ 자체수입	3,734,718	3,653,313	4,059,391	324,673	8.7
▪ 융자금이자수입	387,160	387,160	425,320	38,160	9.8
▪ 기타재산수입	32,863	32,863	76,426	43,563	132.6
▪ 기타잡수입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2,735	52,735	52,714	△21	△0.0
▪ 융자원금 회수	3,261,960	3,180,555	3,504,931	242,971	7.4
□ 정부 내부수입	3,351,278	6,099,964	2,638,856	△712,422	△21.3
▪ 일반회계 전입금	1,526,924	3,825,610	2,185,442	658,518	43.1
▪ 기금 전입금	-	-	-	-	-
▪ 공자기금 예수금	1,824,354	2,274,354	453,414	△1,370,940	△75.1
□ 여유자금 회수	-	1,622,535	-	-	-
▪ 정부예금 회수	-	1,622,535	-	-	-
합 계	7,085,996	11,375,812	6,698,247	△387,749	△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지출 계획안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계획안은 6조 6,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7억원(△5.5%)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음. 사업비와 기금운영비에 각각 5조 4,523억원과 744억원, 공자기금예수이자 등 정부내부지출에 1조 1,715억원이 계상됨.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 사업비	5,313,972	9,596,888	5,452,354	138,382	2.6
▪ 융자지출	3,770,000	4,220,000	3,362,000	△408,000	△10.8
▪ 경상지출	1,543,972	5,376,888	2,090,354	546,382	35.4
□ 기금운영비	68,550	68,550	74,366	5,816	8.5
▪ 인건비	51,843	51,843	56,327	4,484	8.6
▪ 기본경비	9,358	9,358	9,325	△33	△0.4
▪ 정보화경비	7,349	7,349	8,714	1,365	18.6
□ 정부 내부지출	1,703,474	1,710,374	1,171,527	△531,947	△31.2
▪ 공자기금 예수원금	1,120,418	1,120,418	606,000	△514,418	△45.9
▪ 공자기금 예수이자	583,056	589,956	565,527	△17,529	△3.0
합 계	7,085,996	11,375,812	6,698,247	△387,749	△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내부지출 등을 제외한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획안 총지출은[145] 전년 대비 1,442억원(2.7%) 증가한 5조 5,267억원임.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계획안(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당초(A)	수정			%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5,382,522	9,665,438	5,526,720	144,198	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45) 지출 총계(6조 6,982억원)에서 정부 내부지출(공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조 1,71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Ⅱ. 검토의견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 계획안 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2004~,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원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30%~80%)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동 사업 계획액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28억 1,200만원(△20.3%) 감액된 1,681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25,354	210,940	825,646	168,128	△42,812	△20.3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125,354	203,540	536,977	157,023	△46,517	△22.9
폐업 및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보증지원	-	-	281,269	9,625	9,625	순증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	7,400	7,400	1,480	△5,920	△80.0

□ 검토의견

(1)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에 따른 적정 출연규모 산정 필요

동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대위변제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기관출연금과 재보증료 수입, 정부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지역신용보증제도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사업 정부 출연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총 예상 지출에서 총 예상 수입을 차감한 부족 금액으로 산출되는 수지차 지원방식의 사업으로,

2026년 정부 출연금은 손실보전금 6,863억원 등으로 구성된 지출 예상액 6,955억 7,500만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1,592억 6,100만원, 재보증료 수입 1,638억 2,600만원 등 수입 예상액 5,385억 5,200만원의 차액인 1,57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운영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계획(1차 추경포함)	2026 계획안
		계획	결산		
보증잔액		410,000	427,917	430,000	415,570
재보증잔액		220,867	227,885	231,254	221,387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1.79%	5.34%	4.68%	3.10%
지출(A)	계	4,040.50	12,290.82	10,920.32	6,955.75
	손실보전금	3,953.52	12,175	10,822.69	6,863.00
	관리비용 등	86.98	115.82	97.63	92.75
수입(B)	계	2,786.96	5,571.00	5,550.55	5,385.52
	재보증료	1,789.02	1,675.34	1,711.28	1,638.26
	금융기관 출연금	596.45	1,183.67	1,472.25	1,592.61
	운용수익	274.74	305.83	514.04	305.83
	기타수익	126.75	2,406.16	1,852.98	1,848.82
수지(C) = (B-A)		**△1,253.54**	**△6,719.82**	**△5,369.77**	**△1,570.23**
정부출연금(D)		**1,253.54**	**1,253.54**	**5,369.77**	**1,570.23**
실제 해당연도 수지차 (C+D)		-	△5,466.2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재보증회계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재보증잔액에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2026년도 계획안은 순지급률이 3.10%[146] 수준으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편성된 것임.

146) 2026년도 계획안의 순지급률 3.10%는 최근 5개년(2020~2024년)의 순지급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었음(3.10 = {(1.16×1) + (1.02×2) + (1.07×3) + (3.36×4) + (5.34×5)} ÷ 15).

그런데 최근 5년간 순지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 시행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이연된 부실이 현실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최근 5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2026년도 예상 순지급률이 이러한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최근 5년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 현황

(단위: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순지급율	1.16	1.02	1.07	3.36	5.34	5.48

주: 2025년 8월말 순지급율은 연환산 수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쿠폰 등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와 경기회복 가속화를 가정하더라도 과거 경기회복 경험치[147]를 고려했을 때 2026년 순지급률이 4.14 ~ 4.6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경우 2026년도 계획안 대비 2,302 ~ 3,498억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계정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데, 중앙회의 기본재산은 2023년말 4,658억원에서 2024년말 210억원으

147)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부실 최대치('11) 이후 회복기('12~'15)의 연간 순지급률 감소율 12%~22%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

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이 계획안 편성 당시보다 상승[148]하면서 각각 2,598억원과 5,466억원의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한 것에 기인함.

2025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투입(5,369억 7,700만원)으로 6월말 기준 기본재산이 3,6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에는 1,746억원 수준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6	2025(예상)
기본재산	4,658	210	3,640	1,7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또한, 2025년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출연금을 2,035억 4,000만원에서 5,369억 7,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나 이는 2025년도 순지급률을 4.68%로 가정한 것에 따른 것임. 그런데 2025년 8월말 기준 순지급률은 5.48%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쿠폰 등으로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2025년말 기준 순지급률이 5.3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5년에도 추가적인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148) 당초 2023년 순지급률을 1.79%로 예상하였으나, 결산결과 3.36%로 나타났고, 2024년에도 1.79%를 기준으로 계획안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는 5.34%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말 기준 기본재산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감소할 수 있고, 2026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이 계획안에 편성된 3.10%보다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 중앙회의 자본잠식[149]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에 대한 면밀한 예측[150]을 바탕으로 정부출연금의 적정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149)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순지급률이 4.14%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기본재산 고갈로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50)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회 재보증계정의 기타수입으로 계상되는 2025년도 새출발기금 매각 실적이 계획 대비 900억원 가량 증가한 2,729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의 적정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4131-316)

□ 계획안 현황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2017~, 보조)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유도와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46억 4,700만원(53.5%) 증액한 1,280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2,403	83,422	83,422	128,069	44,647	53.5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	19,641	19,288	19,288	22,550	3,262	16.9
혁신소상공인 도약지원	23,986	34,134	34,134	34,167	33	0.1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	30,000	30,000	34,000	4,000	13.3
글로벌 소상공인 (K-소상공인) 육성	-	-	-	9,520	9,520	순증
혁신소상공인 AI활용지원	-	-	-	11,360	11,360	순증
소상공인 온오프라인교육	-	-	-	15,000	15,000	순증
백년소상공인 육성	-	-	-	1,472	1,472	순증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6,848	-	-	-	-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로컬브랜드 창출	1,928	-	-	-	-	-

주: ‘소상공인 온온프라인교육’ 내역사업과 ‘백년소상공인 육성’ 내역사업은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세부사업에서 이관된 사업임.

□ 검토의견

(1)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신규 보조사업의 보조율 적정성 재검토 및 자부담 설정 필요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내역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특화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연결하여 소비재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00개사 지원을 위하여 95억 2,000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목)이 신규 반영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의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은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상권쇠퇴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등장 및 골목상권으로의 인바운드(inbound, 외국인의 국내여행) 관광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바, 소상공인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골목상권의 글로벌 수요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개요

□ 사업개요

○(목적)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연결하여 소비재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 의식주 생활 및 문화 분야에서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 기반의 소상공인

○(규모) 95.2억원(100개사 × 95.2백만원)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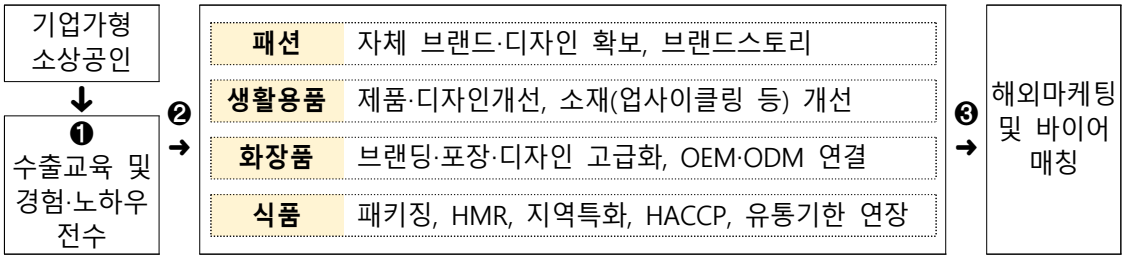
○(육성체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품목별 수출상품화, 해외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① (교육) 수출 기본교육, 선배기업의 수출 경험·노하우 등 전수

② (제품개선)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패키징·디자인 등의 개발·개선 지원

③ (마케팅) 해외용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수출상담 등 맞춤형 바이어 매칭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체계도



○(밀착관리) 분야별 수출 선배기업·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1:1 전담 멘토단* 운영, 제품개선부터 수출·금융서비스까지 집중관리

* 퇴직 무역인력(한국경제인협회 자문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 컨설턴트 활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보조율은 100%로 전액 국고로 지원될 예정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낮은 자본력이 수출시장 진출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 수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율을 100%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소상공인이 자부담 없이 교육, 제품개선 및 마케팅 지원 등

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책임성 저하 및 사업의 중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당초 계획했던 지원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일정 수준 자부담을 둠으로써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같은 세부사업 내 다른 신규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 AI 활용지원'(113억 6,000만원)[151]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혜 소상공인이 지원금액의 20%를 자부담(국고보조율 80%)하도록 하고 있어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내역사업에 대해서만 전액 국고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재정경제부)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보조율이 100%로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보조율을 낮춰 수혜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신중한 결정과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유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152]

---

151) '혁신소상공인 AI 활용지원' 내역사업은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임.
-(사업규모) 11,360백만원
-(세부산출근거)
・(기초 교육) 1,440백만원(2,000명×0.9백만원×80%)
・(심화 교육) 1,920백만원(1,000명×2.4백만원×80%)
・(실전모델 적용) 8,000백만원(500명×20백만원×80%)

152) 재정경제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p.2514-2521.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내역사업 보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부담을 둠으로써 사업 참여 소상공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조율 하향 조정[153]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53) 참고로, ‘수출지원기반활용’ 세부사업(일반회계, 3131-301)의 ‘수출바우처’ 내역사업(2026년(안), 1,502억 300만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을 차등(50~70%)하여 지원함.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3.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계획안 현황

‘소상공인성장지원’(2006~, 직접・보조・위탁)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유통물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당초 기준 전년 대비 3,561억 5,800만원(134.4%) 증액한 6,212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소상공인성장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소상공인성장지원	279,066	265,085	1,962,421	621,243	356,158	134.4
소상공인역량강화	21,396	240,674	240,674	21,603	△219,071	△91.0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7,416	2,221	2,221	-	△2,221	순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11,540	11,540	11,540	-	△11,540	순감
소상공인 협업물류지원	-	-	-	9,225	9,225	순증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	10,650	10,650	9,650	△1,000	△9.4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	-	1,565,980	579,005	△986,975	△63.0
소상공인 소비데이터 분석 및 활용	-	-	-	1,760	1,760	순증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38,714	-	-	-	-	-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	-	131,356	-	△131,356	순감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의 기금운영비성 소요를 '소진기금 기본경비'로 이관할 필요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내역사업은 소상공인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평가를 수행하는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0억원(△9.4%) 감액한 96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650백만원	9,65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10,614,000천원 -일반연구비: 4,465,000천원 -통계시스템 운영: 3,160,000천원 -인건비: 1,508,000천원 -운영비: 1,517,000천원 ○사업추진비(240-01): 36,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9,617,600천원 -일반연구비: 3,765,000천원 -통계시스템 운영: 2,980,000천원 -인건비: 2,338,000천원 -운영비: 534,600천원 ○사업추진비(240-01): 32,400천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

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154]

참고로, 동 내역사업은 2024년까지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관련 법률에 국가사무로 명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민간보조가 아닌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수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155]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비목이 변경되어 반영되었음.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사업수행 방식 변경내역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규모	40억 7,900만원	106억 1,400만원
예산 과목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사업수행 방식	민간보조	민간위탁
사업수행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의 사업수행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관 내에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15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4.8., pp.424-429.

이며,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의 확보 및 운영, 소상공인 지수 고도화, 정책연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개요

□(목적) 통합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해 소진공 정책연구소의 통계 기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정책 전문성 강화

□(기능) 소상공인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안대응 및 정책 연구·조사, 소상공인 지원사업 평가, 규제 발굴 등 수행

○(데이터 확보·운영)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집대성하여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지표를 생산, 정책에 반영

-(공공데이터) 통계청 SBR, 국세청 기업비용 공제사항 및 과세인프라, 4대보험 등 데이터 연계

-(민간데이터)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신용데이터(KCD), 나이스평가정보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구매

* ①신용카드 데이터(고객정보 포함) 및 신용공여데이터(대출금, 신용등급, 연체 등), ②경영데이터(판매,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 ③기타 플랫폼 입점 데이터 등

-(데이터운영) 기존 소진공 내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지표 및 정책성과 분석 시스템 등 필수 시스템 예산 반영

○(소상공인 지수 고도화) 소상공인 휴·폐업 지수, 경영지수, 금융지수 등 정교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고도화 작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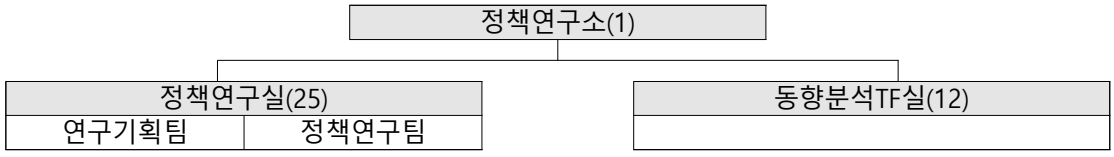
* ① 휴·폐업지수: 소상공인 창·폐업으로 소상공인 영향도 파악
② 경영지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 파악
③ 금융지수: 신용공여 데이터 등으로 소상공인의 재무구조 및 금융현황 파악

○(정책연구) 기존 데이터 부재로 인한 실증연구의 부족을 해결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행

○(정책평가) 통합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수혜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조직: 2실, 2팀, 정원 38명(정규직 13명, 계약직 25명(박사급 연구위원 15명 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2025년 9월말 기준 민간위탁사업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

소의 사무실·사무기기 임차 비용, 사무공간 이전 및 구축 공사 비용, 가구 등 사무용 집기 구매 비용, 사무실 청소 등 관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음.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의 민간위탁사업비 실집행내역(2025년 9월말)

(단위: 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공공요금및제세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전화 및 인터넷 비용 지급	1,647,400
관리용역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무실 관리비 지급	28,965,743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청소 용역 대금 지급	16,61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소독비 지급	1,83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보안 비용 지급	1,536,100
무형자산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무실 임대차 계약 보증금 집행	200,000,000
소모품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소모품비 지출	9,546,460
수수료 및 사용료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이전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지급	33,000,000
	사무실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급	9,90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무실 이전지 용도 변경 수수료 집행	3,00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무용 가구 구매 조달수수료	410,010
유형자산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무용 가구 구매	94,92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싱크대 및 진열대 제작 구매	14,722,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창고 랙 제작 구매	8,000,000
일반용역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냉난방기·전기·소방·통신 공사 대금	470,90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이사 용역 대금 지급	46,00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인테리어 및 안전관리 용역 대금 지급	53,90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도면설계 용역 대금 지급	40,00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간판 제작 및 설치 용역 대금 지급	9,600,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인물 제작 대금 지급	6,862,900
임차료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무실 임차료	64,289,57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사무기기 임차료	24,083,4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업무용 차량 임차료	2,396,3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복합기 임차료	3,289,000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커피머신·정수기 임차료	1,965,3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는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력 운용을 위한 '소진기금 인건비',

기본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소진기금 기본경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소진기금 정보화경비’[156] 등 기금운영비성 세부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음.

이 중 ‘소진기금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12개 지역본부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사무용 집기 구매, 사무공간 유지보수 등 기관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93억 2,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157]이기는 하나,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공단에 속한 조직인바, 가령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구성원 중 정규 직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은 기금운영비성 세부사업인 ‘소진기금 인건비’에서 집행되고 있음.[158]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의 일부 조직인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을 주요사업비[159]인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내역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기금)의 목적

---

156) <사업코드>
소진기금 인건비: 7277-100, 소진기금 기본경비: 7277-200,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7277-201

1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주소: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주소: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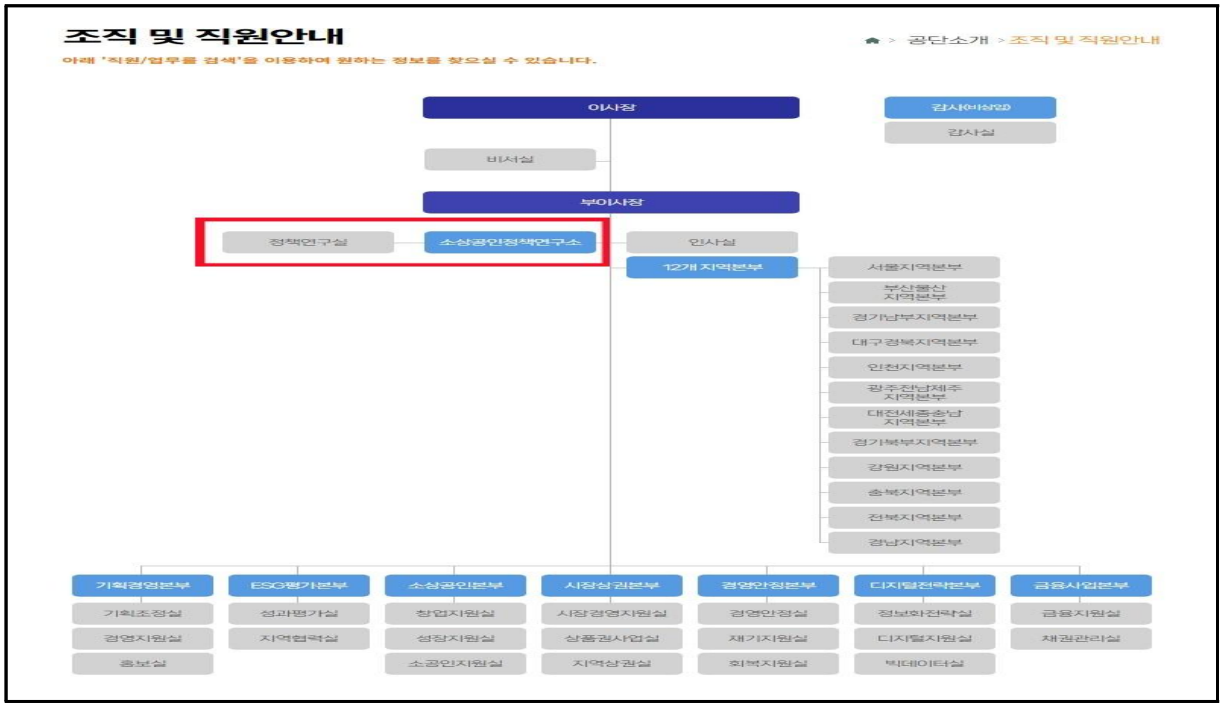
158) 비정규직(계약직) 연구 인력의 보수는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내역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상용임금)에서 집행되고 있음.

15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음.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160)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동 내역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중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의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은 기금운영비성 소요에 해당하므로 감액하되, 해당 계획액을 '소진기금 기본경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위탁사업비가 소상공인 정책 조사·연구 및 통계지표 생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직도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160)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사업수행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비 조정 필요

동 내역사업에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의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추진비(240-01목)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0% 감액한 3,24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650백만원	9,65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10,614,000천원 **○사업추진비(240-01): 36,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9,617,600천원 **○사업추진비(240-01): 32,400천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9월말 기준 사업추진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통계지표 관련 업무협의, 통합데이터 운영방안 협의, 통계자료 활용 및 통계기능 강화방안 업무협의 등의 용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161]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사업추진비 실집행내역(2025년 9월말)

(단위: 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4월	통계지표 관련 업무협의,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책연구 협의 등 6건	708,600
5월	소상공인 통합데이터 관련 업무협의, 통계자료 활용방안 협의 등 10건	1,256,600
6월	통합데이터 활용방안 협의, 소상공인 데이터 연계방안 협의 등 27건	3,672,000
7월	통계지표 관련 업무협의,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책연구 협의 등 32건	3,948,000
8월	통계자료 활용방안 업무협의, 정책연구 추진방향 업무협의 등 34건	5,195,800
9월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 통계지표 관련 업무협의 등 43건	5,878,6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161)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협의 대상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사업수행 방식인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바,[162]

민간수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기 책임하에 수탁사무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협의 등의 주체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동 내역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민간위탁사업비에도 소상공인 조사·연구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비용이 ‘사업추진비’로 계상[163]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추진비를 반영하는 것은 사업수행 방식인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다른 민간이전(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 중 사업수행주체(보조사업자 또는 수탁기관)의 보조사업비 또는 위탁사업비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의 용도로 사업추진비가 반영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바,[164] 동 내역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추

1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도 소상공인 통계전담연구센터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 106억 1,400만원 중 2,070만원이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반영되어 있음.

16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신규 반영된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1조 5,660억 8,000만원)의 경우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사업추진비(300만원)가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으나, 후속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5,790억 500

진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동 내역사업에 반영된 사업추진비는 사업수행 방식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 목적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165]

만원)의 경우 사업추진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165)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승인통계 운영 및 데이터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 설계 등을 위하여 통계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민간 전문가 소통 등 자체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에 따라 별도 예산 항목으로 사업추진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사업추진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일원화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계획안 현황

‘소공인특화지원’(2015~, 보조)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판로개척과 소공인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협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6억 2,400만원(8.9%) 증액한 1,304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소공인특화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소공인특화지원	119,870	119,870	119,870	130,494	10,624	8.9
지역소공인육성	15,620	15,620	15,620	17,400	1,780	11.4
스마트제조지원	88,200	88,200	88,200	98,000	9,800	11.1
판로개척지원	7,650	7,650	7,650	6,694	△956	△12.5
클린제조환경조성	8,400	8,400	8,400	8,400	-	-

□ 검토의견

(1) 지역소공인육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연례적 사업지연 주의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지역소공인육성’ 내역사업은 소공인 집적지(집적지구 포함)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컨설팅, 공동장비·공동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7억 8,000만원(11.4%) 증액한 174억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지역소공인육성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620백만원	17,400백만원
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3,300백만원 -317백만원×42곳×100%=13,300백만원 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2,320백만원 -(신규) 5,000백만원×50%×1차 연도 40%×2곳=2,000백만원 -(간접비) 320백만원	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2,680백만원 -317백만원×40곳×100%=12,680백만원 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4,320백만원 -(신규) 5,000백만원×50%×1차 연도 40%×1곳=1,000백만원 -(기존) 5,000백만원×50%×2차 연도 60%×2곳=3,000백만원 -(간접비) 320백만원 다. (소공인실태조사) 4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내내역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166]

16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

를 구축하여 소공인의 협업 및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복합지원센터의 구축·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식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① 2025~2026년에 구축되는 복합지원센터(2곳)의 2차 연도 구축비 30억원과 ② 2026년부터 새로 구축이 진행되는 신규 복합지원센터(1곳)의 1차 연도 구축비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와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운영비 3억 2,000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목)이 반영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공모 결과 전남 무안군과 경북 경산시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신규 구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역별 사업비 편성 현황(2025~2026년)

(단위: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총사업비)
	2025년	2026년	소계	2025년	2026년	소계	
전남 무안군	1,000	1,500	2,500	1,000	1,500	2,500	5,000
경북 경산시	1,000	1,500	2,500	600	1,900	2,500	5,000
합계	**2,000**	**3,000**	**5,000**	**1,600**	**3,400**	**5,000**	**1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 9월말 기준 보조금 실집행현황을 살펴보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비용 20억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실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소공인육성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5년 9월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지역소공인육성	15,620	15,620	15,620	12,261
민간경상보조(320-01)	13,620	13,620	13,620	12,26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000	2,000	2,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나, 올해 교부된 보조금의 대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67]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16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사업비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3~2024년 추진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곳(서울 종로구, 전북 부안군, 강원 원주시) 신규 구축 또한 보조금의 실집행 부진 및 사업지연으로 당초 계획했던 구축 완료 시점을 넘겨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던 사례[168]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지방자치단체[169]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감안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복합지원센터 1곳 신규 구축비용 10억 원(1차 연도분)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70]이 보조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71]에서 자치단체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하되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 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16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 2025.8., pp.263-269.
169) 강원 영월군, 대전 대덕구, 경북 영덕군
17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 ② (생 략)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하 생략)
171) 재정경제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112-113.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례적 사업지연 및 보조금의 이월·재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결과에만 근거하여 신규 구축 소요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규 대상지역 선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공인복합지원센터(13개소) 구축 현황

사업연도	시·도	집적지구	분야	완공시기
2019년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섬유제품	2021.3.
	서울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의류봉제	2026.10.(예정)
2020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	2022.12.
	경기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	2022.12.
2021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식료품	2023.12.
2022년	경기 화성시	동탄5동	반도체 가공	2023.12.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의류봉제	2023.12.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의류봉제	2023.12.
2023~2024년	서울 종로구	종로구	의류	2024.12.
	전북 부안군	진서면	식료품	2025.12.(예정)
	강원 원주시	우산동	기타기계장비	2025.12.(예정)
2025~2026년	전남 무안군	청계면	비금속광물제품	구축 중
	경북 경산시	진량읍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장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 계획안 현황

‘소상공인재기지원’(2015~, 보조)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개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대비 768억 4,300만원(28.0%) 증액한 3,516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소상공인재기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소상공인재기지원	179,594	274,806	350,455	351,649	76,843	28.0
희망리턴패키지	168,386	245,010	311,492	305,550	60,540	24.7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5,008	14,827	14,827	15,312	485	3.3
손실보상 한시지원	-	10,400	10,400	8,800	△1,600	△15.4
회복상담·채무조정 제도운영	-	4,569	6,613	4,569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	-	7,123	12,418	5,295	74.3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	-	-	5,000	5,000	순증

□ 검토의견

(1) 손실보상 한시지원: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반영 필요

‘손실보상 한시지원’ 내역사업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하여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6억원(△15.4%) 감액한 88억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손실보상 한시지원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4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8,8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가. 손실보상금: 5,000백만원 나. 손실보상 운영: 5,400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2,950백만원 -민원센터: 1,200백만원 -손해사정: 1,045백만원 -운영경비: 205백만원	가. 손실보상금: 5,000백만원 나. 손실보상 운영: 3,800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2,950백만원 -민원센터: 200백만원 -손해사정: 450백만원 -운영경비: 2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172]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기준 총

17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8.5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115만개사(321.5만건)에 지급되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시지원 사업개요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방역조치①를 이행하여 '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②

○(기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19년 대비 '21년 또는 '22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① (보정률) <'21.3Q>80% → <'21.4Q>90% → <'22.1·2Q>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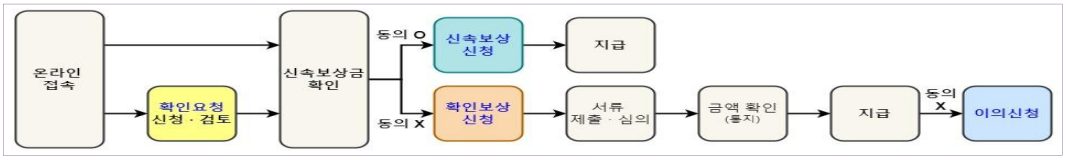
② (상·하한액) <'21.3Q>1억원·10만원 → <'21.4Q>1억원·50만원 → <'22.1·2Q>1억원·100만원

□(집행) 국세청·지자체 행정자료로 보상금 사전산정·지급하는 ❶신속보상, 증빙자료로 회계법인 등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❷확인보상 운영

* ▲(확인요청) 신속보상 결과 보상금 0원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대상 여부 재확인

▲(이의신청) 확인보상 / 확인요청 결과에 불복 시 제기 가능한 행정 단계 최후의 불복절차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실적) '24년 누계 총 8.56조원, 115만개사(321.5만건) → 업체당 평균 7.4백만원

구분	합계('21~'24)	'21	'22	'23	'24
지급액(A)	8.56조원	1조 8,218억원	6조 2,163억원	4,726억원	543억원
지급건수(B)	321.5만건	60.9만건	236.4만건	21.8만건	2.4만건
건당 평균지급액(A/B)	266만원	299만원	263만원	216만원	226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의 경우 9월까지 1,774건의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당초 계획액 50억원이 모두 소진되었는바,

---

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2025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급건수	-	482	311	80	26	399	116	164	196	1,774
지급액	-	1,202	610	123	83	1,132	333	630	887	5,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미신청 소상공인에게 연말까지 지속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손실보상 선지급융자 상환액[173]이 연초 계획 대비 초과 수납되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였다고 설명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내역(2025년 9월)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감 (B-A)
수입	관	항	목					
	수입총계					11,375,812	11,385,812	10,000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180,555	3,190,555	10,000
		75 융자원금회수				3,180,555	3,190,555	10,000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713,446	1,723,446	10,000
지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목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감 (B-A)
	지출총계					11,375,812	11,385,812	10,000
	4100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8,771,242	8,781,242	10,000
		4131 소상공인지원(기금)				2,646,112	2,656,112	10,000
			319 소상공인재기지원			350,455	360,455	10,000
				손실보상한시지원		10,400	20,400	10,000
					320-01 민간경상보조	10,400	20,400	1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법률에 따른 의무적 지출의 성격을 지니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5년)[174]를 감안

173) '소상공인 선지급 융자'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미리 융자(대출) 형태로 지급하고, 추후 실제 손실보상금 확정 시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임.

174)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할 때 2027년까지 미신청분(7.5만건, 1,617억원)[175]에 대한 지속적 손실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손실보상금 지급 소요로 5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바, 올해 당초 계획액의 2배에 달하는 기금운용계획 증액 변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 손실보상금 지급 소요 반영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손실보상금 지급 소요가 올해 5월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899건, 20억 1,800만원)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산출되었다고 설명하며,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확보된 100억원이 연도 내에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측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추이 예측(2025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지급건수	3,682(旣지급)	1,075(예측)	538(예측)	125(예측)	5,420(예측)
지급액	6,766(旣지급)	2,000(예측)	1,000(예측)	234(예측)	10,000(예측)

주: 9월 지급건수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9.17.~9.30. 지급된 실적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3년과 2024년에 실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연 사유 조

(이하 생략)

175)

손실보상금 미신청 현황

구분	'21.3분기	'21.4분기	'22.1분기	'22.2분기	합계
미신청건수	0.8만건	1.8만건	3.5만건	1.4만건	7.5만건
미지급액(백만원)	15,402	31,808	95,936	18,560	161,70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도의 존재 혹은 손실보상 대상 여부 미(未)인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는바,[176] 향후 정부의 제도 안내에 따라 뒤늦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따라서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조속히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법률에 따른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법률에 근거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적극 반영 필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42,2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8,500만원(3.3%) 증

176) 2023년 조사대상 사업체 9,583개 중 6,605개(68.9%)가 ‘손실보상제도 미인지’를 손실보상 신청 지연 사유로 응답하였고, 2024년 조사대상 사업체 948개 중 741개(78.2%)가 ‘손실보상 대상자 미인지’를 신청 지연 사유로 응답하였음.

액한 153억 1,2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827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15,312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가. 기존지원자: 22,600명×38천원×12개월=10,305백만원 나. 신규지원자: 17,000명×38천원×7개월=4,522백만원	가. 기존지원자: 23,200명×37.25천원×12개월=10,362백만원 나. 신규지원자: 19,000명×37.25천원×7개월=4,95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177]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178]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준보수 등급별로 납부한 보험료(보험료율 2.25%)의 일부를 환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17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7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2025년 9월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7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18,840	22,808	31,014	37,261	43,023	47,563	53,350	58,240
고용보험료 지원 수혜 소상공인	2,489	5,547	10,145	14,679	18,012	24,884	31,162	35,133

주: 7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9월에 지급됨(약 2개월 소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및 금액(2025년)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	지원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주: 월 보수액(기준보수)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3년마다 고시하고,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개정(2024.7.10.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179]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1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이하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에 관한 문제제기[180]가 있었음.

아울러, 2024년 7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고용노동부)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 0.66%보다 1.7배 높게 나타났으며,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근로복지공단)이 0.52%(430만 명 중 2만 2,738명 가입)에 그쳐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바,[18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됨.[182]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내용(2025년)

구분	지원내용
서울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5년간 납부 보험료의 30~50% 환급지원 * 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지원 -신청방법: 산재보험 가입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부산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5년간 지원(생애 1회) -지원범위: 납부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환급지원 -신청방법: 산재보험 가입 후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금 신청
대전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1인 영세 자영업자 (신규 신청은 지원일로부터 3년간, 재신청은 2년간 지원) -지원내용: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50% 지원(전 등급 동일), 분기별 지급 -지원절차: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

자료: 지자체별 사업 공고문

18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2024.10.8.) 회의록, pp.147-148.
181) 참고기사
-경남매일신문,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0.52%'”, 2024.10.3.
(URL: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9364)
-뉴시스, “허성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1%도 안된다"”, 2024.10.2.
(URL: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02_0002906284)
18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시, 전라북도, 광주시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 중임. 대구시, 충청북도, 세종시,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도, 울산시, 제주도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 중임.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산재 발생 시 안정적으로 회복·복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재정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국정과제[183]로 확정했으며,[184]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관련 실태조사 외에 산재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185]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

183)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18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2025.9.16.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120, 2025.9.
185)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10.12.

조체계 수립 등 보험료 지원제도를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 개요

○ 의의: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산업재해에 노출된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보험(근로복지공단 수행)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산재보험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가입의무	의무가입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 가입대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기준보수: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월 보험료: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

-2025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

○ 보험혜택: 업무쌍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52~67%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례비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직업생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개시 ‘사회안전망 3종 완성’”, 2025.6.17.

6.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4131-327)

□ 계획안 현황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3~, 보조)은 민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수급하여 AI 기반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서비스 및 정책분석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억 3,400만원(△10.0%) 감액한 2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345	2,345	2,345	2,111	△234	△10.0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재정소요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동 사업은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경

영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된 상권 데이터를 취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에 분산된 상권DB의 취합 및 표준화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분석 및 경영진단, 정책수립자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 및 사업효과 분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된 상권 데이터를 취합해 맞춤형 정보 제공
*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상권정보(매출액, 유동인구, 동종업체 수 등) 제공
※ 예산: ('23년) 9,189백만원, ('24) 2,345백만원, ('25) 2,345백만원

□ 구축방향
○ (데이터 구축) 민간·공공에 분산된 상권DB의 취합·표준화를 통해 소상공인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DB 종류를 현행 11종(상가, 유동인구, 매출 등)에서 18종 이상(+POS, 배달 등)으로 확장하고, 소상공인 데이터 규모 확대(200만→650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보와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DB간 연계 강화
○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자에게 필요한 정책통계, 사업 효과분석 서비스 지원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지능형 상권분석으로 고도화해 소상공인별 경영상태 진단, 맞춤형 서비스(공공 지원사업, 민간 서비스 추천 등) 제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정량지표에 기반한 지원사업 효과분석 서비스 제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구매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반영되었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구축이 완료된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반영되었는바, 2025도년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작성되었음.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금운용계획 산출근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9,189백만원	2,345백만원	2,34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7,698백만원 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5,190백만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3,177백만원) -서비스 포털 구축(1,770백만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243백만원) 나. 맞춤형 서비스 구현(2,508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037백만원 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37백만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1,03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2,345백만원 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345백만원) -유지보수(2,345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1,491백만원 가. 데이터 구매(1,491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1,308백만원 가. 데이터 구매(1,30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동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변경하여 보조사업비 중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명목으로 반영된 관리용역비 등을 감액하였는데,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186] 사업비 잔여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함.

186)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조사('25.8.11.~9.12.) 결과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응답자의 18%)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함.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부추진계획 변경내역(2025년 9월)

(단위: 천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직접 사업비	관리용역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2,184,000	2,162,000	△22,000
	일반용역비	빅데이터 플랫폼 종합홍보 비용	20,000	10,000	△10,000
간접 사업비	수수료 및 사용료	빅데이터 플랫폼 용역 관련 조달수수료, 플랫폼 알림서비스 수수료	20,000	26,000	6,000
	지급수수료	선정평가 및 자문회의 수당 등	6,600	13,200	6,600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 관련 문서발송 및 계약인지세	62,555	30,155	△32,400
	광고선전비	**빅데이터 플랫폼 광고 홍보**	-	-	**51,840**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2,940	900	△2,040
	임차료	평가 및 협의체 운영 장소 임차, 사무기기(PC, 프린터 등), 전산 IDC센터 상면공간 임차	13,400	15,400	2,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다만, 당초 세부추진계획에 빅데이터 플랫폼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업비 변경을 통한 광고선전비 항목 신설은 불요불급한 지출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기금운용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재정경제부)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재정수요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음에도 2025년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구축사업이 진행되었던 2024년과 동일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2026년 예산을 2025년 대비 일정 수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187]

187) 재정경제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pp.2544-2549.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일부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출근거 역시 재정수요 산출근거의 명확성이 충분히 제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 세부내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45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2,110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 플랫폼 운영·유지관리(921백만원) -직접인건비(응용SW개발자, 41MM): 290백만원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0%): 407백만원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39백만원 -사업원가(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837백만원 -최종원가=사업원가×부가세(10%)= 921백만원	○ 플랫폼 운영·유지관리(687백만원) -직접인건비: 217백만원 *응용SW개발자: 2.2MM, 데이터분석가: 0.1MM, UI/UX개발자: 0.3MM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0%): 304백만원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04백만원 -사업원가(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625백만원 -최종원가=사업원가×부가세(10%)= 687백만원
○ 플랫폼 운영 데이터 구매(450백만원) -(매출 DB) 300백만원×1년=300백만원 -(유동인구 DB) 150백만원×1년=150백만원	○ 플랫폼 운영 데이터 구매(450백만원) -(매출 DB) 200백만원×1=200백만원 -(유동인구 DB)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POS DB)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SNS DB) 50백만원×1년=50백만원
○ 플랫폼 인프라(클라우드 등) 유지관리 (974백만원) -(클라우드) 66백만원×12개월=792백만원 -(H/W, S/W) 182백만원×1년=182백만원	○ 플랫폼 인프라(클라우드 등) 유지관리 (974백만원) -(클라우드) 63.8백만원×12개월=766백만원 -(H/W, S/W) 208백만원×1년=20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가령, ‘플랫폼 운영・유지관리’ 항목의 경우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라 공표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기초하여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플랫폼 운영 데이터 구매’ 항목 및 ‘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항목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부 산출내역의 근거로 항목별로 민간업체 1곳의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이나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과 유사한 다른 서비스와의 투입비용 비교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산출근거의 객관성 또는 명확성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188]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요한 재정소요를 파악 후 이에 기반하여 작성되기보다 임의로 전년대비 10% 감액한 세부사업 규모에 맞춰 사후적으로 산출근거가 작성된 것을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소요의 산출근거가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 적용 및 유사 사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재정소요가 기금운용계획안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해 보임.

188)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개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으며, 2026년도 계획안에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클라우드 운영'의 경우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 후 월별 클라우드 서버 사용량 모니터링 실시, 서버 자원 최적화 및 트래픽 관리를 통해 자원 사용 감소 및 클라우드 구독비를 절감하였으며, '상용 H/W, S/W 유지관리'의 경우 보안·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자산취득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된다고 설명함.

7.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 계획안 현황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2002~, 보조・민간위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89억 4,000만원(21.3%) 증액한 5,64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6년도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2,796	465,205	1,905,130	564,145	98,940	21.3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90,748	458,673	457,958	67,210	17.2
상생페이백(한시)	-	-	1,370,000	-	△1,370,000	순감
특성화시장 육성	30,100	35,720	35,720	-	△35,720	순감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853	13,853	13,853	-	△13,853	순감
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	4,427	6,427	-	△6,427	순감
시장경영패키지지원	16,142	16,142	16,142	-	△16,142	순감
전통시장 홍보 및 조사평가	-	4,315	4,315	-	△4,315	순감
전통시장 홍보	2,906	-	-	-	-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5,620	-	-	-	-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조사 및 평가	700	-	-	-	-	-
지역상권역량강화	1,700	-	-	-	-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427	-	-	-	-	-
지역상권육성	-	-	-	37,800	37,800	순증
전통시장육성	-	-	-	30,700	30,700	순증
시장상권인프라조성	-	-	-	37,687	37,687	순증

□ 검토의견

(1)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품권 미판매·미회수 및 추경 편성을 감안하여 상품권 발행규모 재검토 필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89]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당초 계획 기준 전년 대비 672억 1,000만원(17.2%) 증액한 4,579억 5,8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2025년과 동일한 5조 5,000억원

1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에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류 상품권 발행 규모가 1.7조원(2025년)에서 1조원(2026년)으로 줄어들고 디지털 상품권 발행 규모는 3.8조원(2025년)에서 4.5조원(2026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디지털 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5%) 대비 2% 포인트 확대(5→7%)되어 할인보전금 지급 소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당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0,748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457,958백만원(민간경상보조, 320-01)
-지류(비할인): 0.8조원×발행・운영 수수료 2.8%=22,400백만원 -지류(5% 할인): 0.9조원×(할인율 5%+ 발행・운영 수수료 2.8%)=70,200백만원 -디지털(5% 할인): 2.3조원×(할인율 5%+ 발행・운영 수수료 0.58%)=128,340백만원 -디지털(10% 할인): 1.5조원×(할인율 10%+ 발행・운영 수수료 0.58%)=158,700백만원 -기타운영비: 11,108백만원	-지류(비할인): 0.4조원×발행・운영 수수료 2.8%=11,200백만원 -지류(5% 할인): 0.6조원×(할인율 5%+ 발행・운영 수수료 2.8%)=46,800백만원 -디지털(7% 할인): 2.83조원×(할인율 7%+ 발행・운영 수수료 0.53%)=213,099백만원 -디지털(10% 할인): 1.67조원×(할인율 10%+ 발행・운영 수수료 0.53%)=175,851백만원 -기타운영비: 11,00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2025년 9월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은 지류 상품권 5,791억원, 디지털 상품권 2조 1,529억원으로, 각각 발행 목표 대비 34.1%, 56.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총 2조 7,320억원, 49.7%).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2025년 9월말)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지류	-	-	-	308,700	50	300	-	257,000	13,000	579,050
디지털	661,296	213,372	117,472	113,126	162,120	175,016	203,408	213,312	293,779	2,152,90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5년 9월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누적 미판매액(발행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상품권)은 2,948억원, 누적 미회수액(판매는 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은 1조 131억원으로, 누적 미판매액 및 미회수액이 1조 3,079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품권 발행에 투입된 기금 재정의 상당 부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누적 발행액 (A)	판매액	누적 판매액 (B)	누적 미판매액 (A-B)	회수액	누적 회수액 (C)	누적 미회수액 (B-C)	누적 미판매+미회수액 (A-B)+(B-C)
2021년	31,573	156,331	31,721	149,323	7,008	33,809	143,034	6,289	13,297
2022년	35,391	191,722	27,034	176,357	15,365	25,260	168,294	8,063	23,428
2023년	20,242	211,964	28,537	204,894	7,070	30,563	198,857	6,037	13,107
2024년	42,880	254,844	43,092	247,986	6,858	39,692	238,550	9,436	16,294
2025년 (9월)	27,320	282,164	31,230	279,216	**2,948**	30,535	269,085	**10,131**	**13,079**

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과 판매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므로 온누리상품권 미판매액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한국조폐공사 발행) 후 미판매액(금융기관의 미판매 보유분)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상생페이백(한시)'(1조 3,700억원),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645억원),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34억 2,500만원) 등 3개 내(내)역사업이 반영되었음.

각 내(내)역사업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한 소비 진작이며, 이에 따라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또는 환급) 규모는 당초(5조 5,000억원) 대비 1조 3,879억 2,500만원(25.2%)이 증가하

여 총 6조 8,879억 2,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온누리상품권 환급 관련 2025년도 제1회 추경 사업개요

구분 (계획액)	상생페이백(한시) (1조 3,700억원)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645억원)	특별재난지역 환급 지원 (34억 2,500만원)
사업목적	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시 소비증가분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 촉진	경기 악화,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환급행사로 소비 활성화 분위기 조성	지역 주요상권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진작 행사로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재기회복의 계기 마련
지원대상	상생페이백 환급 신청자 중 '25년 하반기 특정월 카드소비 증가 고객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위치한 점포	특별재난지역(49개 시·군·구 등)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산청, 하동, 울주, 포천, 무안, 가평,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지원내용	'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1인당 30만원, 월 10만원 한도)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5~9월(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환급, 총 20회, 회차별 인당 2만원 한도)	특별재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4개월간(8.24.~12.31.)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환급) * 예산 소진으로 10.15. 조기마감
온누리상품권 환급 목표	1조 3,200억원	645억원	34억 2,500만원
환급 실적 (10월말)	2,414억 3,500만원	642억원	33억 8,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한시)' 내역사업의 경우 10월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개시되었는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415만명으로, 2,414억원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었음.[190]

190)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상생페이백, 9월 환급(페이백) 대상자 415만명에 총 2,414억원 지급", 2025.10.17.

또한, 11월 30일까지 환급(페이백) 신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1,300만명 이상의 신청자를 확보하여 연말까지 총 1조 1,462억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추경 사업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환급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연내 실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사업이 이월되어 내년까지 상품권 환급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추가로 발행·판매되는 상품권의 규모와 추경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환급되는 상품권 규모를 감안할 때 시중 수요를 초과하는 상품권 과잉 공급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된 상품권 미판매액 및 미회수액이 늘어날 우려도 있어 보이는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도 상품권 발행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191]이 있었음.

미판매 또는 미회수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라는 제도 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상품권 발행·판매에 투입되는 기금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귀결될 수 있음.

따라서 동 내역사업은 누적된 미판매·미회수액 및 추경 편성에 따른 환급 실적 등을 감안하여 2026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pp.569-572.

(2) 지역상권육성: 시범사업 결과 도출 전 사업규모 확대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지역상권육성’ 내역사업은 지역자원과 성장잠재력 높은 유망 상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고 골목상권의 역량강화를 종합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글로컬 상권(6곳), 소규모 골목상권(50곳) 지원 및 상권기획자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320-01목) 278억원과 지역대표 상권(10곳) 지원을 위한 사업출연금(350-02목) 100억원 등 총 378억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지역상권육성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000백만원	37,800백만원
<상권기획및역량강화> 가. 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출연금) -시범 2곳×2,000백만원×50%=2,000백만원(당초) -2곳 내외×2,000백만원×50%=2,000백만원 (1차추경)	<지역상권육성> 가. 글로컬 상권 15,0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6곳×5,000백만원×50%=15,000백만원 나. 지역대표 상권 10,000백만원(사업출연금) -10곳×2,000백만원(1년차)×50% 이상= 10,000백만원 다. 소규모 골목상권 12,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50곳×500백만원×50% 이상=12,500백만원 라. 상권기획자 육성 3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50명×6백만원=3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이 목적 및 지원요건, 추진주체, 부처간 협업 및 체계적 관리 등의 측면에서 기존 ‘상권활성화 사업’[192]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상권활성화 사업’과 ‘지역상권육성’ 사업 간 비교(2026년(안))

구분	상권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육성
기금/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방식	자치단체보조	민간보조, 출연
사업규모 (2026년(안))	-자율계정: 241억 3,800만원 -제주계정: 20억원	378억원
목적 및 지원요건	-쇠퇴 상권의 회복에 초점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자율상권구역(지역상권법):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지역특색과 잠재력을 보유한 상권의 글로벌·지역거점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 마련
	-중형 이상 상권 위주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400개 이상 점포 자율상권구역(지역상권법): 100개 이상 점포	-대형(글로컬 상권), 중형(지역대표 상권), 소형(소규모 골목상권) 상권으로 구분하여 세밀한 규모별 지원체계 마련
추진주체	-중앙정부·지자체의 사업편성 및 비영리법인(상권조합, 상권관리기구 등)을 통한 집행기구 중심 추진	-민간 전문법인·로컬크리에이터 등이 상권발전전략의 기획·실행을 주도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재정·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협업으로 추진
부처 간 협업 및 체계적 관리	-개별지원·지역자율적 관리	-관계부처(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등) 사업 연계·협업을 통해 관광·산업·문화와 접목하여 소비자·관광객 모두가 찾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실태조사·상권분석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사업관리 추진

주: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3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8.2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올해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3개 관계 부처[193]와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194]

192) 회계/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코드: 4154-305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3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됨.
193)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지역상권활력지원 시범사업(2025년) 개요

□ (사업목적)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원, 매력적인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 (지원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수 50개 이상을 포함하는 예비상권구역의 기초지자체 및 주관기관(상권기획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지정

** (상권기획자)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 수행

□ (선정규모) '25년 신규 2곳, 1곳당 최대 20억(국비 50:지방비 50)

□ 지원내용

○(지역상권활력지원) 상권구역의 S/W전략(상권브랜딩,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실행부터 H/W구축・개선(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까지 민간이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의 실행 지원

< 사업 예시 >

◆ 지역의 고유자원(문화, 음식 등)을 활용하여 로컬컨텐츠를 개발하고, 빈점포 리모델링 및 청년 창업, 기존점포 리뉴얼 등으로 지역특색이 반영되는 상권 조성
◆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창작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유형 공간 조성
◆ 지역 브랜딩을 위한 상품개발, 지역축제 개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연계사업) 수립된 전략 맞춤형으로 연계사업의 동시 인정 또는 우대

* (예시) 지역상권활력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특화재생 등

-단, 개별사업별 법령 및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선정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고・선정규정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시범사업 공모 결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5곳이 선정되었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20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액 반영된 20억원[195] 등 총 40억원이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됨.

194)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대상지 2곳 선정", 2025.6.17.

195)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액 반영된 20억원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10곳)을 포함하는 컨소시엄(기초 지자체+주관기관)을 공모 대상으로 함.

-특별재난지역(10곳) 현황: 전남 무안군, 경기 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지역상권활력지원 시범사업(2025년) 선정 결과 및 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선정일자	출연금 교부금액	출연금 교부일자
당초	강원 영월군	주식회사 휘영	2025.6.17.	1,000	2025.9.4.
	부산 금정구	어번데일벤처스㈜		1,000	2025.9.2.
추경	경북 청송군	(사)지역과소셜비즈	2025.8.8.	800	2025.9.30.
	경북 안동시	풍산다움 사업단		500	
	경기 포천시	㈜인피루트		700	
합계				4,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 9월말 기준 출연금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각 컨소시엄으로 교부된 출연금의 실집행에 있어 상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시범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지역상권활력지원 시범사업 실집행현황(2025년 10월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지역상권활력지원	4,000	4,000	4,000	672.9
사업출연금(350-02)	4,000	4,000	4,000	672.9
강원 영월군	1,000	1,000	1,000	0.9
부산 금정구	1,000	1,000	1,000	659.3
경북 청송군	800	800	800	5.2
경북 안동시	500	500	500	7.5
경기 포천시	700	700	7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상권육성’ 사업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교부된 출연금의 실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지역상권활력지원’ 시범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바, 그럼에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반영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임.[196]

아울러, 올해 선정된 컨소시엄 5곳의 사업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사업기간(2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국비 포함)를 나누어 투입할 예정임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된 출연금 전액을 일시에 교부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바, 시범사업의 집행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임.

지역상권활력지원 시범사업(2025년) 컨소시엄별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연차	국비	기초지자체	민간자부담	계
강원 영월군	2025.6.~2027.6.	1차	500	500	25	1,025
		2차	500	500	25	1,025
		계	1,000	1,000	50	2,050
부산 금정구	2025.7.~2027.7.	1차	613	578	35	1,226
		2차	387	352	35	774
		계	1,000	930	70	2,000
경북 청송군	2025.8.~2027.8.	1차	400	400	30	830
		2차	400	400	220	1,020
		계	800	800	250	1,850
경북 안동시	2025.8.~2027.8.	1차	250	250	55	555
		2차	250	250	55	555
		계	500	500	110	1,110
경기 포천시	2025.9.~2027.8.	1차	437.51	437.51	51.68	926.7
		2차	262.49	262.49	88.384	613.364
		계	700	700	140.064	1,540.06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따라서 ‘지역상권육성’ 내역사업은 올해 추진되는 관련 시범사업의

19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역상권육성 사업 추진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결과를 도출하고, 사업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진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추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바, 사업규모 확대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197]

197)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거점 상권 육성을 위한 사업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또한,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등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임.

(3) 시장상권인프라 조성(전통시장 안전점검): 민간위탁사업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내역사업은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마련하며, 시장경영·홍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376억 8,7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내역사업 산출근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0,780백만원	37,687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853백만원 가. (전통시장 안전점검) 3,243백만원 -500개×6.48백만원=3,243백만원 나.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8,610백만원 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2,000백만원	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8,459백만원 -(전통시장 안전점검) 500개×6.48백만원 =3,243백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80개×평균 236백만원×50~70%=13,216백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2,000백만원
<특성화시장 육성> 가. (청년상인 육성) 6,470백만원	나. (청년몰 활성화) 2,000백만원 -10곳×400백만원×50%=2,000백만원
<시장경영패키지> 16,142백만원 -40백만원×400곳+50백만원(여비)=16,142백만원	다. (시장경영지원) 14,528백만원 -362곳×40백만원+50백만원(여비)=14,528백만원
<전통시장 홍보 및 조사평가> 4,315백만원 가. (전통시장 홍보) 2,615백만원 나. (실태조사) 1,700백만원	라. (시장상권 홍보 및 조사평가) 2,700백만원 -우수시장 박람회 600백만원 + 지역상품전시회 400백만원 + 실태조사·평가 1,000백만원 + 지역상권 실태조사 700백만원 = 2,7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 중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건축물 및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점검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내용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19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을 화재보험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사업 용역 계약 현황(2025년)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수요기관
2025년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사업 용역	2,803,000,000원	2025.3.5. ~2025.12.31.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32억 4,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동일한 규모로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2025년 동 내역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화재보험협회 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사

1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업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위탁사업비 지출내역(2025년 9월말)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자금이체금액	건명	수령인명
2025-02-27	298,723,600	2025년 사업비 교부(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민간위탁))(2.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04-03	2,803,000,000	2025년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사업 용역 선금 지급	(사)한국화재보험협회
2025-05-27	128,024,400	2025년 사업비 교부(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_민간위탁)(5.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19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이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

19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00] 선정된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민간수탁기관의 의무나 책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201]

전통시장의 화재·풍수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상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소상공인시장

---

200)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재정경제부)에서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9쪽).

20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진흥공단을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사업비를 지출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임.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무 위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위탁 사무의 내용, 위탁 비용 지급의 기준,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이 불명확하게 되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보임.

참고로, 올해 민간위탁사업비 실집행내역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로 보기 어려운 광고, 교육, 컨설팅 및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반영된 민간위탁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동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안전점검 사무 위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민간위탁사업비 중 불필요한 소요를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임.

전통시장 안전점검 민간위탁사업비 실집행내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위: 원)

지출일자	결의명	지출금액	거래처
2025-03-25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종편(채널A, MBN) 송출 광고료 및 수수료 지출	25,00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22,727,273	한국언론진흥재단
		2,272,727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06-23	2025년 전통시장 안전교육 교재 제작	1,100,000	디자인 숲
2025-07-18	전통시장 사회재난 대응 컨설팅 용역 대금 지출	11,000,00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2025-08-19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안전관리 전문교육 용역비 지출	22,000,000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2025-08-19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안전관리 전문교육 임차료 지출	4,125,000	㈜소망투어
2025-09-09	'24~'25년 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2차년도) 선금 지급_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5,720,000	세림디에스지
		4,180,000	아이티앤씨
		1,100,000	(주)솔리데오시스템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참고자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 규모기준(국제비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한국</th><th>일본</th><th>미국</th><th>EU(권고안)</th></tr>
<tr><td rowspan="6">중소기업</td><td>제조업</td><td>매출액 1,800억원 ~800억원 이하</td><td rowspan="3">300명 또는 자본금 3억엔 (약 30억원)</td><td>종업원 500명~ 1,500명 미만</td><td rowspan="6">250명 미만&매출액 5천만 유로(약 747억원) 미만 또는 총자산 43백만 유로(약 642억원) 미만</td></tr>
<tr><td>광업</td><td>매출액 1,000억원 이하</td><td>5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6백만불</td></tr>
<tr><td>건설업</td><td>매출액 1,200억원 이하</td><td>업종별 매출액 6~28.5백만불 미만</td></tr>
<tr><td>도매업</td><td rowspan="2">매출액 1,200억원 이하</td><td>100명 또는 자본금 1억엔 (약 10억원)</td><td>종업원 100명 미만</td></tr>
<tr><td>소매업</td><td>50명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약 5억원)</td><td>업종별 매출액 6~23.5백만불 미만</td></tr>
<tr><td>서비스업</td><td>매출액 1,000억원 ~400억원 이하</td><td>100명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약 5억원)</td><td>업종별 매출액 4~30백만불 미만</td></tr>
<tr><td colspan="2">소기업</td><td>제조업140억원~80억원 이하, 운수업 10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부동산업 40억원 이하,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이외 업종 15억원 이하</td><td>소규모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20명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5명 미만</td><td></td><td>Small 기업 : 50명 미만 & 매출 또는 총자산 1천만 유로(약 150억원) 미만
Micro 기업 : 10명 미만 & 매출 또는 총자산 2백만 유로(약 30억원) 미만</td></tr>
</tabl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4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정의

국제기구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
World Bank	300명	15백만불	15백만불
MIF-IADB(미주개발은행)	100명	3백만불	-
African Development Bank	50명	-	-
Asian Development Bank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없음		
UNDP(유엔개발계획)	200명	-	-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 창업·벤처</td><td>○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등
-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4년간(청년창업·청년창업벤처는 5년간) 취득세 75%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재산세 50～100%(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벤투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인이 벤투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의 5% 법인세 공제</td></tr>
<tr><td>□ 경영안정</td><td>○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1억원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table><tr><th>소기업</th><th>중기업</th></tr><tr><td>• 도매업·소매업·의료업(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td><td>•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일반서적 출판업 : 10%</td></tr></table>※ 장수성실기업은 10% 추가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일부(200～600만원) 공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td></tr>
<tr><td>□ 연구·인력개발</td><td>○ 연구·인력개발비의 25～50% 법인세(소득세) 공제
- 일반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30～40%,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40～50%, 그 밖의 경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름
○ 특허권 등 기술 취득금액의 10% 및 대여금액의 25%,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소득세) 공제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추후 익금 산입)
○ 연구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는 3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td></tr>
</table>

구 분	지 원 내 용
□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지식재산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기본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은 12%) + 투자증가분 10% 세액공제(추가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 후 국내 복귀 시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100%(50%) 감면
□ 고용	○ 상시근로자 등 고용증대 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수도권 내 850만원(청년·장애인 등 1,450만원), 수도권 밖 950만원(청년·장애인 등 1,550만원) 공제 ○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 감면(200만원 한도) ○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 10%)를 법인세(소득세)공제
□ 상생협력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를 세액공제
□ 가업승계	○ 10년 이상 영위기업의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상당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0년 이상 영위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각 한도)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600억원 한도) 시 10억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120억원 초과시 20%) 저율과세
□ 구조조정 및 지방이전	○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취득세 50% 감면 ○ 수도권 밖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기업 현황

□ 연도별 중소기업현황

○ 기업 수 (2018~2023년)

(단위: 개,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23)
전체 기업	6,643,756	6,893,706	7,295,451	7,723,867	8,053,163	8,309,696	256,533
- 중소기업	6,638,694	6,888,435	7,286,082	7,713,895	8,042,726	8,298,915	256,189
(비중)	(99.9)	(99.9)	(99.9)	(99.9)	(99.9)	(99.9)	(3.2)
· 소상공인	6,199,980	6,441,928	6,924,292	7,335,397	7,656,718	7,906,861	250,143
(비중)	(93.3)	(93.4)	(94.9)	(95.0)	(95.1)	(95.2)	(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3년 기준)

○ 종사자 수 (2018~2023년)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 감 ('22~'23)
전체 기업	20,591,641	21,543,534	21,935,003	22,865,491	23,410,899	23,767,377	356,478
- 중소기업	17,103,938	17,460,668	17,791,969	18,492,614	18,956,294	19,117,649	161,355
(비중)	(83.1)	(81.0)	(81.1)	(80.9)	(81.0)	(80.4)	(0.9)
· 소상공인	8,969,291	9,763,052	10,018,424	10,461,890	10,740,812	10,899,947	159,135
(비중)	(43.6)	(45.3)	(45.7)	(45.8)	(45.9)	(45.9)	(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3년 기준)

□ 주요업종의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전 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기업 수	8,309,696 (100.0)	7,906,861 (95.2)	8,163,704 (98.2)	135,211 (1.6)	8,298,915 (99.9)	10,781 (0.1)
제조업 (7.4)*	616,664 (100.0)	545,963 (88.5)	598,431 (97.0)	15,265 (2.5)	613,696 (99.5)	2,968 (0.5)
건설업 (7.2)*	597,226 (100.0)	568,013 (95.1)	589,895 (98.8)	6,711 (1.1)	596,606 (99.9)	620 (0.1)
서비스업 (81.8)*	6,794,107 (100.0)	6,500,950 (95.7)	6,676,480 (98.3)	110,847 (1.6)	6,787,327 (99.9)	6,780 (0.1)
기타 (3.6)*	301,699 (100.0)	291,935 (96.8)	298,898 (99.1)	2,388 (0.8)	301,286 (99.9)	413 (0.1)
종사자 수	23,767,377 (100.0)	10,899,947 (45.9)	14,672,736 (61.7)	4,444,913 (18.7)	19,117,649 (80.4)	4,649,728 (19.6)
제조업 (17.8)*	5,030,155 (100.0)	1,233,705 (24.5)	2,436,522 (48.4)	957,817 (19.0)	3,394,339 (67.5)	1,635,816 (32.5)
건설업 (10.0)*	2,253,570 (100.0)	964,067 (42.8)	1,419,007 (63.0)	487,857 (21.6)	1,906,864 (84.6)	346,706 (15.4)
서비스업 (69.8)*	15,950,501 (100.0)	8,385,324 (52.6)	10,415,212 (65.3)	2,925,925 (18.3)	13,341,137 (83.6)	2,609,364 (16.4)
기타 (2.5)*	533,151 (100.0)	316,851 (59.4)	401,995 (75.4)	73,314 (13.8)	475,309 (89.2)	57,842 (10.8)

주: 각 업종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종사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3년 기준)

□ 주요국별 중소제조업 현황

(단위: 개, 천명, %)

구 분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비고
한국(Korea) (2023년)	제조업 전체	616,664	5,030	2,554,090	Establishment
	중소기업	613,696(99.5)	3,394(67.5)	818,633(32.1)	10억원
일본(Japan) (2022년)	제조업 전체	223,391	7,752	361,775	Establishment
	중소기업	219,891(98.4)	5,183(66.9)	170,305(47.1)	10억엔(億円)
대만(Taiwan) (2023년)	제조업 전체	149,227	3,001	18,320,412	Enterprise
	중소기업	143,665(96.3)	2,017(67.2)	5,073,771(27.7)	백만원(百萬元)
미국(U.S.) (2021년)	제조업 전체	238,851	11,710	-	Firm
	중소기업	234,931(98.4)	4,807(41.0)	-	

주1: 한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대상이며,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상이함.
주2: 일본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4~299인 사업체 대상이며, 매출액은 출하액 기준임.
주3: 대만의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 1억 NT$ 미만 기업체 대상임.
주4: 미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500인 미만 기업체 대상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4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경영지표분석(제조업)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기자본비율	제조업	52.84	53.97	55.49	56.50	57.62	57.64	56.73	56.01	56.51	56.86
	중소기업	38.69	39.67	41.55	42.07	42.27	41.46	43.46	43.50	44.40	45.60
	대 기 업	58.44	58.92	60.89	61.92	63.01	63.17	61.91	60.54	60.81	60.88
부채비율	제 조 업	89.24	85.28	80.20	76.99	73.55	73.49	76.27	78.55	76.95	75.87
	중소기업	158.46	152.09	140.65	137.72	136.60	141.17	130.10	129.87	125.21	119.30
	대 기 업	71.12	69.72	64.24	61.51	58.69	58.29	61.53	65.19	64.44	64.27
차입금의존도	제 조 업	25.30	24.92	23.69	22.68	22.28	22.78	23.43	22.61	22.13	22.49
	중소기업	40.62	41.00	38.78	38.60	39.06	39.92	38.48	38.11	37.55	36.52
	대 기 업	19.99	19.84	18.41	17.19	16.71	17.25	17.84	17.13	16.78	17.66
부가가치율	제 조 업	21.12	24.00	25.61	26.53	26.16	24.28	25.58	25.89	23.60	21.79
	중소기업	25.23	26.43	27.24	26.64	27.33	27.05	27.56	26.99	26.55	26.22
	대 기 업	18.73	22.24	24.37	26.11	25.64	22.31	23.87	25.39	22.37	19.40
총자산증가율	제 조 업	3.97	4.04	5.07	6.49	5.13	3.27	5.91	10.38	7.54	6.93
	중소기업	7.82	7.85	7.92	6.49	6.00	6.82	7.43	9.84	7.39	6.07
	대 기 업	2.53	2.63	3.82	6.34	4.71	2.09	4.98	9.55	7.18	7.24
자기자본증가율	제 조 업	6.24	5.94	7.49	8.92	7.38	3.12	5.02	9.03	8.24	7.43
	중소기업	9.54	11.11	10.72	9.20	8.93	8.07	8.84	11.21	8.53	8.33
	대 기 업	4.55	4.33	6.71	8.73	6.61	1.85	3.71	7.95	7.44	7.25
매출액증가율	제 조 업	-1.58	-2.82	-0.55	9.01	4.00	-1.72	-2.34	18.10	14.63	-2.27
	중소기업	7.72	3.83	3.01	5.89	2.92	2.89	1.83	13.58	10.82	2.15
	대 기 업	-3.98	-5.60	-2.54	9.65	4.57	-3.29	-4.21	19.67	15.76	-3.89

주1: 2015~2016년 전체 및 대기업 자료는 갱신되어 이전 발표수치와 다름.
주2: 2016년부터 중소기업은 모집단 기준변경으로 인해 이전수치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영지표」

4. 중소기업 수출 현황

□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합계	6,322	100.0	△7.5	6,836	100.0	+8.1	3,348	100.0	△0.02
중소	1,097	17.4	△4.2	1,110	16.2	+1.2	567	16.9	+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동향」

□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순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국가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186	17.0	△13.4	미국	184	16.6	+9.0	미국	93	16.4	+1.1
2	미국	169	15.4	+3.7	중국	179	16.1	△3.8	중국	90	15.9	+1.8
3	베트남	103	9.4	△6.6	베트남	110	9.9	+6.9	베트남	52	9.2	△5.0
4	일본	99	9.0	△8.0	일본	89	8.0	△9.8	일본	47	8.2	+6.4
5	인도	31	2.8	△3.6	홍콩	40	3.6	+41.2	홍콩	24	4.2	+19.5
6	러시아	31	2.8	+13.4	인도	33	3.0	+6.7	인도	16	2.8	△0.6
7	홍콩	28	2.6	△5.1	대만	28	2.5	+5.3	대만	16	2.8	+23.3
8	대만	27	2.4	△22.7	멕시코	27	2.4	+1.8	키르기스	13	2.4	+95.7
9	멕시코	27	2.4	+4.3	러시아	27	2.4	△12.1	멕시코	13	2.3	△5.2
10	인도네시아	25	2.3	△8.6	인도네시아	26	2.3	+1.0	태국	13	2.2	△1.7
	10대 소계	726	66.1	△9.1	10대 소계	743	66.9	+2.4	10대 소계	377	66.4	+4.2
	전체 합계	1,097	100.0	△4.2	전체 합계	1,110	100.0	+1.2	전체 합계	567	100.0	+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동향」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황

○(목적)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원활한 수출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13개 지방중기청 내 15개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설치근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설치현황) 전국 15개소(13개 지방중기청, 제주·경기북부사무소 포함)

수출지원센터별 인력 운영현황(2025. 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공무원	수출전문관	행정실무사	소계
서울	3	2	1	6
부산	1	1	1	3
대구·경북	3	1	1	5
광주·전남	2	1	1	4
제주	2	1	1	4
경기	2	3	1	6
경기북부	-	1	1	2
인천	3	1	1	5
대전·세종	2	1	1	4
울산	2	1	1	4
강원	3	1	1	5
충북	2	2	1	5
충남	3	1	1	5
전북	1	1	1	3
경남	4	2	1	7
소계	33	20	15	68

주: 본부(글로벌성장정책관) 소속 수출전문관 1명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실적) 지역별 수출상담회·교육 개최, 애로 접수 등 지역 수출중소기업 지원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9월말
수출상담회·교육 추진(건)	157	366	308	256
수출애로상담(건)	4,553	3,201	1,881	1,7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 중소기업 미충원/부족 인원 현황(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단위: 명, %)

구 분	'22하	'23상	'23하	'24상	'24하	'25상
미충원인원	180,528	153,785	128,259	108,057	107,402	92,576
미충원율	16.5	12.9	11.9	8.8	9.5	7.7
부족인원	584,243	525,457	500,877	476,103	479,944	420,647
부족률	3.7	3.3	3.1	3.0	3.0	2.7

주: 미충원인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구인인원 중에서 채용하지 못한 인원
주: 부족인원: 채용여부/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단위: 명, %)

구분		합계	사무·관리	기술·연구	생산	판매·마케팅	기타
'19	부족인원	31,795	4,644	2,358	23,881	777	135
	부족률	1.40	0.87	1.24	1.72	0.61	0.51
'20	부족인원	46,060	2,271	2,784	40,056	799	150
	부족률	2.07	0.46	1.51	2.88	0.57	0.898
'21	부족인원	44,740	3,362	3,648	35,937	1,577	216
	부족률	1.76	0.58	1.85	2.21	1.33	1.10
'22	부족인원	42,673	3,869	2,298	33,730	2,213	563
	부족률	1.69	0.70	1.09	2.11	1.70	1.71
'23	부족인원	45,536	10,737	2,342	28,666	3,343	448
	부족률	1.79	1.96	1.54	1.68	3.80	0.9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개관

1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 중소기업 맞춤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

○ **(인력양성)** 마이스터고(3개교), 특성화고(173개교), 기술사관(17개 사업단) 학생 대상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첨단산업분야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과제 지원(4개 연구인력 혁신센터)

○ **(인식개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특성화고 재학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 인식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

○ **(취업매칭)**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우수 구인기업·구직자 발굴 및 매칭,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교육 실시 및 협력사에 취업 연계를 지원

2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재직에 따른 혜택(자산형성·주거안정 등) 부여

○ **(직무능력 향상)** 중소기업 계약학과(92개 학과) 설치·운영, 중소기업 연수원(6개)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연수 실시

○ **(장기재직 유도)** 민간 주도의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지원(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3 고급 연구인력 지원 :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채용·파견)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채용 지원)** 신진 학·석·박사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822명)

○ **(파견 지원)** 출연연·전문연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지원(85명)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사업 목적 및 대상별 체계도

목적 / 대상	기업 맞춤인력 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매칭	장기재직 유도	기술경쟁력 제고
학생·구직자·구인기업	· 국립마이스터고 육성 · 특성화고 인력 양성 · 기술사관 육성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 지원	· 중소기업 인식개선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 대·중소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중소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 ·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		· 내일채움공제 · 주택특별공급	
고급 연구인력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8. 벤처기업 현황

□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증가			감소				증감	연말 (월말)
	신규	재확인	소계	기간 만료	휴폐업	기타 (취소 등)	소계		
2000년	5,532	1,055	6,587	2,601	62	60	2,723	3,864	8,798
2001년	3,914	2,479	6,393	3,489	221	89	3,799	2,594	11,392
2002년	1,672	4,781	6,453	8,419	261	387	9,067	-2,614	8,778
2003년	1,272	2,945	4,217	5,113	145	35	5,293	-1,076	7,702
2004년	1,886	2,718	4,604	4,221	100	18	4,339	265	7,967
2005년	2,823	2,957	5,780	3,935	62	18	4,015	1,765	9,732
2006년	4,127	2,955	7,082	4,467	59	70	4,596	2,486	12,218
2007년	5,286	3,952	9,238	7,274	163	4	7,441	1,797	14,015
2008년	6,276	8,243	14,519	13,123	2	8	13,133	1,386	15,401
2009년	7,762	10,184	17,946	14,351	-	103	14,454	3,492	18,893
2010년	6,899	6,647	13,546	7,776	-	18	7,794	5,752	24,645
2011년	6,369	7,436	13,805	12,238	-	64	12,302	1,503	26,148
2012년	6,574	7,847	14,421	12,340	-	36	12,376	2,045	28,193
2013년	6,326	8,830	15,156	14,097	45	72	14,214	942	29,135
2014년	5,500	9,524	15,024	14,007	1	241	14,249	775	29,910
2015년	6,681	10,096	16,777	15,220	-	207	15,427	1,350	31,260
2016년	6,837	10,084	16,921	14,606	182	33	14,821	2,100	33,360
2017년	7,419	11,298	18,717	16,434	175	186	16,795	1,922	35,282
2018년	6,827	11,587	18,414	16,742	121	13	16,876	1,538	36,820
2019년	6,194	12,870	19,064	18,821	45	10	18,876	188	37,008
2020년	6,992	13,902	20,894	18,310	67	14	18,391	2,503	39,511
2021년	5,910	12,042	17,952	19,127	1	16	19,144	-1,192	38,319
2022년	5,308	12,200	17,508	20,603	48	53	20,704	-3,196	35,123
2023년	5,176	3,540	8,716	3,180	242	336	3,758	4,958	40,081
2024년	4,988	8,403	13,391	14,533	298	425	15,256	-1,865	38,216
2025년 8월	3,364	8,302	11,666	11,553	198	255	12,006	-340	37,8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업체수	10,825	1,642	471	1,194	1,319	677	695	1,503	1,266	12,164	1,771	682	931	877	1,366	281	212	37,876
비율(%)	28.6	4.3	1.2	3.2	3.5	1.8	1.8	4.0	3.3	32.1	4.7	1.8	2.5	2.3	3.6	0.7	0.6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9.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단위: 개, %)

연도별	현황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7
벤처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38,319	35,123	40,081	38,216	38,071
Inno-biz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18,920	20,205	21,392	22,383	22,902	23,101
Main-biz	17,558	14,867	12,606	12,001	13,898	14,841	15,230	16,733	18,017	19,078	20,313	21,659	22,892	23,973	24,741
계	60,650	60,358	58,821	58,789	62,630	65,909	68,603	71,646	73,370	77,509	78,837	78,174	85,356	85,091	85,913
중복업체 (중복률)	14,348 (23.7)	13,216 (21.9)	11,485 (19.5)	11,841 (20.1)	11,897 (19.0)	12,195 (18.5)	12,042 (17.6)	12,448 (17.4)	12,786 (17.4)	14,156 (18.2)	15,403 (19.5)	16,294 (20.8)	18,245 (21.4)	14,511	14.005
합계 (중복제외)	46,302	47,142	47,336	46,948	50,733	53,714	56,561	59,198	60,584	63,353	63,434	61,880	67,111	67,276	68,521

주1: 중복현황('25.7월)은 벤처+이노(10,403), 벤처+경영(4,873), 이노+경영(5,503), 이노+벤처+경영(3,387)
주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06.7월부터 시행
주3: '11년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통계는 휴폐업기업 등을 일부 미반영

□ 업종별 현황

○ 총괄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 수	49,025	11,113	11,133	4,687	8,322	220	10,619	85,913
비율	57.1	13.0	2.2	5.5	9.7	0.3	12.4	100.0

주: 기타(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인증 유형별

<벤처기업>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 수	21,220	8,399	1,548	953	1,673	174	4,104	38,071
비율	55.7	22.1	4.1	2.5	4.4	0.5	10.8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기업>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 수	15,246	2,734	-	693	1,640	46	2,742	23,101
비율	66.0	11.8	-	3.0	7.1	0.2	11.9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메인비즈기업>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 수	12,559	-	359	3,041	5,009	-	3,773	24,741
비율	50.2	-	1.5	12.3	202.2	-	15.2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 벤처 1,000억클럽 현황(연도말 결산 기준)

□ 벤처 천억기업 수: 908개사(2024년말 기준)

(단위: 개사)

구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매출액 천억 이상 벤처기업 수		908	869	739	633	617	587	572	513	474
매출액 합산(조원)		235	229	188	151	140	134	132	107	100.8
IPO	거래소	61	61	55	50	50	50	52	47	45
	코스닥	334	319	298	280	265	253	244	213	197
	코넥스	2	3	2	3	3	4	2	3	3
	비상장	511	486	384	300	299	280	274	250	219
매출액 1위 (억원)		네이버㈜ (56,098)	네이버㈜ (55,126)	네이버㈜ (50,187)	네이버㈜ (41,266)	네이버㈜ (39,000)	네이버㈜ (34,590)	네이버㈜ (29,307)	네이버㈜ (24,965)	코웨이㈜ (21,6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벤처 천억기업 수

(단위: 개사)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기업 수	152	202	242	315	381	416	453	460	474	513	572	587	617	633	739	869	9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업종별 현황

(단위: 개, %)

5대 분류	10대 분류	2023년			
		기업수		비율	
첨단제조	에너지/화학/정밀	86	305	9.5	33.6
	의료/제약	51		5.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35		14.9	
	통신기기/방송기기	33		3.6	
일반제조	기계/자동차/금속	223	353	24.6	38.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30		14.3	
첨단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0	96	6.6	10.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6		4.0	
일반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21	121	13.3	13.3
기타	기타	33	33	3.6	3.6
전체		908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별 현황

(단위: 개사)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호남권			강원	제주	계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92	231	40	15	53	49	6	10	16	12	27	41	47	16	40	10	3	908

주: 수도권집중도(%): ('20)63.8(403/633)→('21)61.2(452/739)→('22)61.7(536/869)→('23)62.0(563/9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1. 전통시장 현황

□ 전국 1,393개 시장, 22.6만개 점포, 상인 30.8만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자료('23)

○ 연도별 현황: ('18) 1,437개→('19) 1,413개→('20) 1,401개→('21) 1,408개 →('22) 1,388개→('23) 1,393개

○ 점포 수

(단위: 개, %)

구분	전체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노점
			빈 점포	기타 점포 (창고, 사무실 등)	
점포 수	226,995 (100.0)	171,529 (75.6)	22,846 (10.1)	4,539 (2.0)	28,081 (1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상인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종사자		노점상인
		점포상인	종업원	
상인 수	308,697 (100.0)	171,529 (55.6)	109,087 (35.3)	28,081 (9.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연도별 매출액

(단위: 조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액	19.9	20.1	21.1	21.8	22.6	23.9	25.8	25.1	25.3	25.3	28.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2. 상점가 현황(2023년)

□ 전국 344개 상점가, 6.5만개 점포, 상인 11.3만명

○ 상점가: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5조)

○ 점포 수

(단위: 개, %)

구 분	합 계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노 점
			빈 점포	기타점포	
상점가	52,121 (100.0)	44,592 (85.6)	5,082 (9.8)	1,048 (2.0)	1,399 (2.7)
지하도상점가	12,977 (100.0)	11,324 (87.3)	1,497 (11.5)	156 (1.2)	-
합 계	**65,098 (100.0)**	**55,916 (85.6)**	**6,479 (10.6)**	**1,204 (1.8)**	**1,399 (2.0)**

주: 창고 및 사무실, 빈점포 등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종사자

(단위: 명, %)

구 분	합 계	종사자		노점상인
		점포상인	종업원	
상점가	97,912 (100.0)	44,592 (45.6)	51,921 (53.0)	1,399 (1.4)
지하도상점가	14,898 (100.0)	11,324 (76.0)	3,574 (24.0)	-
합 계	**112,810 (100.0)**	**55,916 (49.6)**	**55,495 (49.2)**	**1,385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현황

□ 예산현황

○ 2025년 4,608억원으로 2023년(4,207억원) 대비 9.5%(401억원) 증가

(단위: 억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예산현액 (A)	본예산	예산현액 (B)	증감액 (B-A)	증감률 (%)
시장경영혁신지원	4,207	4,207	4,608	4,608	401	9.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최근 5년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합계	4,644	4,302	4,265	4,836	5,104	23,151
시장경영혁신지원	3,892	4,302	3,595	4,207	4,608	20,60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752	-	670	629	496	2,547

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장경영혁신지원 내역사업에 편입, 2023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4.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23년)

○ 전국 1,393개 전통시장의 조직화 운영(활동성, 전문성), 전략적 운영(고객 편의성, 차별성), 운영 성과(성장성, 수익성) 3개 분야별(6개 항목별) 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20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화시장 활성화 수준

○ 2022년 대비 상위 수준인 A~B수준은 증가하고 보통 수준인 C수준은 감소, 취약 수준인 D~E수준은 감소하여, 전반적인 활성화 수준이 증가(A+B+C등급 기준, 89.0→90.6%)

-A+B수준은 2.9%p 증가, 보통인 C수준은 1.3%p 감소

-D~E 수준의 비중은 1.6%p 증가

(Base: 전체 전통시장(n=1,393), 단위: 개, %, 점, %p)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개수	비중	평균점수	개수	비중	평균점수	
전체		1,388	100.0	56.3	1,393	100.0	56.7	-
활성화	A수준	246	17.7	69.1	232	16.7	69.1	△1.0
	B수준	541	39.0	59.8	598	42.9	59.8	3.9
보통	C수준	448	32.3	50.8	432	31.0	50.8	△1.3
취약	D수준	127	9.1	41.1	117	8.4	41.3	△0.7
	E수준	26	1.9	32.4	14	1.0	32.3	△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차원 내 분야별 결과

(Base: 전체 전통시장(n=1,393),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수	활성화		보통	취약	
				A수준	B수준	C수준	D수준	E수준
조직화 운영								
	활동성	개수	1,393	52	72	97	180	992
		비율	100.0	3.7	5.2	7.0	12.9	71.2
		평균점수	32.9	72.8	59.7	49.5	42.3	25.5
	전문성	개수	1,393	8	30	82	184	1089
		비율	100.0	0.6	2.2	5.9	13.2	78.2
		평균점수	28.7	70.5	59.7	49.8	39.8	24.1
전략적 운영								
	고객 편의성	개수	1,393	1,050	227	82	32	2
		비율	100.0	75.4	16.3	5.9	2.3	0.1
		평균점수	74.6	80.6	60.6	50.8	41.3	25.3
	차별성	개수	1,393	1044	206	101	37	5
		비율	100.0	74.9	14.8	7.3	2.7	0.4
		평균점수	72.7	78.7	60.3	50.5	40.0	29.3
운영 성과								
	성장성	개수	1,393	394	361	319	186	133
		비율	100.0	28.3	25.9	22.9	13.4	9.5
		평균점수	56.3	76.1	58.6	49.4	40.8	29.4
	수익성	개수	1,393	476	316	196	227	178
		비율	100.0	34.2	22.7	14.1	16.3	12.8
		평균점수	57.2	76.8	59.8	51.4	41.7	2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5.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통계 현황

□ 혁신형 기업 현황

(단위: 개, %)

연도별	현황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7
벤처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38,319	35,123	37,216	38,216	38,071
Inno-biz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18,920	20,205	21,392	21,801	22,902	23,101
Main-biz	12,606	12,001	13,898	14,841	15,230	16,733	18,017	19,078	20,313	21,659	22,280	23,973	24,741
계	58,821	58,789	62,630	65,909	68,603	71,646	73,370	77,509	78,837	78,174	81,297	85,091	85,913
중복업체 (중복률)	11,485 (19.5)	11,841 (20.1)	11,897 (19.0)	12,195 (18.5)	12,042 (17.6)	12,448 (17.4)	12,786 (17.4)	14,156 (18.2)	15,403 (19.5)	16,294 (20.8)	17,225 (21.2)	14,511	14.005
합계 (중복제외)	47,336	46,948	50,733	53,714	56,561	59,198	60,854	63,353	63,434	61,880	64,072	67,276	68,52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요소별 기술능력수준(세계최고수준 대비)

(단위: %)

구분	제품 기획	디자인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품 설계	부품/ 공정 설계	시험 검사	제조 (가공) 능력	생산 관리	유지 보수	개발 기술 사업화	평균
2005	73.9	73.0	74.6	77.1	75.7	74.8	78.2	76.9	78.3	75.0	75.8
2007	73.1	70.9	74.3	75.2	74.9	73.2	78.1	76.1	76.8	73.7	74.6
2009	73.2	72.6	73.9	76.2	74.7	73.2	77.2	76.3	76.1	73.8	74.7
2011	74.0	72.6	74.1	76.6	74.7	73.9	77.1	75.9	75.8	72.9	74.8
2013	75.4	74.0	74.4	75.5	75.3	73.6	77.7	77.6	77.5	75.1	75.6
2014	76.9	75.9	76.7	77.2	76.9	75.5	79.3	78.9	78.5	76.7	77.1
2015	72.8	72.2	72.8	73.7	73.4	73.7	76.1	76.5	76.5	74.6	74.3
2016	74.8	74.4	74.8	75.3	74.7	74.8	76.4	76.3	76.0	75.1	75.3
2017	77.8	78.4	78.1	78.8	78.9	78.4	78.1	78.2	79.6	77.8	77.3
2018	74.6	75.1	75.2	75.7	75.7	75.7	76.0	75.8	75.8	74.9	75.4
2019	76.7	76.4	76.4	76.8	76.7	76.8	77.2	77.4	77.6	76.6	76.9
2020	79.6	79.8	79.8	80.1	80.2	79.6	80.0	79.8	80.2	79.5	79.8
2021	78.2	79.2	79.0	79.1	77.8	78.4	79.6	79.9	79.6	78.8	78.9
2022	76.2	76.3	76.3	76.4	76.2	75.4	76.0	76.2	76.7	75.9	76.2
2023	76.6	76.2	76.1	75.9	75.8	75.5	76.2	76.5	76.4	76.6	76.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중소기업 보유기술 수준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소기업	중기업
고기술기업	7.2	7.2	11.3	9.4	6.4	9.6
중간기술기업	53.4	54.2	54.9	62.7	51.9	57.7
범용기술기업	39.4	38.6	33.8	28.0	41.7	32.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별 예산 추이 *기후대응기금 제외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합계(괄호는 추경 포함)			**14,885 (14,835)**	**17,229**	**17,888 (17,615)**	**17,701**	**13,932**	**15,170 (15,270)**	**21,955**
기술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799 (1,768)	2,888	2,872 (2,833)	3,029	2,881	3,444	4,942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		-	-	-	-	242	488	1,299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R&D)		-	-	332 (320)	612	1,109	1,748 (1,848)	4,570
	창업성장기술개발(R&D)		4,637 (4,366)	4,086	3,985 (3,816)	4,423	5,317	5,960	7,864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	-	-	-	-	17	7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	-	396	399	386	398	39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R&D)		-	-	63	66	74	80	88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		-	-	-	15	10	16	70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	-	-	-	-	-	50
	산학연Collabo R&D(R&D)		329	466	474	487	271	570	39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	-	81	80	75	76	7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2,252	2,011	2,280 (2,229)	2,529	942	362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		-	-	24	57	33	12	-
	Tech 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R&D)(소특)		130	249	351	294	104	41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지원(R&D)		-	-	28	60	36	-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R&D)		-	-	-	20	9	-	-
	기술공유형 통합기술개발(R&D)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25	38	42	26	4	-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	-	70	100	42	-	-
	디지털전환 통합기술개(R&D)	스마트서비스ICT 솔루션개발	-	60	114	121	11	-	-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	-	15	17	3	-	-
	중소기업R&D역량제고(R&D)		145 (237)	150	143	143	10	-	-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R&D)		-	-	-	90	-	-	-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R&D)		47	110	100	19	-	-	-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R&D)		-	89	106	87	-	-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 개발(R&D)	-	45	113	71	-	-	-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R&D)	-	13	14	7	-	-	-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R&D)	-	59	84	42	-	-	-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R&D)	443	491	214	-	-	-	-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 (R&D)	121	93	39	-	-	-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R&D)	65	61	20	-	-	-	-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R&D)	98	139	67	-	-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 (R&D)	65	130	58	-	-	-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R&D)	72	105	77	-	-	-	-
예비가젤형기술개발(R&D)	74	124	96	-	-	-	-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	86	83	-	-	-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R&D)	155	77	-	-	-	-	-
미세먼지저감실용화(R&D)	106	78	-	-	-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특)(R&D)	44	-	-	-	-	-	-
연구기반활용(R&D)	137	-	-	-	-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소특)	764	1,047	1,072	1,046	406	257	7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	-	45	43	33	33	3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소특)	150	311	301	274	85	26	-
창업성장기술개발(R&D)(소특)	143	296	296	139	20	-	-
소재부품장비전략협력기술개발 (R&D)	-	50	74	87	44	-	-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R&D)	-	-	76	155	67	-	-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R&D)	65	61	91	88	-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R&D)	75	100	96	24	-	-	-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62	116	56	-	-	-	-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R&D)	19	18	25	25	-	-	-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39	37	37	37	-	-	-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R&D)	44	44	39	39	-	-	-
소 계	12,105 (11,895)	13,726	14,547 (14,274)	14,751	12,213	13,527 (13,627)	19,935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지역국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	-	-	331	322	437	517	233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368	368	359	359	344	341	341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	-	-	-	216	969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	-	-	-	-	-	30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	-	-	-	-	-	36
	공정·품질기술개발(R&D)	410	480	427	420	124	47	-
	지역특화산업육성+(R&D)	974 (1,070)	1,227	1,001	1,069	468	82	-
	지역특화산업육성+(R&D)(세종)	25	34	31	30	13	3	-
	지역특화산업육성+(R&D)(제주)	-	-	100	90	36	7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R&D)	-	-	-	38	17	13	-
	디지털전환 통합기술개발(R&D)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14	28	25	14	13	-	-
	산단대개조지역기업R&D(R&D)	-	90	70	-	-	-	-
	지역특화산업육성(R&D)	41	-	-	-	-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지원(R&D)	128	-	-	-	-	-	-
	소 계	**1,961 (2,057)**	**2,227**	**2,343**	**2,341**	**1,451**	**1,225**	**1,609**
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642 (706)	985	769	458	196	309	247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142	251	192	90	50	103	164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R&D)	-	-	-	18	10	6	-
	소 계	**784 (848)**	**1,236**	**961**	**566**	**256**	**417**	**411**
소상국	소상공인 스마트기술육성 R&D (R&D)	-	-	-	24	12	-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R&D)	35	40	37	17	-	-	-
	소 계	**35**	**40**	**37**	**41**	**12**	**-**	**-**

주: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 및 디지털전환통합기술개발은 '24년 세부사업 통·폐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 수		연구원 수		전담부서 수		연구원 수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2009	18,772	17,703	219,975	131,031	6,062	5,910	9,950	8,304
2010	21,785	20,659	235,596	141,080	7,797	7,623	14,889	12,874
2011	24,291	22,876	257,510	147,406	8,884	8,668	16,736	14,465
2012	25,860	24,243	271,063	146,833	10,544	10,287	19,112	16,510
2013	28,771	27,154	287,989	155,580	12,851	12,562	21,906	19,131
2014	32,167	30,478	302,486	163,887	16,349	16,047	26,204	23,348
2015	35,288	33,647	312,466	176,084	20,169	19,853	30,985	28,049
2016	37,631	36,026	320,201	184,998	23,201	22,882	34,484	31,495
2017	39,313	37,696	329,938	190,686	25,167	24,857	36,360	33,531
2018	40,399	38,734	335,882	193,724	26,299	25,985	37,332	34,625
2019	40,750	38,887	337,420	192,420	28,367	28,039	39,580	37,283
2020	42,155	33,834	359,975	199,891	29,864	33,834	41,867	39,645
2021	44,067	41,887	383,678	209,417	75,585	73,027	44,618	42,230
2022	44,811	42,525	398,666	214,642	33,595	33,196	47,497	45,035
2023	44,086	41,717	410,515	213,031	34,104	33,686	47,986	45,494
2024	41,440	39,011	407,844	201,644	33,825	33,394	47,563	45,133
2025.8월	40,747	38,224	413,515	197,008	34,330	33,892	47,871	45,468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석·박사 현황

(단위: 명)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합계	
	전체 (a)	중소기업 (b)	전체 (a)	중소기업 (b)	전체 (a)	중소기업 (b)
박사	30,328	11,223	1,144	1,055	31,472	12,278
석사	105,068	39,952	4,636	3,939	109,704	43,891
학사	239,370	122,910	27,475	25,788	266,845	148,698
전문학사	27,972	26,805	11,086	11,054	39,058	37,859
기타	8,933	8,449	5,381	5,351	14,314	13,800
계	411,671	209,339	49,722	47,187	461,393	256,526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단위: 개사, 억원)

연도	전체 중소기업 지원		이노비즈 기업 지원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2013	1,361	3,300	277	822
2014	1,504	3,500	278	752
2015	1,673	3,500	113	296
2016	1,745	3,500	170	402
2017	1,864	3,500	131	306
2018	1,805	3,650	100	235
2019	1,574	3,500	71	202
2020	1,374	2,900	187	479
2021	1,333	2,900	156	487
2022	1,327	3,000	188	655
2023	1,239	3,000	218	543
2024	803	2,000	137	38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연도별 지원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KOSBIR 시행기관의 전체 R&D 예산 (A)	182,487	190,856	223,053	244,503	254,797	261,469	229,289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B)	30,117	29,884	36,637	43,358	47,420	50,093	41,615
평균 지원 비율 (B/A)	16.5	15.7	16.4	17.7	18.6	19.2	18.1

주1: KOSBIR: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주2: KOSBIR 시행기관: 중앙행정기관 18개(중기부 포함), 공공기관 7개

□ 기술개발 단계별 소요기간

(단위: 개월)

구분		개발기획 단계(A)	개발진행 단계(B)	사업화단계 (C)	총소요기간 (A+B+C)	판로개척 단계
전체		4.7	7.1	4.9	16.7	5.3
규모별	소기업	4.6	6.9	4.9	16.4	5.2
	중기업	5.1	7.6	5.1	17.7	5.6
산업별	제조업	4.6	7.2	4.9	16.8	5.4
	건설업	4.7	7.1	5.5	17.3	5.3
	도소매업	4.5	6.1	4.7	15.3	5.1
	정보통신업	4.8	7.7	5.0	17.6	5.1
	과학기술서비스	5.2	7.6	5.1	17.9	5.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16.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현황

□ 2025년 8월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예산	예산비중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835,800	35.1	1,446,170	6,726	215.0
신성장기반자금	1,311,100	25.1	1,128,490	2,107	535.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82,450	9.2	393,408	1,926	204.3
긴급경영안정자금	550,000	10.5	407,310	2,083	195.5
재도약지원자금	750,100	14.3	616,622	1,644	375.1
밸류체인안정화	198,500	3.8	192,353	838	229.5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00	1.9	64,300	188	342.0
합계	5,227,950	100.0	4,248,653	15,512	273.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8월 세부사업별 직대/대리, 신용/담보, 시설/운전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직대	대리	신용	담보	시설	운전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149,626	296,544	1,010,248	435,922	478,574	967,596	1,446,170
신성장기반자금	640,779	487,711	474,344	654,146	759,614	368,876	1,128,49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93,408	-	393,258	150	8,360	385,048	393,408
긴급경영안정자금	407,310	-	407,310	-	-	407,310	407,310
재도약지원자금	429,818	186,804	383,576	233,046	254,080	362,542	616,622
밸류체인안정화	192,353	-	192,353	-	-	192,353	192,35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64,300	-	64,300	-	1,035	63,265	64,300
합계	**3,277,594**	**971,059**	**2,925,389**	**1,323,263**	**1,501,663**	**2,746,990**	**4,248,6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8월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20,110	386,822	341,563	292,598	72,228	51,428	31,681	49,740	1,446,170
신성장기반자금	31,644	44,900	73,373	35,811	200,589	251,179	188,515	302,479	1,12849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7,360	36,860	37,040	36,620	50,360	80,980	51,108	93,080	393,408
긴급경영안정자금	400	9,814	18,806	26,500	65,471	86,530	69,641	130,148	407,310
재도약지원자금	16,559	40,513	78,695	66,261	73,340	111,889	70,746	158,619	616,622
밸류체인안정화	-	2,038	21,585	15,779	22,796	33,683	31,942	64,530	192,35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1,000	3,930	3,670	7,650	12,650	10,350	25,050	64,300
합계	**276,073**	**521,947**	**574,992**	**477,239**	**492,434**	**628,339**	**453,983**	**823,645**	**4,248,6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8월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99,569	88,977	60,120	73,057	29,933	40,985	46,397	345,032	40,571
신성장기반자금	128,770	80,309	50,923	44,660	35,134	30,470	41,834	284,042	27,58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61,610	23,010	20,388	25,150	11,550	6,950	13,100	91,390	10,060
긴급경영안정자금	37,027	23,900	18,650	19,270	14,640	4,520	9,070	101,748	12,750
재도약지원자금	80,306	39,200	27,551	29,770	24,090	18,335	19,996	147,568	18,330
밸류체인안정화	21,738	11,423	6,771	4,695	268	1,998	2,963	46,493	1,712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5,970	2,950	4,300	3,150	4,600	2,350	1,000	14,500	1,300
합계	**534,990**	**269,769**	**188,703**	**199,752**	**120,215**	**105,608**	**134,360**	**1,030,773**	**112,310**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66,780	63,929	54,973	66,153	108,684	140,460	11,990	8,560	1,446,170
신성장기반자금	58,081	45,264	32,919	42,885	96,115	117,497	9,800	2,200	1,128,49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9,130	17,050	12,880	14,920	27,150	32,370	3,650	3,050	393,408
긴급경영안정자금	25,069	24,146	13,080	15,150	43,980	39,020	3,500	1,790	407,310
재도약지원자금	28,420	20,740	27,136	23,230	44,747	57,053	4,750	5,400	616,622
밸류체인안정화	9,316	7,528	8,960	15,990	20,880	30,644	-	973	192,35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2,700	3,700	2,100	2,400	4,780	7,700	800	-	64,300
합계	**209,496**	**182,357**	**152,048**	**180,728**	**346,336**	**424,744**	**34,490**	**21,973**	**4,248,6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8월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535,370	341,118	279,554	214,406	60,202	14,820	700	1,446,170
신성장기반자금	138,658	193,887	275,716	334,288	129,874	45,517	10,550	1,128,49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91,658	79,280	83,041	89,589	31,690	17,650	500	393,408
긴급경영안정자금	67,526	91,838	111,115	94,661	32,550	9,570	50	407,310
재도약지원자금	91,603	89,231	132,909	185,159	73,440	40,280	4,000	616,622
밸류체인안정화	113,619	8,366	15,385	29,480	16,540	8,720	243	192,35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7,280	9,270	13,700	22,750	4,600	6,700	-	64,300
합계	**1,045,714**	**812,990**	**911,420**	**970,333**	**348,896**	**143,257**	**16,043**	**4,248,6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8월 세부사업별 이차보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공급규모	공급비중	집행액	건수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2,600	25.3	26,233	11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52,600	25.3	26,233	110
신성장기반자금	250,100	41.5	207,545	495
혁신성장지원자금	140,000	23.2	121,580	298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90,000	14.9	72,565	160
Net-Zero 유망기업자금	20,100	3.3	13,400	3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000	33.2	176,120	404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200,000	33.2	176,120	404
합계	602,700	100.0	409,898	1,0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억원)

변경시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사유
		변경 전	증감	변경 후	
2025.5.13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	2,500	3,000	5,500	일시적 경영애로(원부자재 가격 상승, 환율·보호무역피해 등) 또는 재해·재난 피해(산불·지진 등)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 글로벌기업화)	1,825	1,000	2,825	급변하는 국제교역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을 통한 수출中企 지원 확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융자) (통상리스크대응긴급)	-	1,000	1,000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회복에 기여
2025.7.7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	13,358	2,000	15,358	AI·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집중 지원 재원 추가 마련을 통해 혁신기술 보유한 창업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증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7. 2025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현황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현황(49개 대학, 92개 학과)

○ 재교육형 계약학과(46개 대학, 89개 학과)

학위	주관대학	학과
박사 (16개)	단국대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명지대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경상국립대	융합기계공학과
	남부대	AI생체부품소재공학과
	국립한밭대	스마트시스템경영공학과
		동아대
	부산대	기계부품시스템전공
	숭실대	인공지능IT융합학과
		AI·SW융합학과
	한성대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인하대	스마트소재부품공학과
	국립순천대	글로벌물류비지니스학과
	전주대	탄소융합에너지공학과
	건양대	의료인공지능학과
	국립공주대	기전공학과
	충북대	화장품산업학과
석사 (42개)	국립강릉원주대	AI융복합학과
	경희대	스마트기술경영학과
		AI기술경영학과
		반도체융합공학과
	경기대	AI융합학과
	단국대	글로벌 e-SCM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
	명지대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반도체장비공학과
	수원대	기계공학과
	한국공학대	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융합기계공학과
	경상국립대	기계시스템공학과
		6차산업학과
	경남대	스마트제조시스템공학과
	경일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위	주관대학	학과
	경일대	모빌리티반도체학과
	대구대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남부대	금속화학부품소재공학과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과
	국립한밭대	스마트시스템경영공학과
	대전대	IT소프트웨어공학과
	충남대	산업시스템공학과
	동서대	클라우드융합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부산대	기계부품시스템전공
	국립한국해양대	친환경스마트조선기자재학과
	광운대	방산AI로봇융합학과
		AI미디어솔루션학과
	서강대	AX기술경영학과
	숭실대	인공지능IT융합학과
		AI·SW융합학과
	한성대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인하대	스마트소재부품공학과
	국립순천대	스마트산업안전관리학과
	전주대	탄소융합에너지공학과
	건양대	의료인공지능학과
	국립공주대	기전공학과
	순천향대	스마트제조공학과
	중원대	바이오헬스산업학과
	충북대	화장품산업학과
		전자정보공학과
학사 (23개)	경동대	해양심층수융복합학과
	한라대	의료IT융합학과
	명지대	스마트인프라유지관리학과
	평택대	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한국공학대	스마트컴퓨터융합공학과
		반도체기계시스템공학과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과
	경남대	기계융합공학과
	경상국립대	지능시스템공학과
	한국승강기대	스마트승강기공학과
	남부대	기계소재공학과
	대구대	IT융합학과
		IT소프트웨어공학과
	국립한밭대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학위	주관대학	학과
	동아대	산업공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한성대	스마트제조혁신컨설팅학과
	순천대	스마트팩토리혁신학과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국립공주대	반도체기계공학과
	중원대	융합기계전기전자부품공학과
		반도체융합학과
	국립한국교통대	IT응용융합학과
전문학사 (8개)	한림성심대	지식산업융합과
	경기과기대	기계나노융합과
	동강대	AI기반 e-모빌리티과
	조선이공대	하이테크CAD/CAM과
	대전과기대	스마트생산물류공학과
	부산과기대	융합기계과
	전주비전대	탄소융합기계과
	충청대	산업경영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3개 대학, 3개 학과)

학위	주관대학	학과
석사 (1개)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전문학사 (2개)	계명문화대	스마트환경과
	배화여대	반도체소프트웨어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8.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별 현황(2025. 9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대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협단체	민간기관	TP/창경	합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개수	34	6	144	184	12	12	24	9	2	243
비율	14.0	2.5	59.2	75.7	4.9	5.0	9.9	3.7	0.8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현황(2025. 9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대학				연구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단체	민간기관	TP	창경	합계	비율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서울	1	1	20	22	-	-	1	2	2	2	-	-	29	11.9
인천	1	-	2	3	1	-	-	-	-	1	-	-	5	2.1
경기	2	-	31	33	2	1	1	2	4	5	1	-	49	20.1
강원	3	1	5	9	1	-	2	1	1	-	-	-	14	5.8
대전	2	-	5	7	2	-	-	-	-	-	-	-	9	3.7
세종	-	-	2	2	-	-	-	-	-	-	-	1	3	1.2
충남	1	-	14	15	-	-	-	-	-	-	-	-	15	6.2
충북	2	1	10	13	-	1	-	-	-	-	-	-	14	5.8
광주	2	-	6	8	-	-	-	1	-	-	-	-	9	3.7
전남	4	1	3	8	-	-	-	1	4	-	-	-	13	5.3
전북	3	-	6	9	2	1	-	-	3	-	-	-	15	6.2
제주	1	-	3	4	-	-	-	-	-	-	-	-	4	1.6
대구	1	-	6	7		1	1	2	-	-	-	-	11	4.5
경북	3	1	17	21	-	-	1	-	-	-	-	-	22	9.1
경남	5	1	6	12	2	-	1	-	1	-	-	-	16	6.6
부산	3	-	8	11	2	1	-	-	-	1	-	-	15	6.2
울산	-	-	-	-		-	-	-	-	-	-	-	-	-
합계	**34**	**6**	**144**	**184**	**12**	**5**	**7**	**9**	**15**	**9**	**1**	**1**	**243**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2025. 9월 기준)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1	서울	Creative Business Center	45	경기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	서울	건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6	경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창업보육센터
3	서울	경희창업보육센터	47	경기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4	서울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	48	경기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5	서울	광운창업지원센터	49	경기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6	서울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0	경기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7	서울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1	경기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
8	서울	마포비즈니스센터	52	경기	동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	서울	비채나 창업보육센터	53	경기	랩클라우드
10	서울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4	경기	명지대 창업보육센터
11	서울	서강비즈니스센터	55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12	서울	서대문구-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	56	경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13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7	경기	서판교 챌린지타운 벙글다
14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8	경기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	서울	성북구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59	경기	성남창업센터 정글ON
16	서울	성신유니콘센터	60	경기	수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7	서울	세종대학교 창업지원센터	61	경기	수원시 시니어창업보육센터
18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62	경기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9	서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63	경기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	서울	아트앤디자인테크 창업보육센터	64	경기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1	서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65	경기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66	경기	여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3	서울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	67	경기	연성대학교창업보육센터
24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8	경기	오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5	서울	주식회사 알파브라더스 창업보육센터	69	경기	올콘텐츠 창업보육센터
26	서울	팁스타운	70	경기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7	서울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71	경기	중앙대휴먼테크노 창업보육센터
28	서울	호서대학교 서울창업보육센터	72	경기	중진공 안산 창업보육센터(Post-BI)
29	서울	홍릉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	73	경기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30	인천	녹색창업센터	74	경기	투썬창업보육센터
31	인천	미래혁신창업보육센터	75	경기	한경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2	인천	인천대학교 송도 창업보육센터	76	경기	한국공학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33	인천	인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77	경기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천 창업보육센터
34	인천	한국폴리텍2대학 창업보육센터	78	경기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공예디자인 창업보육센터
35	경기	KAIST-화성시 동탄 사이언스 허브	79	경기	한국외대 창업보육센터
36	경기	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80	경기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7	경기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81	경기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8	경기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82	경기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업보육센터
39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83	경기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0	경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84	강원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41	경기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85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2	경기	경기창업보육센터	86	강원	강릉창업보육센터
43	경기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창업보육센터	87	강원	강원대학교 강원 창업보육센터
44	경기	경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88	강원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89	강원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137	충북	충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0	강원	리스트 강원산업기술연구소 창업보육센터	138	충북	한국교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1	강원	삼척창업보육센터	139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92	강원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40	광주	광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3	강원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	141	광주	광주드림파크
94	강원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142	광주	남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5	강원	중진공 원주 포스트BI	143	광주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6	강원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44	광주	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7	강원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45	광주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98	대전	대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46	광주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99	대전	대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47	광주	호남대 창업보육센터
100	대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148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	대전	배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49	전남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2	대전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0	전남	나노융합의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103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	151	전남	동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	대전	한국전력벤처기업육성센터	152	전남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5	대전	한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3	전남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106	대전	한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4	전남	바이오융합 창업보육센터
107	세종	세종창업키움센터	155	전남	순천대 창업보육센터
108	세종	한국영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6	전남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109	세종	홍익대학교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157	전남	전남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0	충남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8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111	충남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9	전남	초당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2	충남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0	전남	한국전력 창업보육센터
113	충남	단국대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161	전북	군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4	충남	백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2	전북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창업보육센터
115	충남	백석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3	전북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116	충남	상명대학교 창업지원센터	164	전북	에코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
117	충남	선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5	전북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
118	충남	순천향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6	전북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9	충남	신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7	전북	원광대학교 IT·BT창업보육센터
120	충남	중부창업보육센터	168	전북	익산창업보육센터
121	충남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69	전북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2	충남	한국기술교육대 창업보육센터	170	전북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123	충남	한서대학교 항공해양 창업보육센터	171	전북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4	충남	호서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172	전북	전주비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5	충북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창업보육센터	173	전북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6	충북	대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74	전북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7	충북	서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75	전북	희망전북 POST-BI
128	충북	세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76	제주	제주관광대학 창업보육센터
129	충북	세종창업혁신센터	177	제주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30	충북	유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78	제주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131	충북	중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79	제주	제주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32	충북	청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80	대구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33	충북	충북대학교 G-테크 벤처센터	181	대구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34	충북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82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35	충북	충북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183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136	충북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84	대구	경북대학교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185	대구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29	부산	CWI Center
186	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창업성장지원센터	230	부산	경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87	대구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231	부산	동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88	대구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32	부산	동서대Dream.E.Valley
189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창업보육센터	233	부산	동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90	대구	중진공 대구 창업보육센터(Post-BI)	234	부산	동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91	경북	경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35	부산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92	경북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236	부산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93	경북	경북전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37	부산	부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94	경북	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38	부산	부산이노비즈센터
195	경북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39	부산	영산대학교 지식창업보육센터
196	경북	구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40	부산	중소조선연구원 창업보육센터
197	경북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241	부산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창업보육센터
198	경북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창업보육센터	242	부산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캠퍼스 창업보육센터
199	경북	국립경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43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
200	경북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1	경북	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3	경북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4	경북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205	경북	동국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206	경북	서라벌창업보육센터			
207	경북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8	경북	영진전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9	경북	위덕대 창업보육센터			
210	경북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창업보육센터			
211	경북	포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12	경북	한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13	경남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214	경남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215	경남	경남도립거창대학디자인창업보육센터			
216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17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창업보육센터			
218	경남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219	경남	마산대학교 창업지원센터			
220	경남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창업보육센터			
221	경남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생명 창업보육센터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No.	지역	창업보육센터명
222	경남	세라믹스창업보육센터			
223	경남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224	경남	인제대 김해창업보육센터			
225	경남	창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26	경남	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27	경남	창원문성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228	경남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창업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